
2022년 경제정책방향

2021. 12. 20.

관 계 부 처 합 동

순서

I. 2021년 경제운영 성과	1
[참고]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주요 성과	3
II. 2022년 경제여건 평가	8
III. 2022년 경제정책방향	10
【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 】	
1.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12
2.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31
3.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59
【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	
1.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73
2.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109
IV. 2022년 경제전망	136
[별첨1]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	137
[별첨2] 2022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147

I. 2021년 경제운영 성과

◇ '21년에는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민생 등 완전한 경제회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책역량 총집중

1 [경제회복]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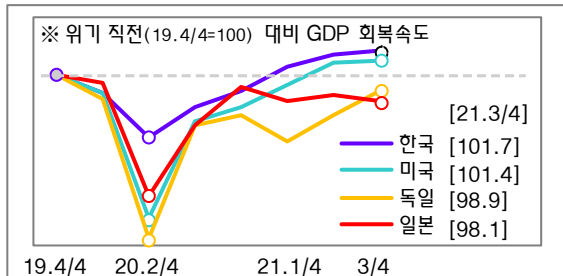
◇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진작, 투자 활성화, 수출애로 해소 등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

- ▶ (내수) 상생소비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소비증가분 특별세액공제, 소비쿠폰, 승용차 개소세 인하,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
- ▶ (투자)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지원, 세제·금융지원 확대, 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
- ▶ (수출) 출입국·물류 등 현장애로 해소, 수출금융지원 확대, 비대면·온라인 지원 강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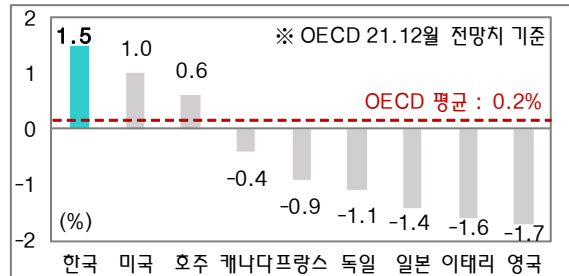
① (성장)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1/4분기) 위기前 GDP 수준을 회복하였고, 가장 빠른 회복 흐름 지속

- '20~'21년 평균 성장률도 G20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전망
- 그 결과, 금년에도 글로벌 경제규모 Top10을 확고히 유지하고 1인당 GNI는 3년만에 증가하면서 3만 5천불 수준 전망

주요 선진국 GDP 회복속도 비교



G20 선진국 '20~'21년 평균 성장률



② (수출) 수출·무역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 글로벌 무역규모 순위 1단계 상승(9→8위) 전망

- * '21년 수출액 전망 : 6,430억불<종전 최대 '18년 6,049억불>
- * '21년 무역규모 전망 : 1조 2,555억불<종전 최대 '18년 1조 1,401억불>

③ (고용) 예상을 뛰어넘어 큰 폭 반등하면서 지난해 충격 만회, 월 취업자수도 위기前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회복

- * 취업자수(만명) : ('19) 2,712 → ('20) 2,690<△22> → ('21^e) 2,725<+35>
- * 계절조정 취업자수(만명) : ('20.2) 2,750.8 → ('21.1) 2,648.5 → (11) 2,750.3

⇒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위기극복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견조한 대외신인도 유지

- * Korea's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has been the most successful (OECD, '21.2)
- *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 유지, 역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 발행(10.7일)

② [포용강화] 코로나 격차가 완화되고 고용·사회안전망도 확충

◆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및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 지속

- ※ 소상공인 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해 2차례 추경 편성 (1차 14.9조원, 2차 34.9조원)
- ▶ (소상공인) 버팀목·희망회복자금, 저리대출, 사회보험료·임대료부담 경감, 손실보상 등
- ▶ (고용유지)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공공일자리 창출 등
- ▶ (안 전 망)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생계급여 지원 강화,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등

① (소득·분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3/4분기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분배지표도 개선 흐름 지속

- * 가계소득 증가율(%) : ('20.4/4) 1.8 ('21.1/4) 0.4 (2/4)△0.7 (3/4) 8.0<역대 최대폭>
- 1분위소득 증가율(%) : 9.2 9.9 △6.3 21.5
- * 5분위배율 증감('19년 대비, 배p) : ('20.4/4)△0.05 ('21.1/4)△0.44 (2/4)△0.15 (3/4)△0.42

② (안전망) 고용보험 가입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지속 증가

- * 근로자 고보가입률(%) : ('16)69.7 ('17)71.2 ('18)71.6 ('19)70.9 ('20)72.6 ('21)75.2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만명, 기말) : ('17)158 ('18)174 ('19)188 ('20)213 ('21.11)235

③ [도약준비] 혁신 성과 가시화 등 선도형 경제 도약의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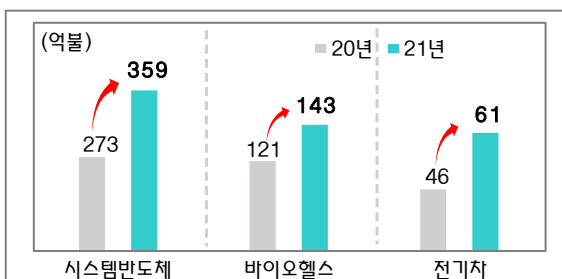
◆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하면서, 미래 구조전환에 대비한 선제 대응 강화

- ▶ 한국판 뉴딜 2.0<'21.7>, K-반도체 전략<'21.5>,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21.8>,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21.7>, 벤처 보완대책<'21.8>, BIG3+인공지능 인재양성방안<'21.4> 등
- ▶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21.10>,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 제3기 인구 TF 가동<'21.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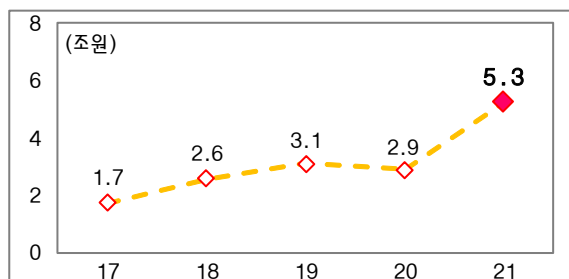
① (차세대성장동력) BIG3 등 신산업 수출 증가, DNA 생태계 강화, 제2 벤처붐 확산 등 혁신성장 성과가 본격 가시화

- * AI 공급기업수 : ('19) 220 → ('21) 991 / 데이터 공급기업수 : ('19) 393 → ('21) 1,126
- * 국내 Data산업 시장규모(조원) : ('16)13.8 ('17)14.4 ('18)15.6 ('19)16.9 ('20)19.3

BIG3산업 수출(1~11월 누적 기준)



벤처투자 금액(1/4~3/4분기 누적 기준)



② (구조전환)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구·지역경제 대책의 실효성 제고

- * 수소승용차 보급 현황('21.9월, 만대) : (한국) 1.71<세계1위> (미국) 1.16 (일본) 0.64
- * 한국의 탄소중립 준비 역량은 아시아 국가 중 2위(KMPG, 글로벌 컨설팅 기업)

[참고]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주요 성과

1.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흐름

- ◇ 지난 4년 반 동안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누적된 경제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에 진력
- 정부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양적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저성장 및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복합적 어려움에 직면
 - ☞ 혁신·포용·공정 3대 가치에 입각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 이후에도 美·中 갈등('18년), 일본 수출규제('19년), 코로나 위기('20년), 글로벌 공급망 재편('21년) 등 매년 새로운 차원의 어려움 등장
 - ☞ 기존 정책기조를 견지하면서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이를 발전적으로 보완 →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당면 위기극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

경제여건		주요 정책대응									
17 ~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자본 투자, 모방 추격형 성장, 결과중시 양적 성장 등 한계 노정 ✓ 전세계적 저성장·양극화 고착화 ✓ 분배·성장 간 선순환 필요성 부각 * OECD·IMF 등을 중심으로 포용성장론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 3축 경제 추진 > <table border="1"> <tr> <td>소득주도성장</td> <td>·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안전망 확충</td> </tr> <tr> <td>혁신성장</td> <td>· 창업생태계 강화 규제혁신 신산업 지원</td> </tr> <tr> <td>공정경제</td> <td>·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td> </tr> </table>	소득주도성장	·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안전망 확충	혁신성장	· 창업생태계 강화 규제혁신 신산업 지원	공정경제	·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소득주도성장	·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안전망 확충										
혁신성장	· 창업생태계 강화 규제혁신 신산업 지원										
공정경제	·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18 ~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 및 교역 둔화 * '19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IMF, %) : ('18.10) 3.7 → ('19.4) 3.3 → ('19.10) 3.0 * '19년 세계교역 증가 전망(IMF, %) : ('18.10) 4.0 → ('19.4) 3.4 → ('19.10) 1.1 ✓ 일본 수출규제 조치 시행('19.7) ✓ 4차 산업혁명 가속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 <table border="1"> <tr> <td>경기대응</td> <td>·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 · 규제 시스템 혁신 & 핵심규제 혁파</td> </tr> <tr> <td>혁신성장</td> <td>· D.NA + BIG3 분야 전략투자 · 제2벤처붐 확산</td> </tr> <tr> <td>포용성장</td> <td>·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td> </tr> <tr> <td>수출규제</td> <td>· 소·부·장 경쟁력 강화 3중 세트 (위원회 출범,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신설)</td> </tr> </table>	경기대응	·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 · 규제 시스템 혁신 & 핵심규제 혁파	혁신성장	· D.NA + BIG3 분야 전략투자 · 제2벤처붐 확산	포용성장	·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수출규제	· 소·부·장 경쟁력 강화 3중 세트 (위원회 출범,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신설)
경기대응	·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 · 규제 시스템 혁신 & 핵심규제 혁파										
혁신성장	· D.NA + BIG3 분야 전략투자 · 제2벤처붐 확산										
포용성장	·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수출규제	· 소·부·장 경쟁력 강화 3중 세트 (위원회 출범,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신설)										
20 ~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발생 * '20.3.11일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 '20년 세계경제는 12년만에 역성장 기록 ✓ 코로나19로부터 촉발된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등 구조적 대변혁 직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위기대응 + 포스트코로나 선제 대비 <table border="1"> <tr> <td>위기극복</td> <td>· 비상경제체제로 신속 전환 · 6차례 추경 포함 과감한 선제 지원</td> </tr> <tr> <td>경제회복</td> <td>· 소비·관광 내수활력 제고 ·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 수출력 보강</td> </tr> <tr> <td>구조전환</td> <td>· 한국판 뉴딜('25년까지 160조원 투자) ·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td> </tr> </table>	위기극복	· 비상경제체제로 신속 전환 · 6차례 추경 포함 과감한 선제 지원	경제회복	· 소비·관광 내수활력 제고 ·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 수출력 보강	구조전환	· 한국판 뉴딜('25년까지 160조원 투자) ·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위기극복	· 비상경제체제로 신속 전환 · 6차례 추경 포함 과감한 선제 지원										
경제회복	· 소비·관광 내수활력 제고 ·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 수출력 보강										
구조전환	· 한국판 뉴딜('25년까지 160조원 투자) ·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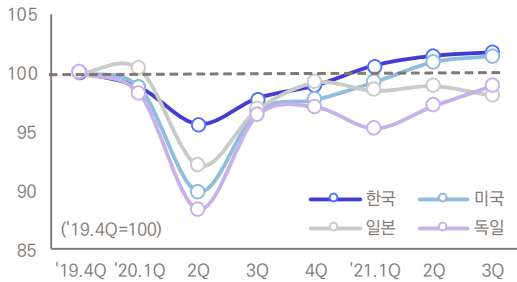
2.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주요성과

◇ ① 거시경제 · ② 혁신성장 · ③ 포용성장 · ④ 구조전환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

① 거시경제 분야

코로나19 대응 국민과 함께 이룬 '위기대응 모범국가'

[주요 선진국 GDP 추이]



✓ 경제규모 10위권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위기전 회복

* 위기 직전('19.4/4=100) 대비 '21.3/4 GDP 규모
 : (韓)101.7 (美)101.4 (獨)98.9 (日)98.1 (英)97.9

✓ 주요국 대비 '20년 역성장폭 최소화

* (韓)△0.9 (美)△3.4 (英)△9.7 (OECD평균)△4.7%

✓ '23년까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 유지 전망

* 위기 전('19=100) 대비 '23년 GDP 규모(OECD, '21.12월 전망)
 : (韓)109.0 (美)108.3 (獨)104.3 (英)103.2 (日)101.5

경제위상 제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진경제'로 도약

[글로벌 경제규모 순위]

'19년	'20년	'21년'
9위 브라질	9위 캐나다	9위 캐나다
10위 캐나다	10위 한국	10위 한국
11위 러시아	11위 러시아	11위 러시아
12위 한국	12위 브라질	12위 브라질

✓ '20년 글로벌 TOP10 경제 진입

<'21년에도 TOP10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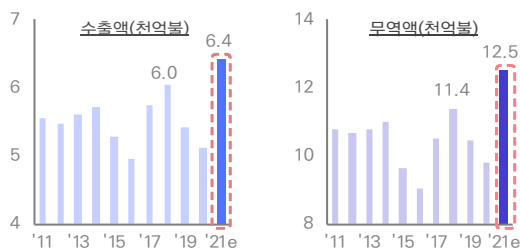
✓ '21년 1인당 GNI 3만 5천불 수준 도달 예상

✓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

* (WEF) 17위^{'17년}→13위^{'19년} / (IMD) 29위^{'17년}→23위^{'21년}

수출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대급 실적 달성

[수출 · 무역액 추이]



✓ '21년 무역 트리플크라운 달성

<최단기간 1조불, 역대 최대 수출, 무역액>

✓ 세계 8위 무역강국으로 발돋움

* ('07~'08) 11위 → ('09~'11) 9위 → ('12) 8위 → ('13~'20) 9위 → ('21.1~9월) 8위

대외신인도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평가는 어느 때보다 견고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구분	Moody's	S&P	Fitch
AA (Aa2)			
AA- (Aa3)			
A+ (A1)			
A (A2)			

✓ 코로나 위기에도 역대 최고수준 신용등급 유지

✓ CDS프리미엄 역대 최저 수준

* ('17) 53 ('18) 39 ('19) 22 ('20) 22 ('21.11월)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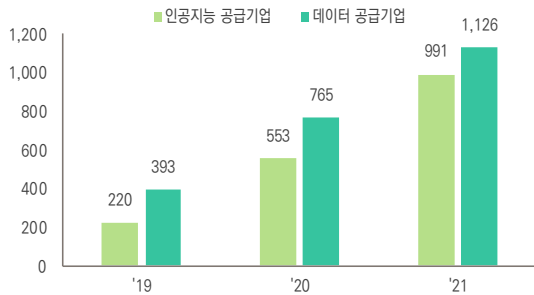
✓ 외평채 역대 최저 가산금리 발행

* '21.10월 발행 외평채 가산금리(25bp) 역대 최저

② 혁신성장 분야

한국판 뉴딜 미래대비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

[인공지능·데이터 공급기업 수(개)]



✓ 한국판 뉴딜 마중물 재정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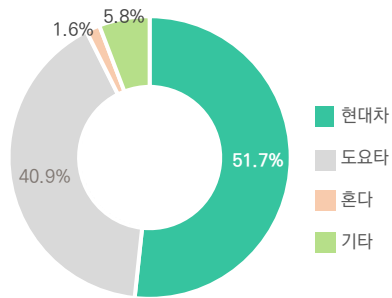
* ('20) 5.4 → ('21) 27.1 → ('22) 33.1조원

✓ 데이터댐 → 4,300여종 10억건 이상 데이터 구축·개방
국내 데이터산업 14.3% 성장

✓ 초등생 교실 38만실 Wi-fi 설치,
태블릿 PC 24만대 보급

BIG3 신산업 새로운 주력산업으로서 성과 가시화

[수소차 글로벌시장 점유율]



✓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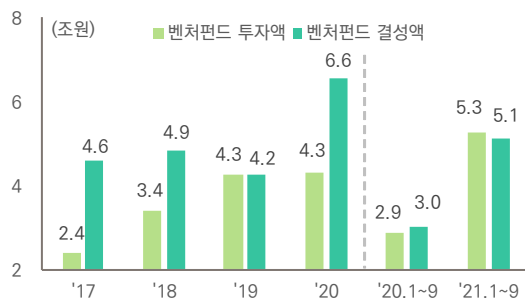
✓ 반도체 수출액 1,000억불 돌파 및 점유율 2위 달성

✓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액 역대 최대규모 기록

* ('17) 126 ('18) 149 ('19) 157 ('20) 217억불

벤처·창업 제2 벤처붐 확산·가속화

[벤처투자액 및 펀드결성액]



✓ 신규 벤처투자 역대 최대치

* ('17) 2.38 → ('20) 4.30 ('21.1~9) 5.26조원<역대 최대>

✓ 기술창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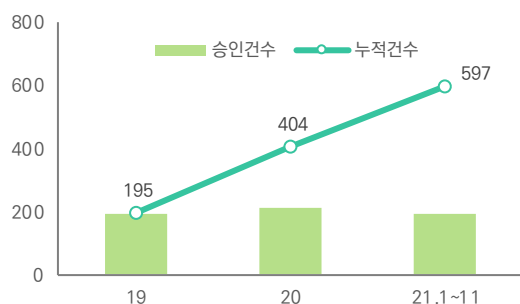
* ('17) 19.9 → ('20) 22.9 ('21.1~9) 18.1만개

✓ 유니콘 기업 15개 돌파

* ('17) 3 → ('20) 13 ('21.12) 15개<역대 최대>

규제혁신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현장애로 해소

[규제샌드박스 연도별 승인건수]



✓ 규제샌드박스 사례 597건 달성

* ('19) 195건 ('20) 209건 ('21.11) 193건

✓ 신산업분야 및 현장중심 기업규제 개선 추진

* 10대 분야 규제 210건, 현장밀착형 28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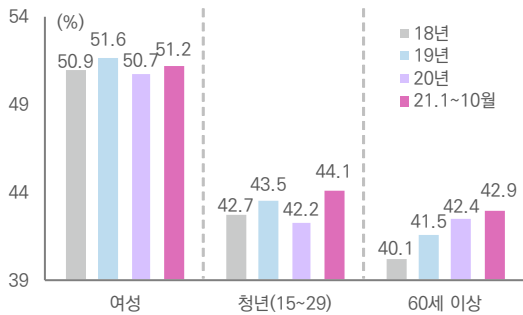
✓ 한걸음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자 갈등 최소화

* 농어촌빈집속박, 미래형운송수단 생활물류 등 5개 과제 조율

③ 포용성장 분야

일자리 양 취약계층 등 일자리 확충 및 코로나 고용충격 최소화

[여성·청년·고령층 고용률 추이]



✓ 취약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노력에 힘입어 여성·청년·고령층 등 고용여건 지속 개선세

✓ '20년에는 코로나 위기에 불구하고 주요국 대비 고용충격을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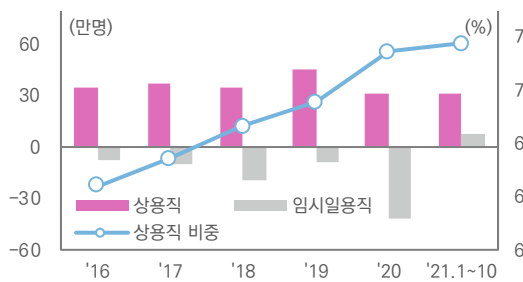
* '20년 실업률 상승폭(%p) : (韓)0.2 (獨)0.6 (호주)1.3 (캐나다)3.8 (美)4.4

✓ '21년 들어서는 고용회복이 본격화되며 위기 전 수준을 거의 회복

* '21.11월 취업자 수(SA, '20.2=100) : 99.98

일자리 질 근로시간 감소·임금격차 완화 등 근로여건 전반 개선

[종사상지위별 근로자 수 증감]



✓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 연간 근로시간(시간) : ('16) 2,033 ('20) 1,927

✓ 최저임금 인상 및 취약계층 일자리·소득지원 결과 고용시장 내 임금격차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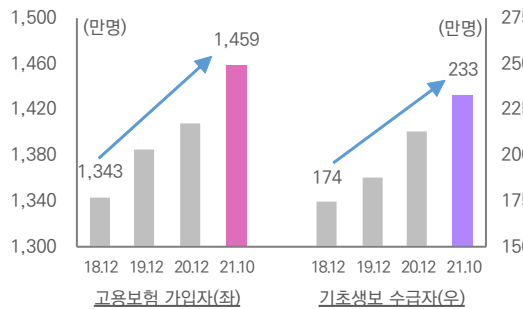
* 저임금근로자 비중(%) : ('16) 23.5 ('20) 16.0

✓ 정규직 채용문화가 확산되며 상용직근로자 비중 확대

* 상용직근로자 비중(%) : ('16) 66.4 ('20) 71.4

안전망 강화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포용성 제고

[기초생보·고용보험 지원 확대]



✓ 기초생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사각지대 해소

✓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노인빈곤 개선

* 고령층 지니계수 : ('16) 0.425 ('20) 0.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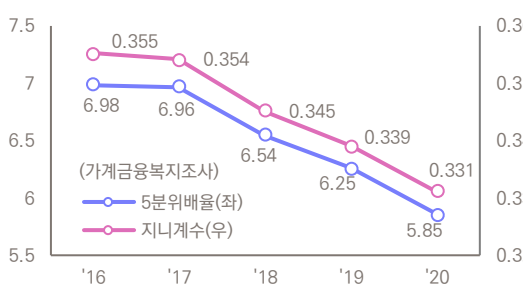
✓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중(%) : ('17) 33.7 ('19) 30.2

✓ 전국민 고용보험·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분 배 적극적 포용정책으로 임기 중 뚜렷한 개선세 시현

[5분위배율 및 지니계수 추이]



✓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꾸준히 증가

* 연간소득 증가율(%) : [전 체] ('17)4.1 ('18)2.1 ('19)1.7 ('20) 3.4 [1분위] ('17)5.7 ('18)4.4 ('19)4.6 ('20)12.0

✓ 코로나 위기에 불구 분배지표 큰 폭 개선

✓ 정부 정책의 분배개선 효과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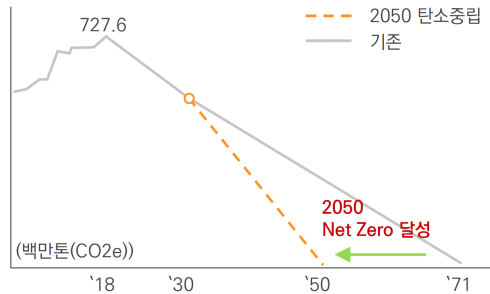
* 시장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차 : ('16)3.90 ('17)4.31 ('18)4.61 ('19)5.31 ('20)5.52

④ 구조전환 분야

탄소중립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감축경로]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폭 상향

* (기준) '18년대비 $\Delta 26.3\%$ → (상향) '18년대비 $\Delta 40\%$

✓ 탄소중립 재정투자 보강 및 제도적 기반 확충

* '22년 12조원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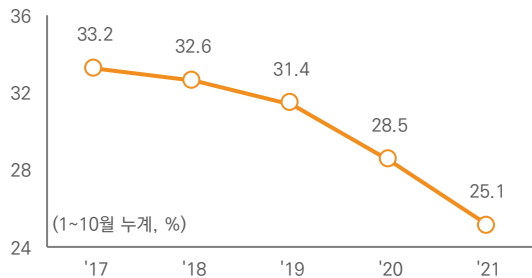
✓ 기업근로자 차원의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 선제적 사업전환 수요 발굴, 직무전환 훈련 강화 등

소·부·장

소부장 근본적 자립화 및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100대 핵심품목 對日 의존도]



✓ "소부장 3중 세트"를 통해 소부장 자립화 안착

* 경쟁력강화위 신설, 특별법 전면 개정, 특별회계 신설

✓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對日의존도 획기적 완화

* ('19) 31.4% → ('21) 25.1% ($\Delta 6.3\text{p}$) (1~10월 누계)

✓ 시기총액 1조원 이상 소부장 클럽 2배 이상 증가

* ('19) 13개 → ('21.9) 34개 (2.6배 증가)

인구변화 대응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제고

[1~3기 인구정책 TF 주요 추진과제]

인구절벽 충격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돌봄부담 완화 고령층 계속고용 활성화
축소사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정원 유연화 등 구조개혁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국민연금·건강보험 운영 개선
지역소멸 선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지역주도 인구활력계획 수립

✓ 3차례 인구TF 운영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 출산율 제고 정책 + 적응력 강화 대책 2-Track 추진

✓ 출산율 반등 계기 마련을 위해 5대 과제 집중 추진

*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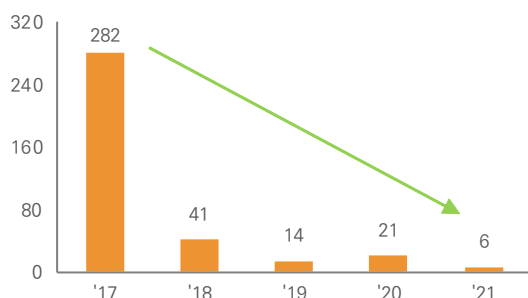
✓ 구조적 이슈에 대한 개혁방안 적극 마련 예정

* 외국인 활용체계 구축, 대학 규제완화, 비대면 의료 등

공정경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조성

[순환출자 고리 수(개)]



✓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 완화

✓ 공정거래협약, 상생결제 등 대중소 협력기반 마련

* 공정거래협약 참여기업(개) : ('17) 229 → ('21) 358
상생결제 누적 실적(조원) : ('18) 292 → ('21) 642

✓ 하도급 직불제 확대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 하도급 직불제 활용실적(조원) : ('17) 9.8 → ('21) 40.6

II. 2022년 경제여건 평가

◇ '22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 일상회복 추진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대내외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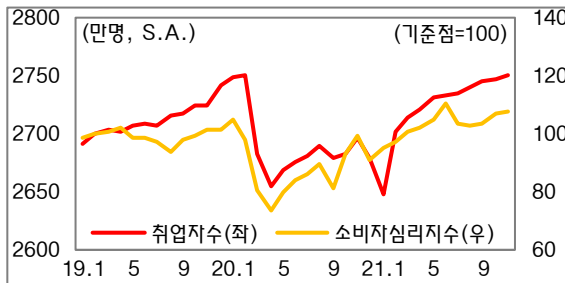
1 [성장] 소비·투자·수출의 고른 증가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소비) 국내외 경기 개선에 따른 그간의 고용·소득 증가, 심리 개선 등이 소비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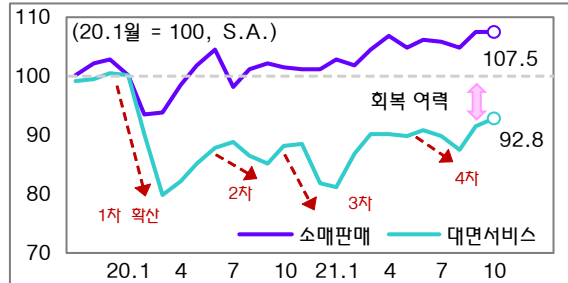
* 취업자수 증감(만명) : ('19) 30 → ('20) △22 → ('21^e) 35 → ('22^e) 28

▪ 다만,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방역 상황 전개 추이가 불확실성으로 작용

취업자수 및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재화소비·대면서비스업 생산 추이



○ (투자) 반도체 등 IT 부문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신성장·친환경 분야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수요 확대 전망

* 반도체 매출 증가율 전망(% , WSTS<'21.11월>) : ('21^e) 25.6 → ('22^e) 8.8

▪ 건설투자도 주택착공·SOC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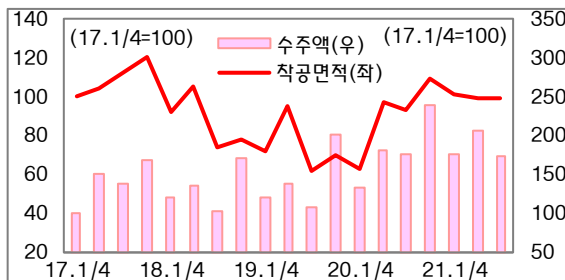
* 주택 착공면적(전년동기비, %) : ('20.3/4)50.0 (4/4)55.4 ('21.1/4)63.0 (2/4)2.2 (3/4)6.7

* SOC 예산(조원, 본예산 기준) : ('21) 26.5 → ('22) 28.0 <전년대비 +1.5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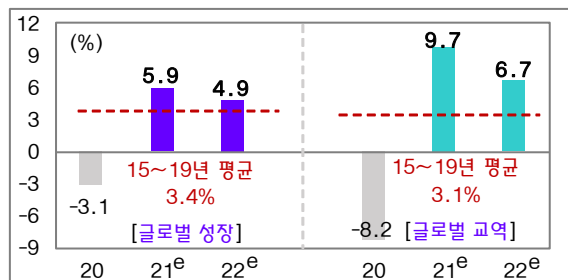
○ (수출) 양호한 글로벌 경기·교역 여건 하에 증가세 유지 전망 <다만, 금년 가파른 증가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증가율은 둔화>

* 수출 증가율(%) : ('21.1/4)12.5 (2/4)42.1 (3/4)26.5 (10)24.2 (11)32.0 (12.1~10)20.4

주택건설 선행지표 추이



글로벌 성장률·교역 증가율(IMF, '21.10)



②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구조적 제약 요인 상존

- **(수요)** 고용창출력이 높은 대면 서비스업 업황 회복, 일자리 정책지원 확대 등이 노동수요 개선을 뒷받침
 -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음식숙박)**19.0** (예술·스포츠·여가)**14.5** (제조업)7.6 (건설업)10.8
 - * 일자리 예산(조원, 본예산 기준) : ('21) 30.1 → ('22) **31.1** <전년대비 +1.0조원>
- **(공급)** 최근 구직활동 확대 추세는 긍정적 요인이나,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
 - * 경제활동참가율(% , 1~11월 평균) : ('19) 63.4 → ('20) 62.6 → ('21) 62.8
 - * 생산가능인구 증감(만명) : ('20)△24.9 → ('21^e)△34.9 → ('22^e)△**35.5**

③ [물가] 당분간 수요측·공급측 상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수요)** 대면 서비스 등 내수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수요측 상방압력이 높아지겠으나, 코로나 전개 양상 관련 불확실성 상존
- **(공급)** 농축수산물·석유류의 경우 금년 작황 개선,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등으로 금년 보다는 완만한 가격 상승이 예상
 - * '21년 주요 품목 생산량 전망(천톤) : (배)185<전년비 +39.3%> (사과)478<+13.2%> (쌀)3,880<+10.7%> (겨울양배추)171<+3.3%>
 - * 국제유가 전망(\$/B, 주요기관 평균) : ('20) 42 ('21^e) **70<+65.5%>** ('22^e) **73<+4.3%>**
- 다만, 가공식품·외식물가는 그간 원재료비 상승 요인이 점차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될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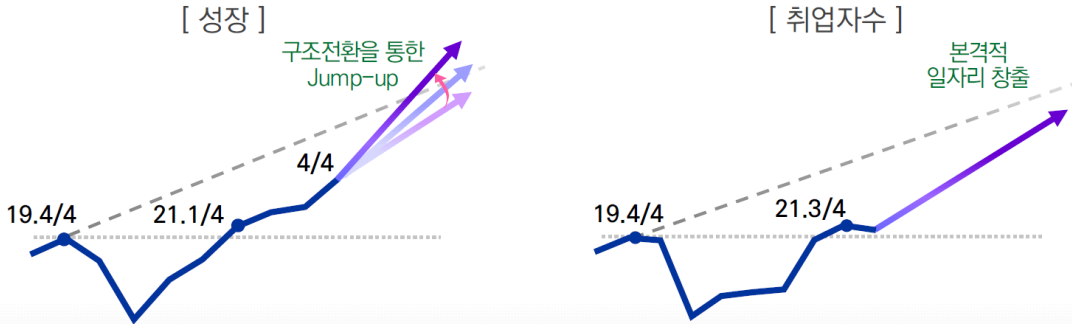
④ [리스크]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전세계적 리스크 확대 예상

- **(글로벌 리스크)**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 경기·물가·자본유출입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
 - 1] 오미크론 77개국 확산(12.15일) → 세계경제 성장 둔화·물가 상승 위협(무디스·피치 등)
 - 2] 공급망 차질 영향 및 인플레이션이 '23년까지 지속될 가능성 (무디스)
 - 3] Fed(12월 FOMC): 1월부터 테이퍼링 가속 결정 → 가계·한계기업 부담 증가 등 영향 예상
- **(부채 리스크)**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가계·자영업자·한계기업 부채가 경제·한시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 현실화 우려
 - * 가계신용(전년동기비, %, 기말 기준) : ('19)4.2 ('20) 8.0 ('21.1/4) 9.5 (2/4)10.4 (3/4)9.7
 - * 자영업자 부채(전년동기비, %, 기말 기준) : ('19)9.7 ('20)17.3 ('21.1/4)18.8 (2/4)13.7
- **(구조적 리스크)** 생산가능인구 감소,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구조 변화(디지털화/탄소중립), 新양극화 등이 고용시장 중심으로 영향 예상

Ⅲ. 2022년 경제정책방향

정책
목표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



3 + 2
정책
방향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

1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 ① 정책조합(Policy Mix) 최적화
- ② 피해부문 중심 내수 진작
- ③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 확산
- ④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

2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 ①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 ②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 ③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
- ④ 新양극화 대응

3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①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
- ②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연착륙 지원
- ③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
- ④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이슈 대응

+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1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 ①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
- ② BIG3 등 유망 신산업 육성
- ③ 주력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 ④ 벤처창업, 인재양성 등 혁신기반 조성

2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 ① 탄소중립 후속조치 본격 이행
- ② 인구·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 ③ 공정·상생·사회적 자본 확산
- ④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

추진
기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

〈 목 차 〉

1.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12
① 정책조합(policy mix) 최적화	12
② 피해부문 중심 내수 진작	16
③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 확산	21
④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	26
2.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31
①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31
②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37
③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	44
④ 新양극화 대응	51
3.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59
①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	59
②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연착륙 지원	61
③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	64
④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이슈 대응	70

1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① 정책조합(Policy Mix) 최적화

① (재정)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기조 견지

- ① 경기 회복세 확대, 민생안정·新양극화 대응, 경제구조 전환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 유지

* '22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8.9%)

② 확장재정의 효과 제고를 위해 선제적 집행 관리에 주력

-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3%)를 이어가되, 분기별 집행규모는 경기·물가흐름 등을 보아가며 탄력 조정

* 상반기 집행목표(%) : ('18) 58 ('19) 61 ('20) 62 ('21) 63 ('22) 63

- 특히,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SOC 사업 등은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 각별히 노력

③ 지방재정도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운용

- 지자체 및 지방교육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상향

* 상반기 집행목표(% , '21→'22년) : (지자체) 60.0→60.5 (지방교육) 63.5→64.0

- '21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정산분은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확정 즉시('22.4월) 지자체에 지급하여 추경 편성 등에 활용 독려

② (통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 코로나19 전개상황과 성장·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③ (금융) 한시 지원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

① '22년 정책금융은 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을 조정(34.3 → 7.0조원)하되, 총액은 금년과 유사한 수준(494.8→495.0조원)으로 공급

* 향후 경제·방역상황 등과 연계하여 실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

주요 기관별 기존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 정상화 계획

구분	지원 프로그램	공급계획	
		'21년	'22년
기은	코로나 유동성 프로그램	1.0	0.2
신보	코로나 특례보증	2.2	0.3
기보	코로나 특례보증	0.9	종료
수은	코로나 특별지원 프로그램	17.9	2.2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0.8	0.2

② 채권시장 한시 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는 계획대로 '21년말 매입을 종료하고 향후 필요시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 추진
- 회사채·CP 차환 지원 프로그램 등은 잔여재원* 범위 내에서 지속 운영하면서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

* 잔여재원(12.2일): (P-CBO) 11.7조원 중 3.8조원 / (차환지원) 6.1조원 중 3.6조원

- SPV 매입종료 이후 시장수요 등을 보아가며 산은 회사채 차환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확대* 등 추진

* 산은 회사채 차환지원 대상: (현행) BBB 이상 → (개선) BB까지 확대(Fallen Angel 한정)

③ 소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현재기한 '22.3월말)가 정상화 되더라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지원조치 보강

- 既往마련한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지원 대책(4조원 수준)을 통해 운영자금 공급,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등 지원

-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전용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신설(산은)

* ^{가칭}힘내라 대한민국 시즌2 / 시즌1(20.3~)은 코로나 피해기업에 5조원 우대금리 대출 지원

-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산은 차주) 등을 대상으로 기업별 신용도·상환여력을 고려한 채무구조 개선·조정 등 맞춤형 연착륙 방안 마련

* 세부방안 및 시행시기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¹⁾ 및 캠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²⁾은 6개월 추가 연장('21.12월→'22.6월)

1) 코로나19 피해자 대상 원금상환 유예 및 가산이자 부과 등 금지

2) 개인연체채권 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캠프가 매입

- 캠프 연체채권매입펀드(2조원)는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매입주기 단축(현재 분기당 1회) 등 제도개선 병행

-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지원(개인사업자 대출119 프로그램 등) 활성화를 위해 관련 평가체계 개선 등 인센티브 부여

* ①은행경영실태 평가시 119 프로그램 실적을 사회적책임 이행평가 항목에 반영

②금감원의 119 프로그램 지원 우수은행 공시대상 확대

↳ 전체 15개 은행 중 대형은행 2개, 중소형은행 2개를 각각 선정하여 공시 중(반기별)

-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¹⁾는 유예기간을 확대(6개월→1년)하고, 지원범위를 넓혀²⁾ 여타 재난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재설계

1) 신복위 채무조정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소득감소시 상환유예('20.3월~)

2) (현행)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시 → (개선) 감염병, 태풍, 화재 등에 따른 소득감소시

④ 예대율·유동성 등 관련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쏠금융권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 등과 연계하여 정상화 검토

* ①예대율 규제(100% 이내) 5%p이내 위반 제재 면제('22.3월 기한만료)

②외화 LCR 80%→70% / 통합 LCR 100%→85%('22.3월 기한만료)

- 정상화 추진 시에도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관리

⑤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국내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완화*했던 외환건전성 제도는 향후 시장여건 등을 보아가며 정상화

* ①선물환포지션 (국내)40→50%, (외은)200→250%<시한 없음> ②외화LCR 80→70%<'22.3월 시한>

④ (방역) 경제정상화 기반이 되는 방역상황 안정 총력 지원

- ① 단기적으로 방역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정부역량 총집중
 - 확산세 차단, 의료체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일상회복 전환을 재개·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
- ② 방역 대응과 함께 백신 구매·접종, 치료제 도입 등 지원 강화
 - '22년 중 백신 1.7억회분*, 경구용치료제 60.4만명분 확보 추진
 - * '21년 이월물량 8천만회분 + '22년 본예산 9천만회분
 - 백신 접종률 제고, 지자체의 접종시행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 국고지원비율 10%p 한시 상향*
 - * (기준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 ('22년 한시적용) 서울 40%, 지방 60%
- ③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등 충분한 병상 확보 및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쏠단계를 차질없이 지원
 - 지역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기존 4개, 신규 1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 설계 착수
 - * 호남·충청·경남권 설계 중('22년 착공), 경북권 설계 예정('23년 착공), 추가 1개소 공모
- ④ 백신자주권 확보 및 「K-글로벌 백신허브」 성과 가시화 추진
 - (국산 백신 개발) 현재 임상 중인 국내 백신이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비용 등 집중 지원*
 - * 현재 국내 8개 기업이 코로나19백신 임상시험 진행 중
 - (생산역량 확충) 백신 상용화·수출 등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¹⁾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²⁾
 - 1) 「K-글로벌 백신펀드」(총 1조원), 한국형 백신개발 바이오펀드 등 신규 조성
 - 2) 국내 기업수요·밸류체인 등을 고려하여 유치 부문·기업 등을 선정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패키지 지원(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외국인투자 현금·입지지원 등)
 - (기반 조성) 글로벌 백신 허브화 기반 조성을 위해 mRNA 공정·대량생산 기술개발 실증기반 구축* 및 백신 공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mRNA 백신 실증지원기반 구축('22년 13.7억원),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22년 41억원)
 - (글로벌 협력·연대 강화) 미국 외 EU·호주·베트남 등과 백신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WHO·CEPI·ADB 등 국제기구 협력 강화

② 피해부문 중심 내수 진작

※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추진

① 피해부문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 강화

- ① (추가소비 특별공제) '21년 도입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대상 별도 소득공제 신설

구 분	'21년(현행)	'22년
전체 소비 증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20년대비 5%이상 증가분 ▶ (공제율) 10% ▶ (공제한도) 100만원 	<p>< 1년 연장 시행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21년대비 5%이상 증가분 ▶ (공제율) 10% ▶ (공제한도) 100만원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p>별도 공제 없음</p> <p>* 전통시장 소비 증가시에도 전체 소비 미증가시 공제 없음</p>	<p>< 별도 공제 신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21년대비 5%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분 ▶ (공제율) 10% ▶ (공제한도) 전체소비 한도(100만원) 공유

- ② (상생소비 더하기+) 상생소비 관심도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추천 방식의 지원제도 한시 도입

- ▶ (추진방안) 대상소비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카드결제시 임의로 추천번호 부여 → 익월 추천 및 당첨금 지급
 - ▶ (시행기간) 동행세일(5월, 잠정) 전·후 3개월 간 한시 시행
- ※ 대상소비처·당첨금 지급방식 등 세부 사업내용은 추후 확정

- ③ (상생소비의 달) '22.5월(동행세일 개최예정)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하여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연계 지원

- ▶ (지역사랑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 상향(월 최대 100만원)·캐시백 지급 확대 (10%p → 최대 15%p) < 참여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
- ▶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 확대(월 50만원 → 최대 100만원)

② 소비 촉진효과가 검증된 기존 지원책 연장 및 재추진

① 금년 소비쿠폰 중 잔여 가용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주요 피해분야 지원에 지속 활용

* '21→'22년 이월 예상 쿠폰: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총 3종 / 약 400억원 규모

② 최근 차량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5→3.5%) 조치를 '22년 상반기까지 연장

③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15조원), 은누리상품권(3.5조원) 발행 지원 지속

④ 연중 소비 분위기 지속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 코리아세일 페스타 - 크리스마스마켓'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소비행사 순차 개최

* (5월초) 대한민국 동행세일 →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 (12월) 크리스마스마켓

③ 국내 관광 붐 조성 및 新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

① 방역상황을 보아가며 '22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 운영

- ▶ [철도] KTX + 관광지 입장권 등 결합상품 및 관광열차 50% 할인
- ▶ [고속버스] 기간별(3~7일) 선택 가능한 프리패스 이용권 할인(3만원 내외)
- ▶ [유원지] 놀이공원 입장권 및 자유이용권 할인(1만원 내외)
- ▶ [숙박·여행] 숙박쿠폰 집행상황 고려하여 이월되는 경우 연계

②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를 5곳 이상(현재 3곳)으로 확대

* 휴가비 40만원(근로자 20 + 기업 10 + 정부 10) + 지자체 상품 할인 지원 최대 10만원

③ 우수한 국내 치안 여건 등에 기반한 야간관광 활성화 본격 추진

- 야간관광 콘텐츠 확충, 인프라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야간관광 발전전략(가칭)」 수립('22.下)

-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5개소) 및 「야행주간*」 운영

* 야간관광에 맞는 공연, 관람 명소 조성, 지역 음식 등 특화 콘텐츠 지원
야행주간 기간 해당지역 관광안내소 영업시간 연장(오후6시→오후12시)

- 「야간명소 100선」을 선정,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하여 적극 홍보하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숨어있는 명소 추가 발굴

- ▶ 야간관광 100선 방문 스탬프 투어 진행 (방문횟수에 따른 경품 제공)
- ▶ 대국민 야간여행 공모전(나만 아는 밤 관광지^(가칭)) 개최
- ▶ 'Visit Korea',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 야간관광 테마존 운영
- ▶ 야간관광지를 배경으로 "Enjoy Safe Korea" 챌린지 진행

④ '여행이 곧 일상'이 되는 새로운 여가문화 정착 추진을 위해 구독경제 개념을 관광에 접목한 '여행구독 서비스' 확산

- * (현재) 강원지역 트래킹 여행구독 상품(3개) 시행중 → (개선) 他지역, 他콘텐츠로 여행구독 서비스 등 제공 확대
- ** 여행구독 서비스: 구독자 선호에 따른 지역 여행정보 큐레이션 제공 서비스

⑤ 여행과 치유가 함께하는 힐링 관광환경 적극 조성

- '22년 중 국내 둘레 걷기길을 모두 연결한 4,500Km 초장거리 여행길('코리아 둘레길')을 구축하고, 걷기여행 세계명소로 육성

해파랑길(동해안) 50개 코스 750km ('16년 개통)	+	남파랑길(남해안) 90개 코스 1,470km('20년 개통)	+	서해랑길(서해안) 109개 코스 1,800km('22.3월 개통)	+	DMZ 평화의 길 (주노선) 524km ('22.12월 조성) (테마노선) 10개 ('21년 재개)
---	---	--	---	---	---	--

※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문체부(운영총괄), 행안부(접경지역), 농식품부(농촌관광), 해수부(어촌관광)

- 국립공원(22개소)을 통한 심리치유·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 해양치유센터 4개소 건립(~24년) 등 해양치유관광 거점 조성

⑥ 친환경·저탄소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숙박시설, 음식 쓰레기 저감식당 등 지속가능관광 관련 DB* 구축·제공

* 관광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성요소별 온실가스 배출원·배출량 조사 통계) 등과 연계

⑦ 펫팸족(Pet+Family) 증가에 대응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 조성

- ▶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선정하고, 주변 이용가능시설과 연계한 DB 구축
* 반려견과 걷기 좋은 길, 펫팸족을 위한 여행지, 반려견 출입가능 야영장 등
- ▶ 반려동물 동반여행시 지켜야할 **펫티켓**(pet+etiquette) 캠페인 전개

④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제관광 기반 단계적 정상화

- ① 국제관광 본격 재개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 지속 등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 6개월 추가 연장('21년말→'22.6월말)
 -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제한도 폐지*
 - * (현행) 격리좌석(후방 3열) 이격좌석(좌우 1칸) 제외 → (개선) 별도 제한없이 운영
- ② 국제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 지원,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現 5,000불) 폐지
 - * ('79 도입) \$500 → ('85) \$1,000 → ('95) \$2,000 → ('06) \$3,000 → ('19) \$5,000
- ③ 방역상황이 안전한 국가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 현재 사이판(7월~), 싱가포르(11월~) 여행안전권역 시행, UAE와도 협의 진행 중
- ④ 코로나19 이후 정지된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¹⁾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고, 단기사증 발급²⁾도 방역안전국부터 단계적 확대
 - 1) '20.4월 이후 91개국 대상 사증면제협정·무사증 입국 중단 → '21.9월 유럽 28개국 해제, 11월 싱가포르 해제
 - 2) 현재 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무역, 전문인력 등 일부 필수목적에 제한적 허용
- ⑤ 국제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국제 항공노선 본격 증편·복원
 - * (팬데믹 직전, '20.1) 45개국, 255개 노선, 주 4,712회
→ ('20.4) 15개국, 30개 노선, 주 121회(▽97%) → (현재) 31개국, 70개 노선, 주330회

⑤ 방한관광 활성화 및 수요 선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 ① 방한심리·수요 회복 지원 및 방한관광 유통채널 복원
 - 잠재된 방한 수요 창출을 위해 주요 시장별 맞춤형 방한관광 프로모션, 한국관광 해외광고¹⁾, 한류팬 대상 홍보 강화²⁾
 - 1) 지역관광지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 해외 확산
 - 2) 한국문화 관심층, 인플루언서 등에 한류콘텐츠로 구성된 'K-박스' 배송
 - 해외 미디어·여행업 관계자·인플루언서 등을 국내로 초청하여 방한관광 상품 안전·매력도 검증 및 유통채널 재건

② 대표 방한관광 콘텐츠 발굴·육성 및 인프라 조성

- K-POP 연계 대규모 행사인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확대·보강하여 방한관광 본격 재개의 신호탄으로 활용
 - 국제관광 정상화 시점 등을 보아가며 개최시점을 금년보다 앞당기고, 개최기간도 10일 내외로 추진('21년 11월 / 2일간 개최)
 - 행사 관심도 제고를 위해 K-POP 외에도 드라마·영화·비보이댄스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보강
 - 항공권 특별할인(예: 2+1항공권), 숙박권 및 체험상품 선판매 등 방한상품 특별 판촉과 연계
- * 축제기간 前부터 K-프렌즈(한국관광서포터즈) 활성화, 라이브 랜선투어, 유력인사 초청 팸투어 등 마케팅 활용 강화
- 한류 팬 방한 유도를 위해 다양한 한류체험 기반시설 조성

- ▶ 광화문 일대에 문화관광콘텐츠와 실감기술을 결합한 상징공간 조성
- ▶ 'K스타일허브'는 실감기술을 접목한 한류체험 명소로 리모델링(~'22.3월)
- ▶ 국내 최초 초대형 케이팝 전용 공연장인 'C라이브시티 아레나' 민간 주도 조성(~'24년)

- 방한 관광객 지역방문 확산 및 도시관광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관광거점도시(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육성 본격화
- * 도시별 기본계획 보완·조정('22.1월)을 거쳐 각 거점도시별 사업본격 추진('22.2월~)

③ 방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고 및 소비활성화 유도

- 외국인 관광객 물품 구매시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 상향
- * (현행) 총 거래가액 한도 200만원 → (개선) 총 거래가액 한도 250만원
-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특례 활성화를 위해 특례 적용 호텔로 지정되기 위한 숙박비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22년 한시)
- * (현행) '20년 또는 '21년 대비 숙박비 10% 이하 인상 호텔 → (개선) '18년~'21년 중 특정 1개연도 대비 숙박비 10% 이하 인상 호텔

③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 확산

① 전략산업 · 탄소중립 대응 등 미래대비 투자 중심 인센티브 확충

① R&D·시설투자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 운영

- 그간 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3대 분야(반도체·배터리·백신)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최초 지정('22.2월)

* (반도체) R&D 20개/시설 19개, (배터리) 9개/9개, (백신) 5개/3개

-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허용*

* 일정비율 이상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시 인정('22.2월 조특법 시행령 개정)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2	8	25	일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국가전략기술	6	8	16	4

②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중립 핵심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대폭 강화

- '탄소중립'을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하여 탄소 다배출 업종 주요기술, 혁신기술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22.2월)

* (현행) 미래차, 전자정보 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등 12개 분야 → (개편) 12+1분야(탄소중립)

- ▶ 현행 12개 분야에 산재 열거된 주요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신설되는 '탄소중립' 분야로 모으고, 각 기술범위 확대 조정
- ▶ 탄소저감 효과가 크면서도 저탄소공정 전환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주요 기술 추가
- ▶ 그린수소 생산, 수소유동환원 비고로 제철,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등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혁신 기술 확대

- 이 중 수소 관련 기술 등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

③ 정책자금도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대응 투자 등에 집중 공급

-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한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산은, '21.下~'23)
-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는 '탄소 스프레드 프로그램*' 운영(산은, 5조원)
 - * 사전·사후평가절차 운영 → 투자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등급 S/A/B)에 따라 우대금리를 차등화하고 계획대비 실적 미달시 우대금리 회수 가능
- 재생에너지, 수소인프라, 그린혁신기술·기업 등 초기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 가동(산은, 0.3조원)
- 탄소배출 감축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총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 운영(수은, '22.上~'30)

* '18년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 비율에 따라 최대 1%p 금리 우대

④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간 1년 연장('21년말→'22년말)

* (중소기업) 50 → 70%, (중견기업) 30 → 50%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법·제도 기반 완비

①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및 세부 지원내용·절차 등을 구체화한 하위법령 제정 추진('22.上)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안)」 주요 지원내용

- ▶ (투자지원)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기업신청권 부여), 입주기업 설비투자 지원,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 지원 등
- ▶ (인력양성) 계약학과 설치, 특성화대학·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
- ▶ (기술개발) 국가첨단전략기술 개발사업 추진근거 마련 및 R&D 예산 우선 반영
- ▶ (규제개선)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및 관계기관 검토(최대 45일내) 의무화
- ▶ (기술·인력보호) 산업기술보호법과 연계하여 핵심기술·인력 보호체계 구축

② 시행령 제정 이후 기술조정위원회 구성, 전략기술* 지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지원대상 확정

* 경제안보 차원에서 특히 중요하고,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되는 기술

③ 전방위적 지원으로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 뒷받침

[기업 : 33.0조원] ※ '20년 25.0 → '21년 28.0 → '22년 33.0조원

① 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22년 33.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어로 발굴·해소 및 적기 착공 지원

< 기업투자 프로젝트 후보(안) >

- ▶ 일반산업단지 조성 → 폐수재활용 등 산단용수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원
- ▶ 해상풍력단지 개발 → 부지확보 및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원
- ▶ 데이터센터 건립 → 데이터센터 특성 반영한 제도개선 및 부지확보 지원

②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로 관계기관·협회 등을 통해 업계 공통 투자어로 사항 적극 발굴·해소

* 예)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주차장법 개정('21.3) → 전체 데이터센터 기업 수혜

[민자사업 : 15.5조원] ※ '20년 15.0 → '21년 17.3 → '22년 15.5조원

① '22년 총 11.0조원 규모로 신규 민자사업 발굴 추진

- 사업추진 부담 완화 및 민간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사업방식 다변화¹⁾, 부대사업 활성화²⁾ 등 추진

1) 소규모 다수시설 결합 개발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유지관리를 위한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 등

2) 부대사업 유형 확대, 적격성조사 평가방식 개선 및 인허가 부담 완화 등

② '22년 4.5조원 규모 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 GTX-A(6,037억원), 이천-오산 고속도로(3,338억원) 등

- 토지보상,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투자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한 집행 관리에도 만전

[공공기관 : 67.0조원] ※ '20년 61.5 → '21년 64.8 → '22년 67.0조원

① '22년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수준인 67.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 52.6% 이상 집행 추진

- ▶ 분야별 투자 규모 : SOC 47.0조원, 에너지 18.4조원, 기타 1.6조원
- ▶ 주요사업 : (도로공사)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1.8조원) 등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사업(1.1조원) 등

②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투자이행상황 점검 및 집행애로사항 해소방안 논의

4 **첨단투자 육성·핵심기업 유턴 지원 등 국내생산기반 확충**

①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1.6)으로 근거규정 신설
↳ 입주기업에 보조금·부담금·임대료 감면, 규제개선 등 통합 인센티브 제공

-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내 첨단투자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입주 촉진
- 세부 운영방안 등을 담은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도 수립 추진

② 유턴기업 3년 연속 2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유턴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유턴기업 인센티브 지속 지원 및 활용도 제고 추진

* 유턴기업 수(개): ('17) 4 → ('18) 8 → ('19) 16 → ('20) 24 → ('21.11) 23

- 업종별 벨류체인 분석, 주요 업종 협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복귀 희망 기업 발굴
- 유턴기업 소득·법인세¹⁾ 및 관세 감면²⁾ 기한을 3년 연장('21년말→'24년말)하고,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내 사업장 이전요건 완화³⁾

1)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수도권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2)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 관세 감면

3) (기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날로부터 1년 내 → (개선) 2년 내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유턴보조금 지원 확대('21. 500 → '22. 570억원)

5 건설투자 보완 노력 지속

- ①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시 시장가격 등을 신속·적정하게 반영
 - 철강 등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거나,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가격동향 분석·공개 주기 단축(현재 반기별 → 분기별)
 - 별도 가격산정 기준이 없는 공법·품목에 대해서도 노무비 등을 활용하여 적정 가격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을 대폭 확대 적용
 - * 현재 건식벽체, 3중 유리·배수판 등 14개 품목 적용 중 → 20개 이상 추가 발굴
- ② 건설공사 중단이 없도록 중소건설사에 자금·철근공급 등 지원
 - 건설업계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6개 업종* 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6개월 추가 연장(’21.12월말 → ’22.6월말)
 - * 철골 및 관련구조물 공사업,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등
 - 유통단계 간소화 및 중소건설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철강사-건설사 간 온라인 직접 판매·유통 시범 추진
- ③ 철도·도로 등 국가 기간 교통망을 신속히 확충
 - GTX-A(’24년), 신안산선(’25년), 신분당선 신사~강남(’22년) 등 공사 중인 민자사업의 적기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 철저
 - GTX-B(’22년 협상착수), GTX-C(’22년 실시계획) 등은 조속한 착공 지원
 - 이천~오산(’22년), 대구외곽순환(’22년), 안성~구리(’23년), 새만금~전주(’24년) 고속도로 등 간선망을 차질 없이 구축
- ④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 SOC는 ’22년에도 11조원 수준 집중 투자
 - * 생활SOC 투자(조원): (’20) 10.9 (’21)11.0 (’22) 11.0
 - ’22년에는 시설 준공·운영이 본격화되는 만큼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 지원(교육·컨설팅·네트워크 지원) 병행
 - ‘3개년 계획(’20~’22)’ 성과평가를 토대로 후속과제 지속 발굴

④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

①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 지속 가동

- ① 물류상황 개선 시까지 주요 항로(미주·유럽 등)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 지속 제공*

* 현재 임시선박 월 6척 이상 투입, 1,300TEU 규모 중소화주 전용선복 제공중(21.9월~)
→ 향후 물류여건 등을 보아가며 선박 투입 및 선복량 등 탄력적으로 운영

- ②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지원

-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은 '22년에도 지속 추진(170억원)

* 해상·항공운임 등 기업당 최대 2천만원(보조율 최대 70%) 지원

- 물류피해 특별지원 대출*(수은, 1,500억원), 무역보험·보증우대(무보) 등 특별 금융지원도 '22년 상반기 중 지속

* 운임상승(20% 이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한도 확대, 금리우대 및 만기연장 등

- ③ 현재 시행 중(21.9~)인 중소화주 장기운송계약 체결지원 사업*은 美 서안항로(300TEU/항차) 대상 지속 운영

* 중진공·무역협회가 중소화주 수요를 집계하여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 체결 및 운임지원(수출바우처 예산 활용)

- ④ 민간의 자발적인 장기계약 활성화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업종별 협회 또는 민간 물류 주선업체가 중소화주 수요를 파악하여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모델 도입 검토

-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 간 안정적인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 상품 제공 등 검토

- 장기운송계약 실적 등으로 우수선화주로 인증 받은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수출 신용보증한도 확대 등 추진

* (현행)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개선)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경우도 감면

⑤ 항만 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부산항 신항에 수출화물 임시보관 장소를 확충('22.2월)하고, 신규 터미널 적기 개장('22.6월)

* 신규 터미널 개장으로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능력 10% 이상 제고 기대

⑥ 현지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3개소) 구축을 완료하고¹⁾ 해상운송-현지 내륙운송 연결 지원²⁾

1) '22.1월 로테르담 센터, '22.上 바르셀로나·자바 센터 완전 개장 예정

2) 우정사업본부-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 현지 내륙운송 지원

⑦ 물류적체 해소를 위한 신속통관¹⁾, 선적지연에 따른 불이익 방지²⁾, 세정지원³⁾ 등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 지속

1) 수출기업 희망 장소에서 검사 실시, 우수업체에 대한 수출검사 생략

2) 적재이행기간 연장신청 자동 승인, 수출신고 취하시 행정제재 면제

3) 납기연장, 분할납부 지원, 수출용원재료 당일 환급

② 수출 개선 모멘텀 지속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① (수출금융)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신산업 분야 수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금년보다 5.4조원 확대된 261.2조원 공급

기관별 공급 계획 (단위: 조원)

구분	수은	무보	신보	기보	중진공	합계
'21	72.1	167.0	13.0	3.2	0.5	255.8
'22	69.0	175.0	13.5	3.3	0.4	261.2

▶ (수은) 글로벌 생산기지 확충, 필수 원자재 수입 등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 수출기업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

▶ (무보) 혁신산업 분야 수출보험 한도우대·보험료 할인 및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② (운임지수 개발) 국내 실정을 반영한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를 개발·공표('22년)하여 해상 운송계약 등에 적극 활용*

*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근거리 교역에도 활용 가능

- **중장기적으로 해상운임 변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한국형 해운운임지수 기반 파생상품거래 도입 등 검토**

③ (유망기업 육성) 既 선정('21.12월)된 321개 '수출 두드림 기업'(수출유망 소상공인) 집중 육성을 위해 컨설팅·자금·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연계

- ▶ (중진공) 수출바우처 우선 선정,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 ▶ (소진공)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지원 및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연계
- ▶ (KOTRA) 수출전문위원 멘토링, 해외무역관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 (지역신보) 수출유망소상공인 보증 지원(보증한도 및 비율 우대, 보증심사 완화)

▪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미디어커머스를 활용한 해외 판매 지원 프로그램* 시범 도입

* 소상공기업(우수제품) 발굴 및 인플루언서 활용 라이브커머스 등 해외직판 지원

④ (농수산물 수출) 유망 품목·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딸기, 포도, 김 등 농수산물 전용 항공기·선복(적재공간) 제공*

* 딸기 전용 항공기(싱가포르·홍콩), 농수산물 전용선복(미국·호주) 등

▪ 해외수요가 높은 전통·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현지화 지원

* 비건제품 개발 등 상품 다양화, 라벨링 및 포장디자인 개선, 해외인증 취득 지원 등

▪ 해외 온라인몰 내 한국 농·수산물식품관을 추가 확충

* (농식품관) '21년 6개소 → '22년 11개소 / (수산물식품관) '21년 5개소 → '22년 7개소

⑤ (스마트팜 수출)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하여 패키지 수출 지원 강화

▪ 스마트팜 수출 거점 구축을 위해 유망국에 국산 시스템 및 기술 확산을 위한 시범온실 조성*(2→3개소)

* 카자흐스탄('21.10), 베트남('22.上 완공)에 이어 '22년에 1개국 확대 추진

▪ 현지 농업인 등 대상 작물재배, 스마트팜 운영법 등 교육 지원

⑥ (기업인 출입국 지원) 코로나19 종식까지 기업인 출입국 지원이 지속되도록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 연장('21→'22년말)

▪ 격리면제 절차 간소화, 백신접종자 PCR 의무검사 횟수(최대 4회) 축소 등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연계한 제도 보완방안 마련

③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 확대

①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주요 분야 협력기반 마련

- CPTPP* 가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 강화

* 日·호주·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11개국에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신남방·중남미·중동 등과 신규 FTA 체결·발효 가속화

- ▶ (신남방) 한-캄보디아 FTA 발효, 한-필리핀 FTA 서명 등
- ▶ (중남미)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진전 등
- ▶ (중 동) 한-UAE CEPA 협상 개시, 한-GCC FTA 협상 재개, 한-이스라엘 FTA 발효 등

- RCEP 발효(22.2월) 등을 계기로 기업의 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간소화*

* 국내 제조만으로 국내산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은 원산지소명서와 입증서류 생략

②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거점 국가와의 양자 경제협력 강화

- ▶ (미국)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재편, 첨단과학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 한미 반도체 대화, 한미 에너지정책대화, 한미 과기공동위 등 협의채널 본격화 및 6G·양자·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공동연구·인력 교류 확대 및 표준화 협력 등 협력 강화

- ▶ (중국) 수교 30주년 계기 문화협력을 활성화하고, 한·중경제장관회의(22.1월, 잠정)를 개최하여 원·부자재 공급망, 투자자/지재권 보호 등 양국간 협력 기반 강화

- ▶ (러시아) 연해주 산단, 조선(LNG 쇄빙선 수주) 등 9개 다리*(9-bridge) 협력 과제 진전 및 한-러 서비스투자 FTA 등 경험 기반 확대

* 에너지, 철도·인프라, 조선, 항해·항만, 보건, 투자, 혁신플랫폼 등 9개 분야

- ▶ (우즈벡) 주요 인프라 사업 EDCF 지원 및 EIPP*의 사업화 연계,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 기반의 자원(우)-가공기술(한) 협력모델 발굴 등 추진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 3년 이상의 중장기 집중자문 프로그램

- ▶ (신남방)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바탕으로 인프라 등 양국간 상호협력 유망 분야*에 대해 경제협력 및 지식공유 중점 추진

* (베트남) 사회주택단지 건설, (인나) EIPP 수도이전 자문,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ITS 사업

④ 해외수주 활성화 기반 조성

- ① 해외사업 금융조건 우대¹⁾, 주요 발주처 앞 기본여신약정 확대²⁾, 저신용국 수주지원을 위한 수은 특별계정 2단계 프로그램 등 추진

1)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시 수은의 금융지원 대상·규모 확대 및 금리수수료 인하

2) 수은-UAE 국영석유사간 50억불 체결 예정('22년초),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상기관 확대 추진

- ② 기업의 사업 타당성조사(F/S) 지원 규모¹⁾와 범위²⁾ 확대

1) F/S 지원예산(억원) : <국토부(KIND)> ('21) 100 → ('22) 130

<산업부(플랜트산업협회 등)> ('21) 69 → ('22) 70

2) 제안형 개발사업 제안서 작성비용도 지원

- ③ 투자개발사업 수주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인프라 공기업별 해외사업 플랫폼 점검·관리 및 인사·예타 등 제도개선·이행* 추진

* (인사) 해외사업 전문직위 운영 및 장기계약 수주시 참여인력 정원 반영

(예타) MDB 참여사업 등 예타평가시 우대, 신속예타제도 실효성 제고, 예비협의 신설 등

⑤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① EDCF를 통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지는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분야 등 지원을 확대하고, 대형 인프라 사업 발굴에도 주력

▪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경제 전환 관련 프로그램차관, 국제개발기구와의 협조융자 등을 통해 그린뉴딜 분야 해외진출 촉진

▪ (팬데믹 대응) 국제개발기구와 연계하여 개도국의 국가질병관리시스템(백신 생산·전달 인프라 등 포함) 구축* 중점 지원

* 예: (국제개발기구) 한국신탁기금으로 개도국 「감염병 조기감시체계 구축방안」 마련 + (EDCF)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관 지원

▪ (대형 인프라 사업) 우리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촉진을 위해 신흥시장(인도·이집트·방글라 등) 랜드마크형 인프라 사업* 지원

* (인도) 반드라 공공지구 개발(6.7억불) / (이집트) 룩소르-하이담 철도 현대화(2.5억불) 등

- ② 최근 개발환경 변화를 감안, 개도국 민간 사업 지원·대외 인프라 협력 등을 위해 선진 금융기법 활용 등 개발금융 기능 강화

* 개도국 민간기업·인프라 사업 등에 투자·융자·보증·메자닌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지원

2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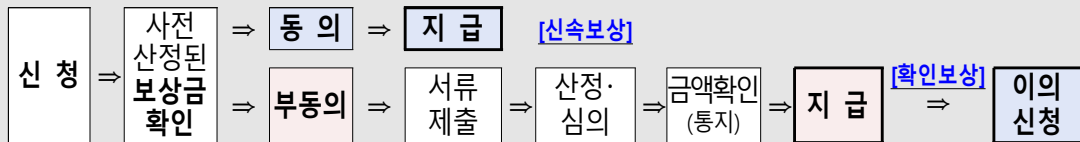
①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①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경영정상화 지원

[손실보상 지급]

- '21.3/4분기에 이어 4/4분기 이후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지급
 - 분기별 하한액을 10→50만원으로 상향('21.4/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적용)
 - '21년 집행과정을 점검하여 보완방안* 지속 강구('22.1/4분기)
- * 예) 온라인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접속환경 개선 등

- ▶ (지급대상)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①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②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 (산정방식)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 보정률(80%)
 - * '19년 동기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 (지급시기) 분기별로 산정·지급('21.4/4분기 손실보상금→'22.1/4분기 지급)
- ▶ (지급절차)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Track 운영



[금융지원 지속]

-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총 35.8조원 규모의 저리 자금공급 지속

계	대상	규모	지원내용
▶ 희망대출 플러스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100만명	10조원	- (저중신용: 5.2조원) 연 1%, 1천만원 한도 - (고신용: 4.8조원) 연 1.5%, 1천만원 한도
▶ 일상회복 특별융자 <인원·시설제한+여행·공연·전시>	10만명	2조원	- 연 1%, 2천만원 한도
▶ 소진기금 일반융자	3만명	2.8조원	- 연 2~3%대, 청년·신규창업자 등
▶ 지신보 시중은행 융자	100만명	21조원	- 연 2~3%대, 일반업종 등

[경영비용 부담 경감]

① (세정지원)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¹⁾ 등의 소규모 사업자²⁾ 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 3개월 추가 유예³⁾(‘22.2월→5월)

- 1) (동시이용 인원 제한) 결혼·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업, 마사지업 등
(시설이용 제한)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2) 업종별 연매출 5~15억원 미만
3) (당초) ‘21.11월 납부를 ‘22.2월까지 유예 → (개선) ‘22.5월까지 추가 유예

② (임대료)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22년말) 및 공공부문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인하 조치(~’22.6월말)* 지속

- * (국유재산) [소상공인] 재산가액의 3 → 1% [중소기업] 5 → 3%
(공공기관 소유재산) 기존 임대료의 50% 인하

▪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21.12월 개정) 시행

- *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임차인

③ (보험료·공과금) 소상공인 등 대상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

▶ (고용·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22.1~3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지원

- * (고용)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 (공과금)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22.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

- * (전기) 소상공인 + 정액복지할인가구 (도시가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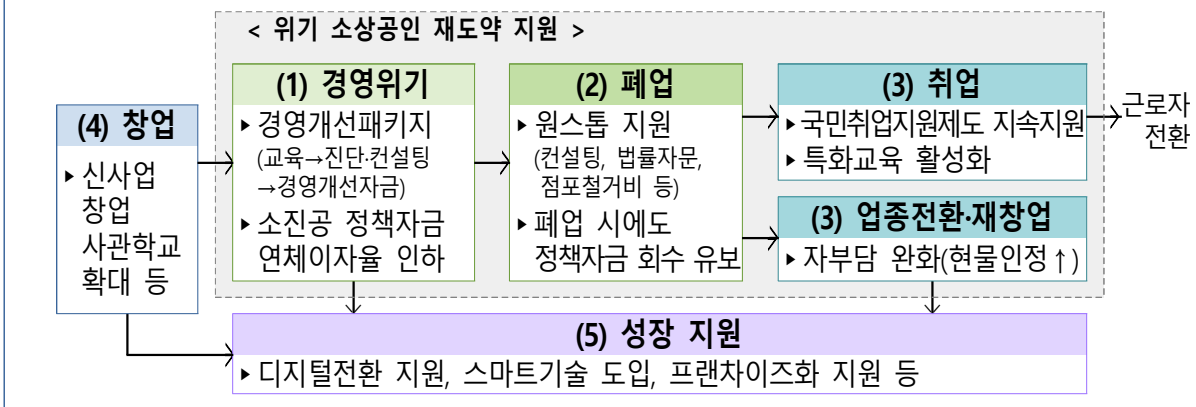
④ (부담금)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한 지자체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정 정비 추진*(‘22.2/4분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사항

⑤ (결제수수료) 0%대 결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22년 160만개까지 확대(‘21.10월 130만개 → ‘22년 160만개)

2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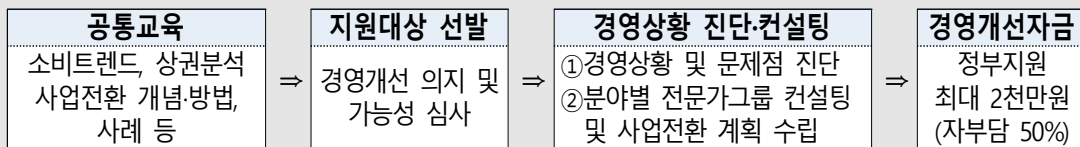
※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쏠주기 지원 구조



[경영위기 단계 : 선제적 재기지원 강화]

- 매출감소 등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 신설(1천개사)

- ▶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트렌드 교육 및 경영상황 진단·컨설팅, 경영개선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 소진공 정책자금 연체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인하*(22.3월~)

* (현행) 6% → (개선) 약정이자율(21.4/4분기 1.5~4%) + 3%p (단, 6% 한도)

[폐업 단계 : 원활한 사업정리 및 부담경감 지원]

- 폐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개인회생·파산 등 관련 전문 법률자문, 점포 철거비(최대 250만원)를 원스톱으로 지원(1만명)

* (현행) 컨설팅 및 법률자문, 점포철거비를 항목별로 개별 신청 시 지원 → (개선) 폐업지원 신청 시 컨설팅·점포철거·법률자문·채무조정 지원 선택 가능

- 폐업(소상공인 지위상실)에 따른 정책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폐업 이후에도 3회 연체 전까지는 대출금 회수 유보*

* (현행) 원리금 정상상환 시 회수 유보 → (개선) 3회 연체 전까지 회수 유보

[재도전 단계 :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 취업 유도]

- ① ‘업종전환·재창업지원금’ 한도를 확대(1→2천만원)하고, 참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부담 중 현물(인건비·임대료 등)인정비율 상향(60→70%)

- ▶ (지원내용) 유망한 업종전환·재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폐업(예정)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장 리모델링·제품개선·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자금 지원
- ▶ (지원조건) (현행) 자부담 50%(자부담 중 인건비·임대료 등 현물 최대 60%) → (개선) 자부담 중 현물인정비율 70%로 상향('22년 한시)

- ② 외식업 등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창업을 위해 청년몰 내 유희 공간을 공유주방으로 개조·임대하는 “Kitchen Share” 시범추진 검토

* 전국 30여개 청년몰 중 1개소 선정 → 재창업교육 이수한 우수 청년 선발·연계

- ③ 폐업 소상공인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세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조치* 6개월 연장('21년말→'22.6월말)

* 참여가능한 자영업자 매출액 기준을 연 1.5억 → 3억원 이하로 완화 지원 중('21.7월~)

- ④ 폐업 소상공인이 사업경력을 살려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화교육프로그램 확대

* 구직수요 및 산업체의 구인수요를 감안하여 교육분야 추가 발굴·개발 등

[창업 단계 : 아이디어 기반 혁신창업 활성화]

- ① 新사업 분야 예비창업자*에 교육·실습, 멘토링, 사업화자금을 패키지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21년 15→'22년 17개소)

* 혁신아이디어 또는 고유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창업자

- 청년 예비창업자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실험·실증을 지원하는 ‘청년 혁신아이디어 도전’ 트랙 신설(100명)

- ②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작자·스타트업 등과 협업하는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고도화자금 최대 1억원 신규 지원

* 팀 선발·팀빌딩(100개팀) →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 지원(30개팀, 최대 5천만원)
→ 상위 20개팀은 스케일업 자금 추가지원(최대 5천만원)

[성장 단계 : 디지털·스마트化 등 경쟁력 제고]

① 민간기업이 자체 운영 중인 양질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민간-정부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확산 지원

* 예) 네이버 '소상공인비즈니스스쿨', 카카오 '카카오클래스', 우아한형제들 '배민아카데미' 등

- ▶ (오프라인 교육 확대) 현재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중인 민간 교육과정을 정부인프라(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를 활용해 기초지자체까지 확대
- ▶ (온라인 교육과정 상호공유) 민간의 우수 교육과정을 정부 지식배움터에서 제공하고 민간에도 정부의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공유
- ▶ (정보공유·성과연계) 정부·민간의 디지털교육 관련 정보·성과 등을 상호 공유



②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민간채널 및 유통전문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디지털 소상공인 연 10만명 양성 추진

* (정부지원: 매년 6만명 이상) 교육·컨설팅 제공, 민간채널 입점 지원 등
(민관협업: 매년 4만명 이상) 교육 제공, 네트워크 구축 연계 등

- 비대면 소비트렌드 확산에 대응하여 온라인 판로 지원·구독 경제 활성화 등을 본격 추진하고 스마트기술 도입도 지속 지원

- ▶ (온라인 판로) 라이브커머스·온라인몰 등 입점지원('21년 5.3→'22년 6만개社)
- ▶ (구독경제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플랫폼 및 물류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21년 시범운영 후 '22년 본격 추진
- ▶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지역상권 1곳을 시범 선정하여 디지털 결제환경 구축, 점포·업종별 맞춤형 스마트기술 도입 등 패키지 지원('22~'24년, 최대 80억원)
- ▶ (경험형 스마트마켓 육성) 동네슈퍼를 무인쇼핑·디지털 쇼케이스 등 스마트 쇼핑을 경험할 수 있는 유통거점으로 육성('22년 100개소)

③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가맹점과 상생하는 프랜차이즈로 육성하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확대(9→30개社)

* (초기) 경영모델 분석, 브랜딩·디자인 등 (중기) 마케팅·판로지원, 경영모델 고도화 (대표브랜드화) 스마트화, DB구축, 규격·인증 등 지원

③ 주요 업종별 맞춤형 지원도 지속

①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관광·공연·전시업 등의 업황 및 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 검토('22.1/4분기)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근로자 대부 등 우대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22.3.31일 만료예정 14개 업종)	지정 기간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20.3.16~'22.3.31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20.4.27~'22.3.31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21.4.1~'22.3.31

② (관광·숙박) '22년 관광기금 용자규모를 550억원 확대*하고 전체 대출잔액(3.6조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금리 최대 1%p 인하

* 관광기금 용자 지원규모(억원) : ('21) 5,940 → ('22) 6,490 <+550억원, +9.3%>

- '22년 용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업체에 신청시 1년간 상환유예
- 호텔업 등급평가를 6개월 추가 유예('21.12월→'22.6월)하고, 카지노 사업자(매출감소 기준 충족시)의 관광기금 납부기한도 연장(~'22.6월)

③ (공연·전시·영화) 공연·영화분야 현장인력 6,800명을 채용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전시회 40회 개최 지원

* 예) (부울경) 기계부품, (대구·경북) 첨소재, (광주·전라) 광융합, (대전·충청) 로봇 등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인원 확대('21년 1.5→'22년 2.1만명)

④ (체육) 손실보상 제외 실내외 체육시설(非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및 전국 실외체육시설) 대상으로 초저금리(1.6%대) 대출 500억원 공급

- 체육시설 방역용품(5.5만개社) 및 헬스트레이너 등 고용회복 지원(4,000명)

⑤ (항공) 각종 사용료·수수료 면제 및 신속한 운항재개 지원

- 공항시설사용료¹⁾·임대료²⁾ 감면 6개월 추가 연장('21년말→'22.6월말)

1) (착륙료) 10~20% 감면, (정류료·계류장 사용료) 전액 감면

2) (상업시설) 여객감소율 연동 할인, (업무용시설) 라운지, 사무실 50% 감면

- 항공유 품질검사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국내선 항공유 품질검사 시행(당초 '22.1.1일 예정)을 '22.6월말까지 연기

- 항공사가 정기노선 신청 시 최대한 신속히 허가하고, 슬롯(공항별 항공기 이·착륙 시간) 배정 단위기간도 점진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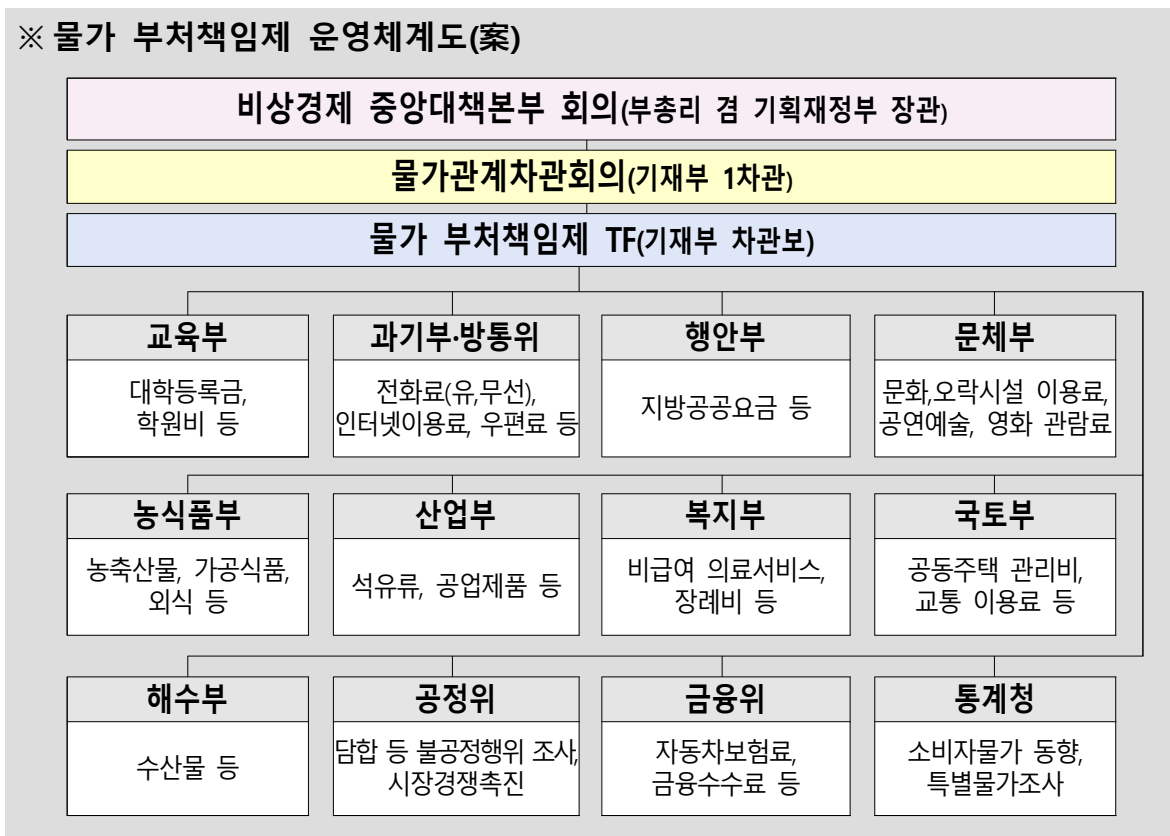
* (코로나 이전) 6개월 → (현행) 1개월 → (개선) 2~3개월 단위로 점차 확대

② 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① 범정부 물가대응체계 확대 개편

- ① 각 부처가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단기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 도입
 - 개별부처는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기 수급안정 노력 및 구조적 대응방안 마련
 - 물가관계차관회의 산하에 「부처책임제 TF」(기재부 운영)를 설치하고 분야별 물가안정방안 논의(비상경제 중대본 등에서 발표)

※ 물가 부처책임제 운영체계도(案)



- ② 행안부·지자체에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현장 물가안정 대응기능 강화

- 지자체별 물가안정대책반(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 등 점검 추진

* 과다인상부당요금, 계량위반·섞어팔기, 가격·원산지표시불이행, 매점매석 등

② 주요 품목별 맞춤형 가격·수급안정 대책 추진

[석유류 및 국제원자재]

①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한시 상향('22~'23년)

* [소기업] 10 → 20%, [중기업] 수도권 0%/비수도권 5% → 10%/15% (+10%p)

-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일부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현행 1km) 완화

* 알뜰주유소 비중: (전국)11% (서울)2.3% (인천)2.5%

②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을 위해 KRX 석유시장*을 통한 주유소의 석유제품 혼합판매 지원 강화

*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전자방식으로 경쟁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국내 유일의 오픈 마켓

- ▶ (소득세·법인세) KRX 석유시장을 통한 구매물량 세액공제율 확대(0.2→0.3%)
- ▶ (품질관리) 혼합판매물량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강화 등 추가 품질관리방안 마련 추진
- ▶ (불공정거래 금지)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부당한 차별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등 경쟁제한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범위반 행위 발생 시 조사·시정

③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22.4월)는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동향을 보아가며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 검토

④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축유 방출 국제공조('21.11월)를 계기로 비축유 정책대여 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 검토

※ 정책대여 제도 : 국제공조 및 비축시설 개방점검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한 비축유 대여제

⑤ 6대 비철금속(알루미늄·납·구리·아연·니켈·주석)은 가격급등에 대비하여 방출 가능한 비축물자 재고 운영의 탄력성 제고

* 방출 확대량 등 비축물자 운영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반영('22.상 완료 예정)

- 6대 비철금속 비축물자 할인 방출 시 소기업 별도물량 배정 등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 등 개선 추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① 계란·우유 등 주요 민생밀접품목에 대한 수급관리 및 가격 결정구조 합리화 노력 지속

- (계란)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필요시 수입관을 공급하고, 계란 공판장 운영을 통해 가격 결정구조 개선

▶ (수급관리) '22.1~6월중 신선란 기준 월 1억개 규모 할당관세 인하(8~30→0%)

▶ (가격 결정구조 개선) 계란 가격 형성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판장 2개소 (포천·여주) 운영 개시('21.12월~) 및 단계적 확산('22년 2개소, '23년 1개소)

※ 계란 공판장을 통해 형성된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되어 전국 계란 거래시 표준가격으로 활용

- (우유)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한 원유(原乳) 가격 결정구조 개선안* 적용('22~)

* (현행) 수요 고려 없이 생산비 증감에 연동 → (개선) 용도별 원유가격 차등방안 도입 등

②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22년에도 지속 지원(590억원)

* 20%(전통시장 최대 30%) 할인, 인당 1만원 한도(명절, 김장철 등은 한도 2만원)

③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방안 개선

- (관리체계) 품목별 비축물량·수입선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가격불안 시 방출·수입물량을 조기에 결정*하는 체계 구축

* 수급상 이상징후 발생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에서 결정·대응 (예: 수입선 先 확보 후 국영무역 등을 통해 즉시 수입 추진)

- (관리대상 확대) 채소가격안정제¹⁾ 대상물량을 확대(전체 생산량 대비 17→20%)하고, 농산의무자조금²⁾ 품목 수도 확대(16 → 19개)

1) 국가·지자체·농협·농업인의 공동 재원을 활용하여 일정수준 가격(80%) 보장을 전제로 수급불안 시 농업인이 공급을 조절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

2)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수급조절·소비촉진·품질향상 등을 위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운용하는 자금

- (관측강화) 민간 전문성 활용을 통한 정확도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드론·빅데이터 등) 도입을 확대하고 예측모형 경진대회 개최

* 농업분야 빅데이터(드론 영상정보·소비실태조사) 축적 및 AI 분석 융합 및 실측정보 민간 개방 → 예측모형 경진대회 개최 등

- (장비지원) 농작업 수요가 집중되는 마늘·양파 파종·정식기 (9~10월) 작업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파종·정식기계 지원

* 마늘·양파 주산지(4개소) 중심으로 기계화 우수 지자체 육성 추진('22~)

④ 위험도에 비례한 살처분 및 농가 단위 자율방역체계 구축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민생 영향 최소화

-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대상 축종 확대(예: 육계 등)

*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택권을 더 많이 부여

- 예방적 살처분 사유 발생 시 위험도 평가¹⁾를 거쳐 살처분 적용범위를 500m~3km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운영²⁾

1) 야생조류 서식·AI 항원 검출, 농장발생상황, 방역조치 등 고려 / 2주 간격 평가

2) (기존) 살처분 범위 3km 일률적 적용 → (개선) 500m~3km로 탄력적 조정

⑤ 밀·콩 중심으로 비축을 확대¹⁾ 하고, 자급기반 강화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확대²⁾ 및 수요처 발굴 등 지속 추진

1) 밀/콩 비축물량(천톤) : ('20) 3/17 → ('22) 14/25

2) 밀/콩 전문 생산단지(개소, 누계) : ('21) 39/83 → ('22) 51/120

⑥ 영농철 비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요소 비료 수급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 비료가격 상승압력 최소화를 위해 생산업체 정책금리를 인하 (3%→무이자)하고, 자금지원 규모 확대(2,000→6,000억원)

- 비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22년 비료 가격상승분의 80% 지원(정부·지자체·농협)

⑦ 농축수산물 가격조사(aT) 정확도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및 품목 확대(수산물) 추진*

* [조사대상] (현행) 대형마트·전통시장 조사 → (개선) 온라인·SSM 등 포함

[조사품목] (현행) 16품목 22종류 → (개선) 16품목 40종류(조사규격 다양화)

⑧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을 확대¹⁾하고 업계와의 소통²⁾을 통해 가공식품·사료업계 등 현장애로 경감 지원

1) (세제지원) 식용옥수수, 설탕 등에 할당관세 규모 확대

(금융지원) 사료원료매입자금 규모 확대('21년 506→'22년 647억원)

2) Agro-biz 포럼 내 물가대응분과 주기적으로 개최 → 현장애로 청취·해소방안 강구

[공공요금]

- ① (중앙공공요금) 원가를 고려하되, 물가 안정 유지를 위해 자체 비용절감 등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 ② (지방공공요금) 광역 외 기초지자체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의 '22년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을 균특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하여 차등지원을 추진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

* 지방공공요금 관리실적과 지방 물가상승률 및 물가안정실적 등 고려

[개인서비스]

- ① '착한가격업소'(전국 5,800여개)에 대한 대출·보증 우대, 홍보강화 등 맞춤형 지원과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등 관리강화* 병행

※ 착한가격업소 :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지자체 지정)

* 일제정비 확대(1→2회), 권역별 현장점검 추진 등

※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지원 주요 내용

정부	▶ (금융지원) 지역신보 보증료 감면요율 확대 (0.1%p → 0.2%p),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감면제도(0.5%p) 적극 활용 ▶ (홍보강화) 네이버 등 모범업소 인증 표식 도입 추진,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관리 내실화,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지자체	▶ 업소 신규 발굴,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인센티브 지원 등 추진근거 마련)

- ② 특별물가조사사업 과제 품질 및 정책반영도 제고를 위해 용역 수행기관에 전문연구기관도 포함
- ③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배달플랫폼별 배달비 현황 및 가격차이 등 상세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월1회 조사 → 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원 홈페이지 게시

3 중장기 물가안정을 위한 구조개선방안 마련

- 유통구조 개선, 경쟁촉진, 공공요금·수수료 안정, 통계제공 확대 및 민간역할 제고 등으로 중장기 물가안정 기반 조성

※ 물가안정을 위한 구조적 정책과제(안)

1 주요 분야 유통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식품부·해수부) ▶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산업부)
2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자급률 확대 (농식품부) ▶ 정부비축제도 확대 (농식품부·해수부) ▶ 수입품목 및 규모 확대 (농식품부·해수부)
3 경쟁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위) ▶ 독과점시장구조 개선(플랫폼기업 수수료 실태조사 등) (공정위) ▶ 경쟁 촉진 등을 통한 통신티 부담 경감 (과기부·방통위)
4 민간역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단체 등 민간 물가감시 역할 강화 (기재부 등) ▶ 물가안정을 위한 범국민 정책공모 (기재부)
5 물가구조 상세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분야별 유통비 비중 및 유통단계 분석, 해외비교 (산업부·기재부 등) ▶ 주요 품목 국내외 가격차 원인 분석 (기재부 등)

4 부문별 가계 생계비 절감 노력 강화

- 1 (식료품비) 취약계층·저소득층 대상 생애주기별 지원 지속**
 - (어린이) 초등돌봄교실 학생(24만명) 대상 연 30회 과일간식 지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확대(11개→16개 시도)
 - *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임산부 가정에 배송(1~4회/월, 연 48만원 이내)
 - (저소득층) 도시지역에도 ‘농식품바우처*’ 지원(농촌→대도시 포함)
 - * 국산 채소과일우유계란육류잡곡풀 구매 전용 카드 지급 또는 꾸러미 배송(1인 4만원/월)

② (의료비) 고혈압 및 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전국 확대 추진

- * 일차의료기관 3,721개소, 고혈압·당뇨병 환자 42만명 참여('21.9 기준)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건강보험료 하위 50→70%)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후속 지원사업으로 연계
-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22.下)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등 소득 외 보험료 부담은 축소
- * (재산 공제액) 500~1,350만원 → 5,000만원, (자동차)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1,600cc 초과 3,000cc 이하 보험료 30% 인하 → 4천만원 이상 차량만 부과

③ (주거비) 아파트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원

- 아파트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책자를 발간(국토부·지자체)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
- * (예)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 관리비 절감 사례에 가점 반영

④ (교육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 (서민·중산층)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68만원 → 연 390만원 지원, 7~8구간은 연 120, 67.5만원 → 연 350만원 지원
- ▶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연 520만원 → 첫째 자녀 연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 (다자녀가구) 8구간 이하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연 520~450만원 → 등록금 전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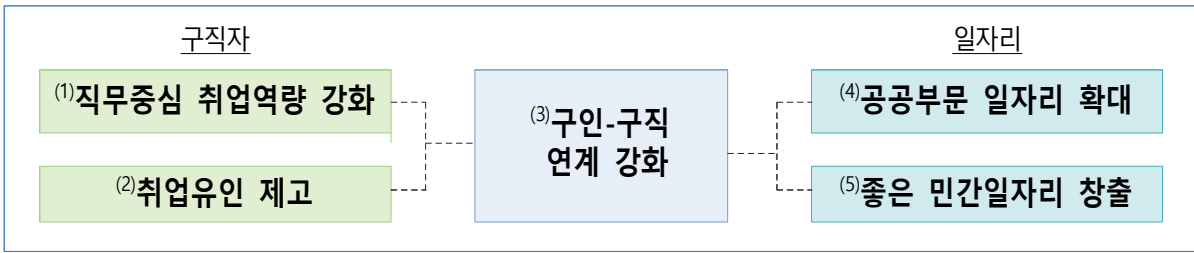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 * 학자금대출 금리(%) : ('18~'19) 2.2 ('20.1학기) 2.0 ('20.2학기) 1.85 ('21) 1.7 ('22.1학기) 1.7

⑤ (세금·공과금)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등 미환급금과 휴면예금·보험금 등을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¹⁾하고 주기적 실적 점검²⁾

- 1) 정부24(e하나로민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휴면예금 찾아줌, 내보험 찾아줌 등에서 조회·환급 가능 → 집중 안내기간 설정(반기별 등)하여 확인방법 안내
- 2) 미환급금 소멸시효(국세·국민연금 등 5년, 건강보험료 등 3년)가 완성되기 전 반환할 수 있도록 정책점검회의에서 반기별로 미환급금 증감상황 점검

③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

① 코로나 이력효과 최소화에 총력



[직무중심 취업역량 강화]

①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험·실습 등 대면교육 참여가 제한됐던 '코로나 학번'의 취업역량 강화 집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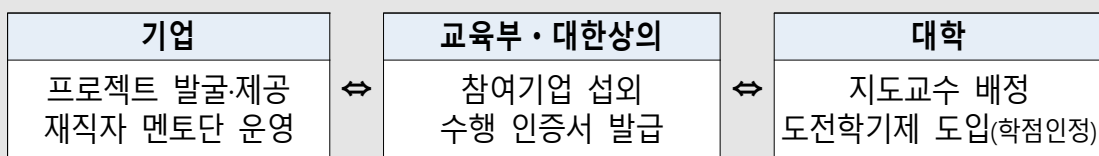
- 코로나 학번 졸업생('21년 졸업자 및 '22년 졸업예정자)을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22년 한시 인하(15~55%→0~40%, △15%p)
- 실험·실습을 비대면으로 이수한 대학생('21~'22년 졸업자 포함)이 각 대학의 대면 실험·실습과정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 (지원대상) 실험·실습 강의를 비대면 수강했던 재학생 및 '21~'22년 졸업생
- ▶ (지원내용) '22년 개설되는 동일·유사강의 실험·실습 참여 허용
- ▶ (시행방식) '22년 한시,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활용

②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 대학생이 기업 제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무역량을 갖추고, 학점인정도 받을 수 있는 'WE-Meet 프로젝트' 신설('22.上~)

- ▶ 교육부·대한상의회가 참여대학·기업을 섭외, 기업이 프로젝트를 발굴·제공하면 대학은 학점인정 및 지도교수 배정 등 지원, 참여학생에는 연구비 지원



- 청년들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실제 직무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 신설(2천명)
 - * 現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기업 견학, 회사소개에 초점)을 확대 개편하여, 최대 2주간 직무체험, 모의면접 체험, 실전면접·채용연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업계고 학생 대상으로 구인기업 수요를 반영한 사전직무교육 및 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 * 거점 공동훈련센터(7개소)에서 지역·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사전 직무교육 운영(1,050명) → 취업컨설팅 및 채용 후 기업 현장교육 실시
- 미래 유망분야 전문성을 갖춘 고졸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대상 직업훈련 지원 확대('21년 8개→'22년 40개 학과)
 - * 미래 유망분야로 학과를 개편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우수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맞춤형 훈련 제공

③ 채용여력이 있는 기업이 인턴형 일경험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별 인턴형 일경험 채용한도 상향

* (현행)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최대 20% → (개선) 최대 40%까지 채용

[취업유인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내 취·창업 성공 시 취업 성공금을 50만원 추가 지급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구직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창업시 취업성공금 추가지급(최대 150→200만원)

▶ 예) 취·창업 성공시기에 따른 지급액 비교

	[3개월 내 취·창업 성공시]		[4개월 내 취·창업 성공시]
(현행)	300만원 (구직수당 50×3월+취업성공금* 150)	<	350만원 (구직수당 50×4월+취업성공금 150)
(개선)	350만원 (30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50)	≥	상 동 [취업준비비용 감안 시 조기취업이 유리]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② 중소기업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원활한 고용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재가입요건 완화

* (현행)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가입 허용 → (개선) 1년 이내 재가입 허용

③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 (현행) 연소득 2,000~3,600만원 → (개선) 연소득 2,200~3,800만원

[**구인-구직 연계 강화**]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제1차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발표(’22.1/4분기)

② 중소기업 계약학과 내실화를 위해 우수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계약학과 재학생 대상 장기재직 인센티브 신설

- 참여기업 선발요건을 강화(채무불이행·부실기업은 선발 시 배제)하고 졸업생 의무근무 미준수 기업은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
- 계약학과 재학생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등록금 지원비율 10%p 우대(65~85%→75~95%)

③ 청년, 중장년, 특고 등 계층별 맞춤형 구직지원서비스 보장

- (청년) 대학일자리센터를 개편(‘대학일자리+센터’)하여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¹⁾하고, 온라인 청년센터 중심 원스톱서비스 기능 구축²⁾

1] [대상]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까지 확대 [기능] 생활·심리 등 전문상담 추가 등

2] 정부 청년고용정책 정보 연계, AI면접 등 청년특화서비스 강화, 비대면 상담 강화 등

- (중장년) 중소기업 재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 등 경력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신규 지원(5천명)

- ▶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되어있지 않은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
- ▶ (지원내용) 심층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현직자그룹 컨설팅 등
- ▶ (지원방식) 민간컨설팅기관에서 사용가능한 내일배움카드 크레딧 100만원 추가지원

- (특고) 개인별 수요·특성에 맞춰 경력관리 및 자영업자·임금 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하는 ‘취업전담반’(고용센터) 운영 추진(’22~)

④ 지역 전략업종 및 고용위기업종 구직자·이직예정자를 위해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특별 취업지원팀' 내실화

- * 현장전문가 컨설팅, 업종별 취업지원네트워크 구성·운영(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업종별로 특화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채용박람회 개최 등

※ 고용센터 '업종별 특별 취업지원팀'('21.8월~)

- ▶ (지원대상) 지역 전략업종 또는 고용위기업종(각 고용센터에서 1~3개 지정)
- ▶ (지원내용) 각 고용센터 내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을 구성하고 전담창구 운영
→ 기업·구직자·이직예정자를 업종별 협회, 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구인·구직 지원

[직접일자리 ·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①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일자리 106만개 제공('22년 3.3조원)

- ▶ 노인일자리(84.5만개), 자활근로(6.6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4만명) 등

② 취약계층 고용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22년 1월 중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 이상 채용 추진

- ▶ (대상) 노인일자리(50만명), 자활근로(4.4만명), 장애인일자리(2.7만명) 등
- ▶ (절차) '21.12~'22.1월 중 사업계획 확정, 운영기관 선정, 모집공고 등 실시

③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도 적극 공급

- 국가직공무원(공개채용) 75% 이상을 3/4분기까지 채용 확정

- * 채용 확정 목표: ('21) 3/4분기까지 70% 이상 → ('22) 75% 이상

-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기준 강화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3% 의무고용 초과달성 세부지표 배점 확대(10→20점) 등

- 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용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 고용컨설팅'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 *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충족률 90% 미만 공공기관 → (개선) 100% 미만 등

② 민간일자리 창출을 재정·세제 등 다각도로 지원

[양질의 민간일자리 확충 뒷받침]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4년말까지 3년 연장('21년말→'24년말)

- ▶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연 450~1,300만원)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
- ▶ (중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2년간 세액공제

②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해 지역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신규지역 발굴 및 상생협약 체결 지원 등 지속 추진

* (現 5개 지역) 광주('20.6.15), 강원·밀양('20.10.20), 군산·부산('21.2.25)

※ 상생형 일자리 쏠주기 패키지 지원내용

- ▶ (사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신규 모델 발굴 컨설팅(일자리위, 고용부)
- ▶ (선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기재부 등) 등
- ▶ (이행지원) 추진실적·계획 제출, 지역 애로·요청사항 등 지원(산업부 등)

▪ 지자체 참여확대를 위해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신청하는 '지역주도형 지원사업' 신설(40억원)

* (현행) 정부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구성·제시
→ (개선) 지자체가 지원 필요한 항목을 선정·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

③ 구직자 선호도가 낮은 소규모 영세기업의 고용여건 향상과 맞춤형 인력양성·채용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 본격 시행

* ('21) 18개 (지)청센터에서 시범 실시 → ('22년) 48개 (지)청센터로 확대

※ 기업채용지원패키지 개요

- ▶ (지원대상)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채용여력이 낮은 소규모 영세기업
- ▶ (지원내용) 기업 채용여력 분석·진단 → 채용여건 향상 지원(인사노무컨설팅, 인프라·환경개선, 인재양성·채용지원 등을 위한 지원금, 컨설팅 등 연계) → 집중 채용지원 및 사업 관리까지 종합 지원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 ①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취업취약계층 등 고용 시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연 720만원) 인원 확대('21년 1.2→'22년 2.8만명)
- ② (저임금근로자) 코로나로 타격이 컸던 영세기업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6개월 연장*('21년말→'22.6월말)
* 근로자 1인당 月 3만원, 총 253만명 대상 6개월간 지원
- ③ (여성) 경력을 보유한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위해 재취업훈련을 강화¹⁾하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 확대²⁾
1) 플리텍 여성재취업훈련 ('21)33→('22)48억원 2)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21)32→('22)40억원
 - 가구 내 육아부담 분담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 (3+3 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모두 육아휴직(만 1세미만) 사용시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月 최대 300만원) 지원, (소득대체율 인상) 50% → 80%
- ④ (고령층)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규 지원(분기당 30만원, 54억원, 6천명)
- ⑤ (장애인)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 채용 시 지원하는 신규고용장려금 신설(최대 월 80만원, 3천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시 지급

③ 고용구조·근로형태 변화 등에 대응한 안전망 확충 노력 지속

- 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의 차질 없는 이행에 주력
 -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추가 확대
 - ▶ ('22.1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2개 직종
 - ▶ ('22.7월~)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적용 직종 확대
 - *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대가능 직종 선정 후 적용 추진
 - 전문기관 연구용역(KDI, '22.1월~)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지속 검토
 - * 경사노위 內 노·사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연구회 운영('21.9~)

②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예술인 및 특고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하고, 플랫폼종사자·가사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 ▶ (플랫폼종사자 등)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22.1월 고용보험 적용예정) 및 기타 특고·플랫폼종사자 등('22.7월 고용보험 적용예정) 고용보험료 80% 지원(20.1만명)
- ▶ (가사근로자) 정부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5천명)

- 영세사업장 일용근로자는 이직이 잦은 직종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 (지원대상 +43만명)

* (현행)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 있는 경우 미지원 → (개선) '6개월 이내'로 완화

③ 플랫폼종사자 등 보호에 중점을 둔 맞춤형 지원 보강

- 플랫폼종사자 보호 4법의 조속한 제·개정 추진

- ▶ (플랫폼종사자보호법^{<제정>}) 계약 공정성 확보 및 종사자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기업 및 소속업체의 책임 및 의무 규정
- ▶ (직업안정법) 플랫폼사업자에 플랫폼 운영정보 신고의무 부과, 노무제공자 등에 이용약관·이행조건을 제공하고 노무대가·수수료를 사전통지토록 규정 등
- ▶ (고용정책기본법)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능력개발, 고용안정 등 국가·지자체 정책추진 근거 마련
- ▶ (근로복지기본법) 플랫폼종사자 대상 국가·지자체 근로복지사업 지원근거 마련

-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 등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 추진

* 現 산재보험법상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할 것을 적용요건으로 명시

- 플랫폼사업자 등에 대기·휴게공간 마련 등 플랫폼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일터개선지원금' 신설('22년 16.8억원)

- 근로여건이 우수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인증 컨설팅 지원(100개소)을 신설하고, 인증기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인증기관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사회보험·퇴직금 등 보장

④ 다양화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포용적 제도기반 마련 추진

- 새로운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종사상지위 분류를 개정*하고, 비정규직 범주 등 노동관련 제도 논의·검토 지속

* 의존계약자 신설,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세분화 등

4 新양극화 대응

1 1 코로나로 심화된 부문별 격차 완화에 집중

[교육 : 취약계층 학습결손 보완을 체계적으로 지원]

- 1 교육급여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학생(약 31만명)을 대상으로 교재비 등 특별지원('22년, 1인당 10만원)
- 2 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던 학습컨설팅*을 초·중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교과보충 프로그램' 확대)
 - * 교사가 소규모(1~5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 등 진단, 학습방법 및 진로진학 지도 등 학생별 수준·희망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지원
- 3 저소득 가구 고교생 대상 EBS 교재 무상제공 범위 확대
 - * (현행)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가구 → (개선) 주거급여 수급가구까지 확대
- 4 초·중등 기초학력 지원기반 강화를 위해 시·도 기초학력지원 센터를 신설('22년)하고 「기초학력보장법」('22.3월 시행) 시행령 마련
 - 교실-학교-지역의 기초학력 보장 3단계 안전망도 지속 보강

- ▶ (교실: 1수업 2교사 협력수업) 선도·시범학교 확대('21년 92교→'22년 500교)
- ▶ (학교: 두드림학교) 학교단위 다중지원팀(교감, 담임·상담·특수·보건·영양교사 등)이 학생 맞춤형 지원 제공('21년 5,193교→'22년 6,000교)
- ▶ (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교사·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진단·분석 및 맞춤형 지원('21년 142개소→'22년 193개소)

[문화·체육 : 일상회복에 발맞춰 여가수요 회복 유도]

- 1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
 - * (현행) 기초·차상위계층의 75% 수준 지원 → (개선) 기초·차상위 100% 지원
<'21년 197만명> <'22년 263만명>
- 2 취약계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기간 확대
 - * ('21년) 7.2만명, 8만원/월, 8개월 → ('22년) 8.6만명, 8.5만원/월, 10개월
- 3 청소년 북토크(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도서교환권) 지원대상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전원으로 확대
 - * ('21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참여학교 재학 초등 4~6학년 및 중학생 중 선정(10만명) → ('22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참여학교(초등·중학교) 재학생 전원(27.6만명)

[돌봄 : 수요맞춤형 서비스 공급 뒷받침]

- 아이돌봄서비스가 육아·돌봄부담 경감 및 일터복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추진

현행	개선
① 복직준비 여성 지원 강화	
▶ 복직 전 여성은 돌보미 배정 및 지원금 지급 등 혜택 부족	▶ 복직준비 여성의 원활한 복직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방안 검토
② 이용편의성 제고	
▶ 현행 플랫폼을 통해서는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만 신청 가능	▶ 공공 외 민간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편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22~'24))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신원확인 불가	▶ 범죄경력 등 신원정보 제공
▶ 대기가점 등 등록시 각종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통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최소화

- 출·퇴근시간대 높은 돌봄수요를 감안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30개소) 실시

*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6~12세) 대상 상시·일시돌봄, 등·하원 등 맞춤형 돌봄 제공

[정신건강 :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개시('22.上~)
- 정신건강문제 예방·치료·재활 지원을 위한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21년 12개 → '22년 17개 시도)
- 지역주민 정신건강 지원 허브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충*하고, 비대면 심리상담(전화·어플 등), 마음안심버스(32~50대) 등 서비스 강화

* (개소수) 260 → 271개소(+11개소), (인력) 3,260 → 3,560명(+300명)

[디지털 : 코로나시대 Digital Divide 선제 대응]

- 정부의 디지털 격차해소 의무 규정,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사업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의 신속 제정 추진

* 디지털 포용 위원회 신설, 디지털 포용 기본·시행계획 수립,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웹·앱·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 등

- 고령층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배움터를 지속 운영(900개소)하고, '22년 중 전국 농어촌 482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 설치

[주거]

① 청년들이 양질의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청년전세임대: 청년이 입주희망주택 물색 → 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 (입주자 편의 제고) 입주자가 전세임대뱅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더 많은 전세임대 계약가능 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 부동산114 중개사 회원전용 페이지에서 전세임대 가능주택을 등록
→ 전세임대 가능주택 매물 정보를 전세임대포털(전세임대뱅크)로 공유

- (임대인 참여 유도) 전세임대 계약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¹⁾하고, 중개수수료²⁾ 및 환경개선(화재경보기 설치 등) 등 지원 확대

1)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삭제 <부동산 제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체>

2) 전세임대뱅크에 매물을 등록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

②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20만원) 대상 청년이 잔여 월세금만큼 무이자 월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예) 월세금 40만원 → 특별지원금(20만원) 외 잔여 20만원 무이자대출 지원

※ 청년 월세지원 사업 개요('22년 기준)

구분	①주거급여('15~)	②청년 월세 특별지원('22)	③청년 무이자 월세대출('22~'23)
소득 요건	중위 46% 이하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 본인소득 중위 60%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1인가구 기준 163~327만원 * 중위 30% 이상은 자부담有	월 최대 20만원	월세 0~20만원 무이자 (20만원 초과시 年 1.0%)

※ 청년 소득계층별 월세지원 구조('22년 기준)

소득수준		①주거급여	②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대출	
				③무이자	연 1%대
小	중위 46% 이하	○	○	○	○
↓	중위 46%~60% 이하 등	X	○	○	○
大	중위 60%~연소득 5천만원 이하	X	X	○	○

[일자리]

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재정·세제 인센티브 보장

-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규 지원(최대 960만원, '22~'24년)

▶ (지원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취업애로청년¹⁾을 신규로 채용한 성장유망기업²⁾ 또는 5인 이상 중소기업

1)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보호종료아동 등

2)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된 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 (지원내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인건비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수도권 외 기업이 청년·장애인 등 고용을 늘린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100만원 추가 공제 지원('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당초 '18~'21년간 추진예정)은 청년과 지역 호응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개편·재추진(2.6만명)

* '22년 3개 일자리유형 신설(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

③ 군 복무기간 학업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 장병 원격강좌제도' 활성화

- 군 장병의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비율을 상향(50→80%)하고 지원인원도 확대('21년 2.2 → '22년 2.4만명)

-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학별 군 복무 원격강좌 운영현황 공개*(매년 6월)

* 대학 정보공시사이트(대학알리미) 내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에 포함

④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ON(온, On-Going) 프로젝트' 지속 추진

※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 (개요) 기업이 청년채용 확대 및 교육·훈련,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정부는 훈련비·인턴십수당·교육공간 등 인프라 지원

▶ (성과) '21년 KT·삼성 등 6개 기업 참여 → '24년까지 총 17.9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

- 기업의 청년고용 지원프로그램(직무훈련·일경험 등) 개발·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신설(170억원)
-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기업 외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플랫폼기업 등으로 다변화하여 더 많은 기업의 참여 유도

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도전-성장-재도전 단계별 지원 강화

- ▶ (도전) 청년전용 창업용자 지원(年 1억원, 금리 2.0%),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전문가멘토링(‘유스테이’) 및 창업상담(‘헬프데스크’) 제공 등
- ▶ (성장) 청년 창업펀드 추가조성(22년 0.1조원), 청년 특화형 TIPS 운영 확대 등
- ▶ (재도전) 청년 재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신설
 - * 유망 아이템 보유 (예비)재창업자 전용 교육·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6천만원) 등 지원

[자산형성 · 금융지원]

① 청년 소득수준별 3대 맞춤형 자산형성·관리 패키지 본격 시행

소득기준	지원프로그램	납입한도	만기수령금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중위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액(月10만원) 매칭지원(1~3배)	연 120만원 (3년 만기)	720~1,440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1년2%→2년4% 지급	연 600만원 (2년 만기)	1,200만원+시중금리+ 저축장려금(약 36만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600만원 (3~5년)	1,800만원+펀드수익+ 소득공제(최대 720만원)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의무상환액 체납 시 연체금 한도¹⁾ 및 가산금 요율²⁾ 하향조정

- 1) (현행) 대출원리금 등 상환 고지금액의 9% → (개선) 5%
- 2) (현행) 매월(월할) 1.2% → 매일(일할) 0.01%

③ 다중채무자 등 취약청년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대출까지 포함

- * (현행) 학자금대출은 장학재단, 금융권 대출은 신복위에서 각각 채무조정
→ (개선)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개인채무를 신복위에서 일괄 조정

④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이 안정적으로 가입을 유지하며 자산과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당대우 예방·대응 강화*(22~)

- * 공제가입 사업장과 부당대우 금지협약 체결 및 직장내 괴롭힘 발생한 사업장 신규 공제가입 제한(사후조치 미 실시 시), 공제가입자 전담 상담창구 마련, 집중지도·점검 등

[성장 : 디지털 대전환시대 청년 지원]

- 디지털 네이티브(Native)인 청년층이 특히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디지털·신기술 분야로의 도전·성장·도약을 전방위 지원

√ 학생· 취업준비생	①디지털분야 취·창업 멘토링(22, 1천명), ②국내외 직무실습(22, 4천명), ③군 장병 소프트웨어교육(22~26, 5만명)
√ 청년 소상공인	①디지털 전환교육(22, 4천명), ②디지털 해결책 도입지원(22), ③우체국 소포요금 할인(22, 1천개)
√ 청년 스타트업	①키다리아저씨 재단 설립(22), ②최첨단 통신망 제공(22), ③디지털 주거시설 조성(24)

③ 취약계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

① (생계)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기초생보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면서 생계급여·긴급복지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17)1.73 ('18)1.16 ('19)2.09 ('20)2.94 ('21)2.68 ('22)5.02

▪ (생계급여)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20대 중증장애 청년은 개별 가구로 분리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20대 청년의 경우 주거지가 달라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 → (개선) 탈시설 혹은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부모가구와 분리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지침 개정

▪ (긴급복지) 위기가구 지원사각지대 해소 위해 **재산기준 상향**

* 일반재산: (대도시) 1.88→2.41억원 (농어촌) 1.01→1.3억원, 금융재산: 5→6백만원

▪ (상병수당)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22.7월~)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사회적 논의 지속**

* 6개 시범지역에 3개 사업모형 적용하여 모형별 정책효과성 평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임금·비임금근로자 대상, 일 41,860원 지원)

▪ (연금지원)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시 보험료(50%) 지원 신설**

*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 지원

② (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 확대를 위해 **근골격계 질환 검사 및 치료에 대한 급여화, 치과 분야 급여 확대*** 등 추진

* 신경치료, 무치아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 등

③ (돌봄) 서비스 질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속

▪ (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¹⁾ 본사업 추진 및 자택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칭)재택의료센터’²⁾ 도입**

1)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이용자 여건 및 수요를 파악해 두 가지 이상의 재가서비스를 통합 제공

2)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이 병원·시설에 입원하는 대신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스마트돌봄) AI, IoT 등 ICT를 활용하여 촘촘한 돌봄지원 강화

- ▶ (디지털돌봄) 노인 집단거주시설에 호흡·맥박·활동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 야간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상황에 신속 대응('21년 45 → '22년 94개소)
- ▶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에 화재감지센서,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설치하고 응급요원이 상시 모니터링('21년 20 → '22년 30만명)

- (긴급돌봄) 지원대상을 코로나로 인한 돌봄공백뿐 아니라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까지 확대('22년 시범추진)

④ (복지인프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 추진

* ('21.9월) 1차 개통 → ('22.上) 2차 개통 → ('22.下) 3·4차 개통

-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분석을 토대로 수급가능한 사회보장급여를 먼저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본격 시행('22.上)

* ('21.9월) 기초생보 등 기존 수급자 중심 시범도입 → ('22) 일반국민 대상으로 확대

⑤ (계층별 지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지원제도 보장

- (장애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月100→125시간) 하고, 중위 120% 초과 가구에도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 (현행) 중위 120% 이하 가구에 대해 지원(자부담 無)

→ (개선) 중위 12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40%)

- (한부모)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인상(月 10 → 20만원)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30%)*를 전 연령대로 확대

*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득·재산 산정 시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만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개선) 만25세 이상 한부모까지 공제 적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月30만원) 지원기간을 연장(보호종료 후 3→5년 이내)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비율 상향(100→200%)

4 「서민 재산 보호를 위한 3대 패키지」 착수

-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다단계’로부터 서민·취약계층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패키지 대응방안 마련
-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21.12월 선정) ‘22년부터 즉시 추진

※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과제 내용	시행시기
[보이스피싱]	
① 금융회사·공공기관 중심으로 SNS 공식인증 채널, 기업형 RCS 등 진위확인이 용이한 메시지 서비스 도입 추진	‘21.12월~
② 과기정통부(KISA)·경찰청·금감원 통합 신고시스템 등 구축 * (단기) 보이스피싱 등 통합 신고사이트 구축, (중장기) 통합 신고번호 신설 검토	‘21.12월~
③ 의심전화·악성앱 차단을 위한 사전예방 기술* 개발 * 휴대폰 단말 자체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탐지·신고 등	‘22.1월~
④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에 대면편취형·스미싱 번호 포함* * (단기) 약관 개정 대상 통신사업자 확대, (중장기) 이용중지 근거 명확화(법 개정)	‘21.12월
⑤ 관계기관 간 통계·정보공유* 등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 현재 보이스피싱 통계 각각 관리 : 금감원(비대면), 경찰청(대면·비대면 혼합) 등	‘21.12월
[불법사금융]	
⑥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사업 확대(‘22년 11.4억원) 등 피해자 지원 강화	즉시
⑦ 불법 사금융업자 처벌 강화 등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 지원 및 추가 제도개선 추진(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법제화 등)	즉시
⑧ 내구제대출* 등 신종수법 중심 경찰청 집중단속(‘22.1/4), 교육·홍보 * 대출자가 휴대전화 등 할부 매입 후 미등록대부업자 등에게 저가에 판매	‘22년 상시
[불법다단계]	
⑨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 시장감시 강화 * 다단계업체 정보공개(매분기) 시 신고포상금 안내, 홍보·교육 내용에 추가 등	‘22.1월
⑩ 비대면 다단계 등 신종수법 중심 단속 강화* * 특별 신고·단속기간 지정(‘22.1~2월),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22.1/4) 등	‘22.1/4

3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①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

①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밀착 관리를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 운영

-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집중 관리를 위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산하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
 - * 기재부 1차관(팀장) + 공급망 기획단 + 총괄 품목·II, 대외 등 4대 파트별 실무 작업반 구성
- ①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②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③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등 추진

② 위기장후 조기파악 및 신속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 ①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 대상 운영

* 품목별 소관부처 판단에 따라 공급망 점검 필요 품목 추가 선정

- ② 재외공관·코트라 등 중심으로 해외동향 점검 및 국내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산업·분야별 공급망 점검 체계도 가동

- ▶ (외교부) 수입의존국 해당공관이 종합 점검하여 모니터링(정부정책 변화, 무역분쟁, 산업동향 등)하는 시스템 구축 + 공관별 경제안보 담당관 선정
- ▶ (산업부) 공관-해외무역관(코트라)-산업부-협회 등 유관기관 점검체계 구축
- ▶ (농식품부·과기부·복지부 등) 소관 분야 품목별 점검체계 가동

- ③ 대응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에 따라 품목별 등급을 부여하고 동향파악, 보고주기 등에 있어 차등화*

* 예: A-B-C-D 4단계 등급을 부여하되 리스크가 더 높은 품목은 점검주기 단축

- 이상징후 감지시 관련 부처 즉시 공유 →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개최(긴급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및 신속한 초기대응* 실시

* 외교채널 가동, 국내 생산·비축량 점검, 대체 수입 타진,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등

③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

①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과다, 단기적 시급성, 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생산 가능성 등 종합 고려하여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

* 품목별 전담관 지정 및 유관네트워크를 구축, 공급차질시 영향 등을 품목별로 점검심사

- ▶ (경제영향) 차질시 산업 밸류체인에 큰 영향이 있거나, 국민생활 불편이 큰 범용품목 등
- ▶ (대외의존도) 수입규모와 수입의존도가 일정수준 이상일 것
- ▶ (단기적 시급성) 수출 현지 수급차질 가능성이 있거나 최근 국제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품목, 동절기 중점소요 품목, 탄소중립 밀접 품목 등
- ▶ (전환대체 가능성) 대내외 여건 등으로 수입선 전환이 어렵고, 국내생산이 곤란한 품목 등

- 주력산업·ICT 등 쏠분야 걸쳐 100여개 품목을 1차 선정하고, 200개 목표로 추가 선정

②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국제협력 등 품목별 맞춤형 안정화 방안 마련

- 이 중 주력산업 활용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20대 우선관리 품목은 '21년 내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추진

주요 맞춤형 대응방안(안)

비축 확대	▶ 조달청 비축대상금속 위주→국민생활 밀접 물자 포함·비축물량최대 100일→180일 확대 민간 기업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추가 재고 보유시 보관비용 지원방안 마련 검토
수입선 전환	▶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 상승분 지원 및 필요시 할당관세 적용 검토 ▶ 재외공관 코트라 중심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공급업체 발굴 및 DB화
국내기반 확보	▶ 범용품목 대상 시설자금 공급, 세제·금융 인센티브, 첨단품목 R&D 지원, 국내생산 독려 위한 공공판로 확대 지원 병행
국제 협력	▶ 품목간 상호용통시스템 구축(예: 에너지국제용통시스템) 등

②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연착륙 지원

① '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①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의 조기 확산을 위해 차주단위 DSR 2·3단계 순차 시행('22.1월/'22.7월)

	21.7월 이전	1단계(현행)	2단계('22.1월)	3단계('22.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신용 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①/② 유지)	(①/② 폐지)

- ②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22.1월~), 상호금융 비조합원 예대출 개선*('22.7월~)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 예대출 산정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출가중치 차등화

- ③ 신규 대출 관리와 함께 기존 대출의 적극적인 상환 유도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 확대

- 보금자리론(주금공)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 ('21년말→'22.6월말)하고, 디딤돌대출(HUG)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참여도 유도

* 현재 농협은행 수수료 면제(~'21년말), 기업은행 수수료 50% 감면중(~'22.3월말)

- ④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

- 既시행중인 대출 약정¹⁾ 위반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²⁾ 준수 여부 등 점검 강화

1) ①전입·처분조건부 주담대, ②주택구입시 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회수, ③1억원 이상 신용대출 취급시 1년간 주택구입 금지, ④9억 초과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2) 은행이 차주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② 분할상환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 ① '22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목표 초과 달성 금융회사에 주신보 출연료 우대 확대(최대 $\Delta 6bp \rightarrow \Delta 10bp$)

* '21년 52.6%, '22년 목표치는 '21년 최종실적으로 감안하여 '22년초 결정

- ② 신용대출·전세대출도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부여*

* (신용대출) 5년 이상 분할상환 대출은 DSR산정시 실제 만기를 적용하여 한도 확대 (전세대출) 분할상환 취급실적 우수 금융기관 대상 주금공 정책모기지 배정 우대, 주신보 출연료 인하폭 추가 확대

③ 금리상승기 정책서민금융 등 역할 강화

- ①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공급하고, 중금리대출도 35조원 수준 공급되도록 관리·유도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19) 8.0 ('20) 8.9 ('21) 9.6<목표> ('22) 10조원대
중금리대출 예상 공급규모(조원): ('20) 30 ('21) 32 ('22) 35

- ②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은 총량 관리 과정에서 공급규모가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 한도 부여 방안 등 마련

* 예)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중저신용자 대출취급 목표를 모두 인정하면서 증가율 관리(은행)

- ③ 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대출한도 '22년 한시 상향(+500만원)

* (근로자햇살론) 1,500 → 2,000만원 (햇살론뱅크) 2,000 → 2,500만원

- ④ 서민금융진흥원의 차주별 '맞춤대출' 플랫폼을 활성화¹⁾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햇살론 공급시 대출금리 인하 유도²⁾

1) 차주별 최적 대출정보 제공 및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연계 대상 금융기관상품 확대

2) '맞춤대출' 플랫폼으로 근로자햇살론 공급시 금리인하 혜택 제공(금융기관 협의 추진)

- ⑤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세부 안내기준 마련, 신청요건 표준화, 실적 공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추진

*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개선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 기반 강화

①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환류체계(채권은행 평가→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신용위험평가 내실화

- 코로나19 위기기간 중 일시 조정됐던 신용위험평가*를 위기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대상·기준도 조정

* ('19년) 연 2회 실시 → ('20~'21년) 연 1회 실시 & 평가 시 코로나 영향(피해)도 고려

- ▶ **[평가대상]** (현행) 주채권은행이 신용공여 50억원 이상 기업 대상 정기평가 실시
(개선) 현행 + 신용공여 30억원 이상 중 위험징후 기업 추가
- ▶ **[평가기준]** (현행) 총매출 < 총비용 시 사업위험 급증 기업으로 판단
(개선) 매출 감소에도 투자지출 급증시 위험급증 기업으로 판단

② 민간 자금이 구조조정 시장으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

-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1조원 이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펀드 잔액 투자집행도 가속화

* 총 운용규모 : (1·2차 합계) 3.2조원 → (1·2·3차 합계) 4.2조원 이상

- 중소기업 대상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 (블라인드펀드)에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예) 중소기업 의무투자비율(35%) 초과 달성시 운용사에 추가 성과보수 지급 등

③ 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조정·사업재편·회생기업 등을 지원하는 캠프 지원 프로그램도 보강

-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기업 지원을 위해 한시 도입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연장('20~'21년 2조원 → '20~'22년 2.4조원)

* 캠프가 기업의 부동산·동산을 매입 후 임대(S&LB), 매입 후 제3자 매각(B&H), 민간과 공동투자 방식으로 지원

-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자산(설비 포함)을 인수하는 '사업재편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21년 400억원 < 3개社 시범지원 > → '22년 1,000억원)

- 재기 가능성·의지가 있는 회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DIP 금융(회생기업 자금대여) 지원 확대('21년 350억원 → '22년 500억원)

③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

① 既 발표 대책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① 후보지 발굴, 지구지정, 사업계획수립 등 2.4대책(3080+ 대책) 도심주택 공급사업의 사업절차 전반에 걸쳐 속도를 제고

* 정비사업 기준 통상 민간 사업 소요 기간(평균 13년)을 7년 이상 단축 목표(5년 이내)

- 공공정비사업¹⁾, 도심공공복합사업²⁾·소규모주택정비³⁾에 대한 추가 후보지 공모(1/4분기) 등을 통해 후보지 지속 발굴

1)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고려 지역 대상 → 민간사업대비 고수익률 & 사업속도 제고 보장

2)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 대상

3) 1만m² 소규모 필지 대상으로 사업요건 완화·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2.4대책 관련 주택공급 후보지 및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현황(21.12.15일 기준)

- ▶ (후보지) 49.0만호 <공공정비 3.7만호, 도심복합사업 9.0만호, 소규모정비 2.6만호 등>
- ▶ (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요건<주민 2/3동의> 충족 후보지) 22곳, 3.0만호
- ▶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9곳, 1.4만호

- 주민동의(2/3) 확보지역을 중심으로 '22년 중 3만호 이상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 신규 지정 추진('21년 실적<만호>의 3배 규모)
- '21년 및 '22년 상반기 본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사업계획 수립 순차 시행

② 8.4 및 2.4대책 등을 통한 신규공공택지는 주요 부지별로 개발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착공 등을 신속히 진행

* 8.4 대책 3.2만호(태릉cc 6,800호 등) 및 2.4 대책 25.9만호(광명·시흥 7만호 등) 대상

- 태릉cc, 과천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 8.4대책 주요 부지별로 인허가 절차 착수 등 가시적 조치 시행

※ 8.4대책 신규택지 '22년 추진계획

- ▶ (태릉cc) 상반기중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3년 지구계획 확정
- ▶ (과천 부지) 과천지구(3천호)는 환경영향평가 등 거쳐 연내 지구계획 확정, 대체신규택지(1.3천호)는 상반기까지 지구지정 완료
- ▶ (마곡 미매각 부지) 상반기 중 설계 완료 및 7월 착공 개시
- ▶ (서울조달청 부지) 하반기 중 임시청사 이전 착수

- 광명·시흥(7만호) 등 2.4대책 신규공공택지는 '22년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3년부터 지구계획 수립 및 사전청약 순차 준비
- ③ 3기 신도시, 민간분양, 2.4대책 물량 등을 포함하여 '22년 사전청약은 당초 6.2만호에서 6.8만호*로 확대 시행
 - * (공공부문) 3.0만호 + (민간·2.4대책 물량) 3.8만호(3.2→3.8만호 확대)
- '22년초 상세계획을 발표하고 추가규모 확대방안도 지속 검토

② 부동산 시장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 ①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등 부동산시장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주요 유형별로 연중 집중단속 실시
 - *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작, 불법전매·교란, 부당청약·전매 등
- 지방 저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연소자 등 편법증여 조사, 부정청약 조사 결과 등을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
- ② 3.29 투기근절대책 잔여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제도화가 완료된 주요 과제*들은 시장 안착에 총력
 - *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재산등록·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등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현황(21.12.15일 기준)

- ▶ (법률) 22개 중 7개 既개정, 15개 발의 완료, (하위법령) 9개 중 7개 既개정, 2개 개정절차 진행 중, (자체 제도정비) 총 18건 후속조치 완료
-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6만명 내외) 재산등록 심사를 기관별로 1분기 중 착수, LH직원에 대한 정례조사(연1회)도 하반기 중 실시
- 부동산거래신고법(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조속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
- ③ 일부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귀속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21.11월)의 제도화 본격 추진
 - * ①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③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 본회의 의결된 주택법(21.12월 시행), 도시개발법(22.6월 시행)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절차도 즉시 착수

③ 이증가격 완화 등 전월세시장 안정

◇ 계약(신규계약·갱신계약) 및 거주유형(전세·반전세·월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 및 이증가격 부담 완화 방안 마련



1. 전세시장 수급개선

[단기 주택공급 확대]

①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하여 **11.19 대책 '22년 기 발표 물량(現 3.9만호)을 최소 5천호 이상 추가 확대**

- * 신속한 공실 해소를 위해 소득·자산기준 배제(경쟁 발생시 소득수준에 따라 선발)
- * '21년 11월까지 4.6만호 공급(당초 계획대비 118%), 12월 중 4천호 추가공급 예정

▪ 공공전세주택(0.9만호), 신축 매입약정(2.3만호), 비주택 리모델링(0.7만호) 등 '22년 신축전세 계획물량은 '21년 대비 빠른 속도로 공급

- * 연중 수시 매입신청 접수, 매입심의 상시화(現 월 1~2회) 등으로 공급속도 제고

② 단기 주택건설 물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주택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¹⁾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²⁾

- 1) 공동주택 등의 일부 대형 부재를 모듈(Module)로 공장 제작하여 공사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 → 조기 건설 및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 절감 가능
- 2)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5%까지 완화 추진

▪ 저층 중심의 공급에서 벗어나 13층 이상 **고층형 모듈러주택 공급 상용화**를 위해 **실증단지* 연내 착공** 추진

- * 경기도 용인시 행복주택, 지상 13층, 106세대

③ '22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되 계획된 입주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공급 조기화 추진

- * 공공임대 공급물량(만호, 연평균): ('08~'12)9.1 ('13~'17)11.2 ('18~20)**14** ('21°)**14** ('22°)**14**

[전세수요 분산]

- ①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3기 신도시 (5~10%) 및 2.4 대책 물량(10~20%)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
 - 세부물량 등 구체적 사항은 지구계획 변경(3기 신도시 등), 사업계획 수립(2.4대책 도심공공복합사업) 시 함께 발표('22.下~)
- ②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 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시기 조정·분산
 - * 서울 정비사업 이주수요 <강남 4구> (만 세대, '21.12월 기준 잠정치)
: ('20)2.5<0.8> ('21.上)0.5<0.2> (下)0.7<0.5> ('22.上)0.6<0.2> (下)0.5<0.1>
- ③ 공공·민간이 연계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입주물량 정보 제공(청약홈)을 통해 이사철 전세수요 집중 방지('22.1월)
 - * 한국 부동산원(공공)과 부동산R114(민간)간 입주물량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향후 입주예정 주택을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구분하여 공개(부동산원)

2. 신규·갱신계약 임차인 지원 강화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21.12.20~'22.12.31 기간 내 신규·갱신계약 체결분 한정 / 1세대 1주택자 보유 주택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 상생임대인 개념

- ▶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인
- ▶ '직전 계약'은 ①기존 임대차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②1년 6개월 이상 유지 한정 <①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②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 제외>

계약유형	갱신권	주요 사례
신규계약 <신규 임차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임차인 갱신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 계약 만료 이전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 취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필요)
갱신계약 <기존 임차인>	갱신권 미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신요구권 사용 전 양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 갱신한 계약 * 이 경우는 임대차계약신고 시 '갱신계약'이나 '갱신요구권' 미사용한 것으로 통보, 2년 경과 후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 사실 상 신규계약과 동일
	갱신권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임법 상 갱신요구권을 활용해서 갱신된 계약
	갱신권 既 소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신요구권은 기소진되었으나 묵시적 갱신 등 재갱신된 계약

[신규계약 체결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 ① 신규 임대차 계약시 '전세 → 반전세' 전환 확대 등에 따른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22년 한시 상향(10/12→12/15%)

※ 現 월세세액공제 개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 (대상)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 (주택요건)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2%/ 5,500만원 초과 10%
- ▶ (한도) 年 월세액 750만원 한도(12% 공제율 기준 年 최대 90만원 지원 효과)

- ② 주거급여, 청년 월세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 강화

※ 주거 취약계층 월세 등 주거비 부담 경감 정책('22년 신규 시행)

- ①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확대(45→46% 이하), 기준임대료 인상(최대+5.5%)
- 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22.上~)
- ③ (청년 월세대출) ①보증부 월세대출 요건 완화(소득 2천→5천만원, 월세 60→70만원 이하)·지원한도(월 40만원→50만원 이내) 확대
②월세 거주 무주택청년 무이자 대출(최대 20만원, '22년~)
- ④ (중기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 고정금리) 일몰 연장('21→'23년말)

- ③ “깡통전세” 등 세입자 피해 방지 대책도 적극 강구

- 일몰 도래되는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연장('21년말→'22.上)
- * 장기간 지원으로 누적된 보증기관(HUG)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수준은 축소
(現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보험료 80%<2억원 초과 70%> 지원 →(改) 2억원 이하 40%<30%> 지원)
- HUG가 악성 임대인 명단을 별도 관리·대외공개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확인토록 안내

[계약갱신 과정에서의 임차인 보호 강화]

①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편의 제고를 위해 임차인이 신청 시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교부

②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등을 분쟁 발생 시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 가능토록 매년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배포*

* 전국 공공기관·지자체, 기차·지하철 역사 등 유동인구 밀집 장소 홍보물 배포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주택매각 등 불법행위 시 임차인에 손해배상액 지급한 사례 다수 확인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

【임대인 실거주 인정 사례】

▶ (사례①) 집주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계약갱신이 거절당한 것을 증빙하여 임차인이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필요성 납득

- 다만, 추후 제3자 임대 등 허위 실거주가 밝혀진 경우 손해배상액 2천만원(현재 임차보증금 6억원 수준) 지급 합의

▶ (사례②) 집주인이 자신의 직장 출퇴근·가족 병간호를 이유로 갱신거절 사유를 소명하여 임대인의 갱신거절 정당성 인정

- 다만, 임차인에 보증금의 일부(10%)를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

【임대인 실거주 부정 사례】

▶ (사례①) '19.5월~'21.6월 임대기간 중 임대인이 주택 매매계약 체결 (21.3월 소유권 이전) →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이 신규 임대인에 승계 인정

- 유효한 갱신청구권으로 계약연장 인정, 다만 계약해지 조건으로 임차인 2개월 추가 거주 및 이사비 등 보상비(5백만원) 등 합의·조정

▶ (사례②)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였으나, 이후 주택이 부동산 임대 매물로 올라온 것이 확인 → 손해배상 의무 인정

- 집주인이 이사비,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

③ 일반국민들의 분쟁조정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서비스 앱¹⁾ 개발 및 홈페이지·콜센터 전문성 강화²⁾

1)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위원회 위치 안내 등

2) 임대차분야 조사·통계·정보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 운영 주체 이전

④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이슈 대응

① 금융·외환시장 및 대외신인도의 안정적 관리

- ① 변이 바이러스,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주요 리스크에 대응한 시장안정 노력 강화
 - 거시경제금융회의·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외환시장 및 외화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
 - 국고채 시장도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화 조치 적기 수행
- ② 신평사 연례협의*, 대면·화상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경제를 상시 홍보하고,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 유지
 - * (22.上) 무디스 연례협의 및 3사 국가신용등급 발표(잠정), (下) S&P·피치 연례협의(잠정)

② 외환거래체계 개편 및 국채관리 선진화 추진

- ① 개인의 해외투자·송금 증대 등 외환거래 참가자·규모의 확대, 거래방식 고도화 등에 대응하여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
 - * 외환관리법이 외환거래법으로 변경(99년)된 후 첫 전면개정(그간 일부개정만 시행)
 - 개인과 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현행 법령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
 - 외환업무범위와 책임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여타 법령과의 정합성도 제고
 - 해외투자자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 ② 고객 접근성, 은행거래 개선 등 외환시장의 질적·양적 성장 도모
 - 수출입기업,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플랫폼¹⁾을 통해 가격정보를 실시간 확인·주문·체결하는 전자거래 방식 본격 도입²⁾
 - 1) (현재) 고객이 은행에 전화주문 → (개선) 전용 플랫폼을 통해 직접 호가확인·주문
 - 2) 은행의 자율규제(거래절차·위험관리 등) 마련 및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중 시행
 - 양방향 외환거래를 통해 원/달러시장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 제공
 - * 선도은행 대상, 정책자문·의견수렴 협의체 구성 및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등

③ 국채 발행량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에 중점을 둔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 마련」(22.上)

【과제 예시】

- ▶ (국채 공급) 국고채 연물 다양화·발행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차환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국형 발행모형」 신규 구축
- ▶ (국채 수요)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대인플레이션 형성 등 순기능을 가지는 물가채 활성화 방안 강구
- ▶ (인프라) 국채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초장기 선물(30년)을 신규 도입하고, 국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관리 기능 강화
- ▶ (지원체계) 차환위험 관리 등을 위해 국채발행 기준을 총액 기준에서 순증 기준으로 전환(국가재정법 개정 필요), 국채정책 지원체계 개편 검토

③ 대외 경제·통상이슈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21.10월 출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첨단기술 육성·보호 등 경제·안보 결합현안에 대해 선제 대응

* 대경장 산하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체(경제·외교안보 관련 장관, NSC 상임위 위원 참석)

② 국내경제 영향이 큰 주요 글로벌 이슈에 선제 대응

- (탄소국경세) 국내산업에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양자·다자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탄소배출감축 노력* 가속화

* NDC 상향 이행계획 마련, 탄소배출량 측정·검증 인프라 확대 등

- (디지털세) 최종합의문 발표(21.10)* 이후 제도시행을 위한 다자협정 체결·비준 및 개정입법 등 후속조치 준비

* (필라1)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적용

③ G20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국제공조 강화

- (G20)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의장국으로서 자본이동, 저소득국 지원 논의 주도
 - 탄소가격제 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세 후속조치 등 주요 현안에서 國益 관점에서 적극 대응

- (ASEAN+3) 지역공급망 강화, 기후대응, CMIM 활용도 제고* 등 주요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역내 핀테크 활성화 논의 주도

* CMIM 수원국에게 제공하는 통화에 달러화 이외 역내통화 포함 등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 목 차 〉

1.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73
①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	73
② BIG3 등 유망 신산업 육성	80
③ 주력 제조업·서비스 산업 혁신	89
④ 벤처·창업, 인재양성 등 혁신기반 조성	98
2.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109
① 탄소중립 후속조치 본격 이행	109
② 인구·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119
③ 공정·상생·사회적 자본	127
④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	132

1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①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

① 한국판 뉴딜 2.0 성과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 가속화

['22년 33.1조원의 재정투자를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 한국판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 >

구분	'20~'21년 기 투자 (국비)	'22년 예산 (국비)	'20~'25년 계획 (국비)	총사업비
디지털 뉴딜	10.8조원	9.0조원	49조원	67조원
그린 뉴딜	10.3조원	12.7조원	61조원	97조원
휴먼 뉴딜	11.4조원	11.4조원	50조원	56조원
(지역균형 뉴딜)	(12.9조원)	(13.1조원)	(62조원)	-
계	32.5조원	33.1조원	160조원	220조원

* 지역균형뉴딜 국비투자 규모는 디지털·그린·휴먼뉴딜 투자계획에 포함

① '22년 완료과제는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마무리

- ▶ 철도 주요노선 IoT센서 설치('20년 0.9만여개 → '21년 1.8만여개 → '22년 3만여개)
- ▶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20년 170개 → '21년 340개 → '22년 510개)
- ▶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 구축('20년 44개 → '21년 121개 → '22년 161개 지자체)
-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20년~'22년, 25개 지역)
-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20년 11개 → '21년 14개 → '22년 17개)

② 디지털·그린 분야 등 뉴딜 2.0 신규과제(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 기반 조성 등)는 '22년 예산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착수·집행

- '21.12월중 '22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③ 청년 지원 필요성 증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의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된 휴먼뉴딜 사업 본격 추진

[뉴딜 2.0 핵심사업 성과 확산 및 추진 가속화]

- ① (디지털 뉴딜) 전지역·전산업으로 D.N.A. 확산, 비대면 인프라·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 가속화 추진

핵심 과제	그간의 주요 성과
DNA 확산	AI 학습용데이터 구축(381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6개, 180개 센터), 14.7만건 공공데이터 개방, 보조금 24(7,700개)·국민비서(알림10/상담11종) 개시, 제조현장 AI데이터셋(12종, 데이터 2억개) 구축·개방(100곳 적용)
비대면 인프라	초중고 교실 WiFi 구축(38만개(누적), ~'22.2), 온라인 공개강좌(K-MOOC, 93만명),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6개 분야), 중소기업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1,567개소),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1.6만개)
초연결 신산업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구축(632개 기관),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 운영, 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131개 선정)
SOC 디지털화	전국 도시 스마트화(통합플랫폼 108개 보급 및 챌린지 64개 도시), 3D지형 영상지도 구축 완료(93,500km ²), 85개 시 3D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정밀도로지도 구축(고속국도 6,700km, 일반국도 11,670km)

※ 데이터기본법('21.10월), 국가지식정보법('21.6월), 원격교육법('21.9월) 제정

- (DNA) 데이터·5G·AI 활용 가속화를 통한 D.N.A. 생태계 강화¹⁾ 및 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기반²⁾ 마련

- 1) 데이터담 확대(AI학습용데이터 310종 구축), AI 지역확산(권역별 선도사업·특화융합사업), 제조데이터 거래를 위한 마이제조플랫폼 고도화('22.下),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도입(1월)
2) '데이터기본법 시행령 제정(4월),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비대면 인프라) 교육·의료 등의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인프라 지속 확충¹⁾,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확대²⁾

- 1) 온국민평생배움터 플랫폼 구축, K-MOOC 강좌(신규 200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6→9개)
2)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6만명), 비대면유망스타트업(300개) 등

- (초연결 신산업 육성) 메타버스, 클라우드, IoT 등 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콘텐츠·기술개발 등 기반 강화*

*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관광·교육·미디어 등 메타버스 서비스 및 지능형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 등

- (SOC 디지털화) 도로·철도·항만 디지털 관리 및 도시·산단·물류 디지털화 등 SOC 스마트화* 추진

* 스마트챌린지 확산(35곳) 및 데이터허브 보급(8곳), 철도 주요노선 IoT 센서 설치(25개 노선), 스마트 항만·어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무역항 29개소, 국가어항 3개소), 국가하천CCTV(3,600km) 구축

② (그린 뉴딜) 탄소중립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민 체감도 제고 및 민간투자 확대

핵심 과제	그간의 주요 성과
녹색인프라	공공임대주택(9.3만호)·공공건축물(1,716동) 그린리모델링, 스마트 그린도시(25개소), 그린스마트스쿨(484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확대('21.8)
그린에너지	전기차(22.9만대)·수소차(1.9만대, '21.11, 누적) 및 인프라 확충(전기 38,901기, 수소 66기, '21.11, 신규), RE100-K-EV100 등 기업의 자발적 친환경 전환 확산
녹색산업	스마트그린산단(10개소), 그린뉴딜 유망기업(71개사), 스마트생태공장(41개소), 클린팩토리(428개소) 등 녹색산업 육성 및 그린전환 지원('21년, 누적)

- (탄소중립 기반)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 등 감축인프라 구축, 국제규제 대응*, 순환경제 전환 본격화, 탄소흡수원 지속 확충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탄소영향 산정방법 개발

- (녹색 인프라) 탄소중립 그린도시(신규 2개소*), 도시숲(미세먼지차단숲 193ha 등), 그린리모델링(공공임대 9.3만호 등), 충전인프라(3.8만기) 등 확충

*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기후변화 적응 등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에너지 전환) 법적기반 강화¹⁾,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²⁾ 본격 시행, 미래차 보급 확대('22, 전기 44.6만대, 수소 5.4만대, 누적)

1) 풍력원스탑삽법·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지원, RPS 단계적 상향 이행

2)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

- (녹색산업 지원) 새만금 RE100산단 조성, 친환경 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투자 지원을 위한 융자, 펀드 등 금융지원 지속*

*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143억원, 5조원규모),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2천억원), 넷제로 유망기업 융자(1,200억원),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출자금 200억원), 친환경설비투자 융자(500억원)

③ (휴먼 뉴딜) 사람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사회안전망, 청년정책 강화, 격차 해소 등 포용성장 뒷받침

핵심 과제	그간의 주요 성과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1), 특고 고용보험 적용('21.7),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179.2만명, 3.4조원)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21.10)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요건 완화('20.3월·7월) 연장 운영(~'21년말)
사람 투자	SI대학원 확대(8→10개), SW중심대학 신규 선정(9개), 녹색융합기술 특성화 대학원 신규선정(9개), 디지털배움터 운영(1,000개소)

- (사람투자) 디지털 인재양성 지원규모를 확대¹⁾하고, 전국민 평생 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²⁾를 통한 미래 적응력 제고
 - 1) 재직자 AI역량 강화교육('21년 2,400 → '22년 4,800명), SW중심대학 9곳 신규 선정(총 44개)
 - 2) 평생교육바우처·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평생학습 종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추진
- (안전망)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¹⁾하고, 피해아동 안전확보·회복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²⁾ 강화
 - 1) ('22.1)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플랫폼 직종, ('22.7) 기타 특고·플랫폼 종사자
 - 2) 학대피해아동쉼터('21년 105 → '22년 141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21년 81 → '22년 95개소)
- (청년)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한도 인상 등 취약청년의 자립지원 강화('22.1)
 - * ①청년내일 저축계좌, ②청년희망적금, ③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격차해소) '교육회복 종합방안*' 집중 운영(~'22년),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22년)
 - * 기초학력 강화 + 다문화·장애 학생 지원 + 사회성 함양 + 저소득층 장학금

4 (지역균형 뉴딜) 지역 중점사업 지원 및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 가속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22년 13.1조원('21년 10.8조원)으로 확대

핵심 과제	그간의 주요 성과
뉴딜 지역사업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21.7.11), 지역뉴딜 벤처펀드(부산/충청/울산/경남 각 1,200~1,300억원), 경자구역법 개정('21.6),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2,074억원)
지자체 주도사업	투자심사 간소화(1,385억원 면제 '21.5 / 26조원 승인 ~'21.10), 우수사업 발굴(15건 특교세 300억원 '21.7), 뉴딜펀드 지역투자 강화(500억원), 지방규제 개선41건 '21.11)
공공기관 선도사업	남부권 스마트물류센터 건축설계 착수(경북, '21.9) 등 혁신도시별 협업과제 추진(452억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반영('20.12) 및 평가('21.6)
지속가능한 생태계	지역균형뉴딜 법적근거 신설근거법 개정 국회통과, 17개 시도 지역균형뉴딜 추진계획 마련('21.2), 시도별 뉴딜추진단 신설 기준인건비 확충('20.10, '21.11)

- (점검·관리) 시도별 중점사업의 성장 동력화를 위해 중앙·지방 점검회의¹⁾를 강화하고, 지역특구·산업²⁾ 등도 차질없이 관리
 - 1) 신호등 체계를 도입(원활●-지연●-중지●) 3단계)하여, 중점사업 추진상황 점검, 법제도 개선, 정보공유, 우수 지자체 포상 인센티브 제공(분기별 개최, 행안부·시도 참석)
 - 2) 실증종료 예정 규제자유특구(10개) 안착화(25개 사업, 도심융합특구 지정(4→5개소), 지역주력산업 성과평가('22.7), '지역뉴딜 벤처펀드' 모펀드('22년 400억원) 조성 등
- (발굴·지원) 주민체감도 제고 및 지속가능성 뒷받침을 위해 지자체간 협력사업 및 주민주도형 뉴딜사업* 발굴·지원
 - * 사업공모·컨설팅('21.9~11) → 사업확정·특교세 교부('21.12) → 계획수립·투자개시('22.1~)

② 뉴딜 국민과의 성과 공유 및 민간으로의 확산

[뉴딜 2.0 정책 체감도 제고 및 글로벌 확산 계기 마련]

- ①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총정리하고, 국민과의 공유를 통해 정책 체감도 제고
 - '22.3월중 범부처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 논의
- ② 부처별 양자회담,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한국판 뉴딜 2.0을 글로벌 확산시켜 뉴딜 선도국가로의 이미지 공고화

['22년 뉴딜펀드 신규 조성 및 정책금융 공급 확대]

- ① (정책형 뉴딜펀드) '21년도 목표달성(4조원 결성)을 모멘텀으로 '22년 중 추가 정책수요 등을 반영*해 4조원 조성 지속 추진
 - * 예) 탄소중립 분야, 비수도권소재 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 '22년에도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약 2천억원 규모(잠정)*로 추가 조성하여 국민과 투자성과 공유
 - * 국민자금 1,600억원과 재정 400억원으로 2천억원 규모 펀드조성 추진 검토
 - '21년도 조성분이 조성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투자 현황 등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예: 투자현황 보고, 운용사 간담회)
- ②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인프라펀드 출시 지원을 위해 심의위 지속 개최하고, 의결된 펀드 출시현황 등 지속 모니터링
 - 펀드 가입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 유지('22.1~)
 - * 공모형 뉴딜 인프라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9%) 분리과세(2억원 한도)
- ③ (뉴딜 정책금융) '22년 뉴딜 정책금융은 당초 계획('22년 18.4조원)에서 20.1조원 확대된 38.5조원을 차질없이 집중 공급

< '22년 한국판 뉴딜 정책금융 공급 계획(단위 : 조원) >

5년간 100조원 <18.4조원>				추가 공급노력(+α) <20.1조원>							
산은	수은	기은	신보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	
4.5	5.5	2.7	5.7	5.5	1.5	0.7	3.3	1.4	5.7	2.0	

- (5년간 100조원 달성 프로그램) 既 마련한 계획에 따라 '22년 18.4조원 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

- ▶ (산은) 뉴딜 공동기준 분야 및 품목 영위 기업, 정부 추진 뉴딜사업 참여 기업 등 뉴딜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
- ▶ (수은) 금리 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 ▶ (기은) 녹색산업 영위기업 및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 성장 촉진
- ▶ (신보) 뉴딜 분야 기업 R&D, 사업화 등 뉴딜기업 우대 지원프로그램

- (추가 공급노력)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20.1조원 규모의 뉴딜 정책금융을 추가로 공급(+a)

- ▶ (산은) 뉴딜 분야 기업의 스마트 공장 설비투자 자금지원 ('22년 1.0조원)
- ▶ (기보) 비대면·디지털 분야 R&D 및 사업화 기업 우대보증 ('22년 1.0조원)
- ▶ (무보) 뉴딜 관련 품목 수출기업에 단기수출보험 특약 제공 ('22년 5.0조원)
- ▶ (중진공) 뉴딜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22년 2.0조원)

[민자 투자 및 혁신조달 확산으로 뉴딜 2.0 지속 뒷받침]

- ① (민자사업)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업 중 대상시설 포괄주의를 활용하여 민자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신유형 사업** 지속 발굴

- 디지털·그린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SOC 확충** 및 산업화 시기 집중 구축된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추진

* 노후 국립대학시설 그린 리모델링, 디지털 관람시설 구축, LED 조명교체 등 신유형 시범사례 우선 추진

- ② (혁신조달) '한국판뉴딜 혁신제품' 풀(pool) 확대 및 공공부문의 구매 확산 등을 통해 뉴딜 관련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 촉진

- 혁신구매목표제*를 '22년 기관평가(정부혁신평가, 지자체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여, 뉴딜 혁신제품의 판로 확대

*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일정비율('21년 1.2%)을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구매실적을 평가

- 한국판 뉴딜 혁신제품 지정트랙 확대* 및 제품 발굴 등을 통해 뉴딜 관련 혁신제품을 100개 이상 신규 지정 추진('22)

* (기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민간 시제품(상용화 이전)에 한정

(개선) 부처 추천 뉴딜 관련 제품 추가(실제 뉴딜사업에서 사용 또는 도입 필요한 제품 등)

③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 및 제도개선 통한 추진기반 구축

[미래전환 뉴딜 12대 과제 조속한 입법 노력]

- ①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43개 법률 중 28개 입법완료)의 조속한 입법 노력으로 한국판 뉴딜의 지속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디지털포용법 등 국회계류중인 법률의 조속한 입법완료를 목표로 당정간 긴밀히 협력
- ② 법률 제·개정 이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지원조직 정비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추진현황 >

구분		법률명
입법 완료 (28개)	'20년(4)	산업집적법(改), 조세특례제한법(改), 고용보험법(改), 보험료징수법(改)
	'21년 (24)	국가공간정보기본법(改), 여객자동차법(改), 고등교육법(改), 기후기술개발촉진법(制), 환경기술산업법(改), 화물자동차법(改), 신재생에너지법(改), 전기사업법(改), 남녀고용평등법(改), 평생교육법(改), 디지털집현전법(制), 녹색융합클러스터법(制), 탄소중립기본법(그린뉴딜+기후위기대응, 制), 원격교육기본법(制), 직업능력개발법(改),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 改), 기초학력보장법(改), 도로교통법(改), 데이터기본법(制), 국가균형발전특별법(改), 산업디지털전환법(制), 퇴직급여보장법(改), 청년고용촉진특별법(改)
국회 계류 (16개)		전자금융거래법(改), 환경영향평가법(改), 개인정보보호법(改), 중소스마트법(制), 디지털포용법(制), 소상공인지원법(디지털전환, 改), 중기사업전환법(改), 기업활력특별법(改), 에너지전환지원법(制), 녹색금융촉진특별법(制), 노동전환지원법(制), 풍력원스탑삽법(制), 분산에너지특별법(制), 모듈러주택법(改), 순환경제사회촉진법(改), 지역사회통합돌봄법(制),

* 소상공인지원법은 2건을 1건으로 처리

[뉴딜 2.0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① '20~'21년 개선방안을 마련한 191개 과제에 대해 추진상황 점검 및 신속 추진
 - * (예) 자동차 무선업데이트 허용, 통신수단 보험 계약해지 허용, 원격교육법 하위법령 제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RE100 이행 에너지원 확대 등
- ② 경제단체와 함께 뉴딜사업을 가로막는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인허가 등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신속 해소
 - * 투자지원 카라반 → 뉴딜관련 사업 기업 방문 → 기업투자지원회의(기재부 차관보) 개최

② BIG3 등 유망 신산업 육성

(1) BIG3 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

① BIG3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패키지 집중 지원

- ① (재정·세제) BIG3 분야에 전년대비 43% 증가한 6.3조원 규모¹⁾의 재정을 집중투자하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10%p 확대²⁾

1) BIG3 재정투자(조원) : ('19) 2.2 ('20) 3.2 ('21) 4.4 ('22) 6.3

2)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분야) 세액공제(%) : (R&D) 30~50 (시설투자) 10~20

- ② (제도) 인허가·기반시설 등 패키지형 지원, 수요맞춤 인재공급, 신속 규제개선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의 집중 육성 기반 구축

*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② 미래차 보급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 ① (전기·수소차) 연내 전기차 44.6만대(누적), 수소차 5.4만대(누적) 보급을 목표로 수요확대, 사업재편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수요확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¹⁾('22.1), 전기·수소차 보조금 조정²⁾ 등 수요기반 확충노력 지속

1) 렌터카, 물류 등 대상기업 범위 및 의무구매비율 명시(친환경차법 시행령 등)

2) 보조금 지급기준액 조정 등 차량성능 향상, 가격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 (충전인프라) 주요 교통·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수소차 충전소 지속 확충¹⁾, 급속충전기 표준 및 인증기준²⁾ 마련

1) (전기차 충전기) 급속충전기 '22년 누적 1.5만기 구축

(수소차 충전소) '22년 수도권 80기 포함 누적 310기 구축

2) 급속충전기 표준 프로토콜 정립, 초급속충전기(200kW~400kW) 인증기준 마련('22)

- (구매지원) 보조금 조기소진 우려 해소를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고(연간 2회 이상)하고, 지방비 확보현황 지속 점검

- ② (자율주행차) '27년 세계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 (기술개발) 범부처 대규모R&D 지속 추진* 및 자율주행에 핵심적인 고성능 AI반도체, 센서, SW 등 기술개발 지원

* 산업부·국토부·과기부·경찰청 공동으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추진('21~)

- (인프라 구축) C-ITS(실시간 교통정보 공유시스템) 구축¹ 및 정밀도로지도 전국도구간 구축,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² 추진

1] LTE-V2X방식 실증(~'22.10) 및 WAVE-LTE-V2X방식 고속도로 2,400km 병행구축(~'23) → 통신방식 결정 및 전국 구축('24~)

2] K-City(경기 화성에 경사로 등 복잡 도로환경 구축, 연구공간(혁신성장지원센터) 건립

③ (생태계 구축)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 전기·수소차 대상 인증제도 및 정비생태계 등 미래차 보급 기반 구축

- (부품전환) R&D·금융 등 맞춤형 제공을 통해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 시험설비 등이 구비된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광주) 구축

* (R&D) 전환기 대응기술개발(187억원), 환경규제 대응 R&D신설(220억원)

(금융) 미래차 사업재편펀드('22년, 500억원) 등 저리 융자지원

(인력)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92억원) 등 고급·실무인재 年2천명 규모 양성

- (시험·인증) 중소·중견 제조업체의 전기차 시험·인증 지원을 위해 신차 성능·효율 공인시험기관 확대 검토¹ 및 시설확충² 지원

1] 현행 7개 시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2] 국립환경과학원 내 자동차 연비시험(산업부·국토부·환경부 협조)을 위한 설비 확대

- (정비검사) OTA(Over The Air)를 통한 정비 허용¹, 정비인력 전문교육 기관 지정('22.上), 핵심부품 안전도평가 강화² 및 수소검사소 확충³

1] 정비업체 방문 없이 무선업데이트를 통한 제어 허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 자동차안전도평가 항목에 배터리관리시스템(BMS) 포함

3] 기존 CNG검사소를 CNG·수소 복합검사소로 전환('22년 누적 22개소)

④ (이차전지)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배터리 파크¹ 구축, 이차전지 수과정(회수~민간매각) 관리를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² 운영

1] 차세대 이차전지 시험제조, 실증평가 등을 위한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추진('22~'25)

2] 전국 4개 권역(경기, 충남, 전북, 대구)에 설치

③ 시스템반도체 집중 투자 지원 체계 조성

① (팹리스) 차세대 핵심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시스템반도체 및 AI반도체 설계센터)을 통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

- 제2판교 내 구축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 (예) 판교 센터 내 영세 팹리스에 대한 반도체 설계SW 지원(무료 ~ 50% 자부담) IP 기술 도입비용 및 상용화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확대 등

- '연대·협력 협의체' 내 "대중소 상생협의체¹⁾"를 구성하여 파운드리와 '자상한기업'간 협약을 추진하고, 인센티브²⁾ 제공

1) 중소 팹리스-파운드리-정부, (팹리스)시제품 수요 정기조사 → (파운드리)공정 미스 매칭(발주물량·운영시기 등) 해소('22~, 분기 1회 이상)

2) 동반성장평가 가점,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세제혜택 반영 등 추진

②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양산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반도체 포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시행(~24년)

*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10(대)~20(중소)%, R&D 최대 40(대)~50(중소)% 세액공제

③ (車반도체) 수요·공급기업 참여를 기반으로 특수 목적용(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 상용차) 차량용 반도체 개발 및 단계별* 확대 추진

* 특수 수요대응용 車 MCU·제조기술 확보 → 대량 글로벌 시장용 車 MCU로 확대

-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간 협업체계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수립('22.3)

④ (R&D) 4대 분야(모바일, 자동차, 바이오, 공공)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첨단센서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 K-센서 R&D 사업* 착수

*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22~'28): '22년 153억원

⑤ (인재양성)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확대*,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 신설 통해 추가 교육 없이 실무 투입 가능한 학사급 인력 배출

* '21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연세대-삼성전자, 年 50명), 고려대 '반도체공학과'(고려대-SK하이닉스, 年 30명) 신설 → KAIST-삼성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추진('23)

③ 바이오헬스 주력 산업화 전략 추진

① (핵심분야 육성) 범부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신약, 혁신 의료 기기 및 첨단 재생의료 기술개발 등 바이오헬스 핵심분야 육성

- 신약 전주기 지원(후보물질, 전임상·임상, 사업화), 융복합 바이오 기술 분야 등 혁신 의료기기 및 세포·유전자 재생의료 개발 지원

* 국가신약개발(1,342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1,816억원),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381억원) 등 바이오헬스 범부처 협업 사업 지원

② (유망분야 육성) 감염병 신속 대응 및 첨단 바이오 기술 분야 육성

-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113억원), ICT·빅데이터 현장대응 시스템 개발(108억원) 등 감염병 신속 대응 R&D 추진

* 생활방역, 재택치료 R&D 등 적시성 있는 감염병 신속 대응 R&D 지원체계 확충(22.上)

- 차세대 바이오, 첨단 그린·화이트 바이오 미래기술 선점 및 3세대 치료제(디지털치료제·전자약 등) 연구개발 확대

*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21.下 예타), 디지털치료제, 전자약 등 3세대 치료제 사업 신설 및 연구-임상-상용화 전주기 지원방안 마련(22)

③ (인프라 확충) 바이오 제품 상용화·창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제약 스마트공장 육성 및 핵심 원부자재·생산장비 국산화 촉진

* 의약품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25억원), 바이오 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10억원), 백신 원부자재 기술개발(69억원), 백신실증지원센터활용 기업지원(167억원) 등

- 바이러스 기초연구 인프라 확대와 함께, 스마트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 및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병원내 개방형실험실, 광역형 통합 의료 기기 훈련센터 및 K-바이오 랩허브 조성(21.12 예타) 등 창업촉진

-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¹⁾ 내 바이오헬스 투자기업에 대해 분양, 계약 등 외투 기업과 동일한 입지혜택 제공²⁾

1) 부산진해, 충북, 대구경북 등 핵심전략산업 旣 선정(21.11.5)

2)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입주, 장기임대 허용 등

④ (생태계 조성) 백신·규제과학 전문가,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재 양성, 바이오 데이터 통합플랫폼 등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K-Medi 융합(59억원), 규제과학(50억원) 인재 양성, 의료데이터중심병원(92억원), K-CURE 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109억원),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활용기반(264억원)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국제 표준 선도, 의료기기 품목분류 확대 등 의료제품 규제역량 강화¹⁾ 및 바이오 보세공장 활용 수출지원²⁾

1)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22, 75억원), 의료기기 품목확대사이버보안(22, 12억원) 등

2) 보세공장 전환 희망업체 대상 컨설팅 제공, 보세공장 반입대상 확대(임상물품, 원재료 등)

-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방안 및 혁신 의료기기 실증·사용 데이터 축적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제도개선 방안 검토

* AI, 디지털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술 분야 임시등재 추진(22.下)

(2) 미래 혁신 인프라(D.N.A) 확산

① Data : 데이터 경제 본격 육성

① (데이터 기본법) '22.4월 법 시행을 위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¹, 데이터 사업자², 데이터 거래사³ 등 주요 신규제도 설계·준비

- 1]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공공·민간부문 데이터 정책 총괄컨트론타워 신설
- 2] 데이터 거래사업자, 데이터 분석제공사업자 대상 신고제 도입
- 3] 데이터 거래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

② (마이데이터) 쏠분야 개인정보 연계·전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이종산업간 연계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등 추진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중('21.11 정무위 상정)

- (금융)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 손 안의 금융 비서'로서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다른 프로그램이 특정 기능·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으로, 안전하고 빠른 데이터 전송 가능

- (보건·의료) 다양한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 통합 조회·관리를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시스템' 구축

③ (가명정보) 가명처리시스템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활용종합지원플랫폼' 구축

- 가명처리 수요기업 대상으로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수요자-공급자-결합기관 매칭지원, 사전 결합률 확인 등 종합서비스 지원

④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중심으로 바우처 적용을 확대*하고,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시장에 알려주는 '수요 예보제' 추진

* (예) 자격요건을 미리 승인 받은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데이터 바우처 이용 연계

-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바우처 선정방식 및 심사·평가제도 개선

* (예) 전담기관에서 수요에 적합한 공급기업 선정, 구매 견적·신청서 심사 강화 등

⑤ (AI 학습용 데이터) 기 구축 데이터의 보완·개선*을 추진하고, 전략분야 데이터를 확대 구축('21년 190종 → '22년 310종)

* 각종 변수와 환경을 고려하여 고도화 과제를 선정하고, '22년 시범 도입 후 확대

⑥ (디지털 집현전) 분야별 국가지식정보(25개 기관, 67개 사이트) 연계 및 지능형 검색 시범서비스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 '23년까지 지식 큐레이션 등 각종 서비스 개발 및 '24년 정식서비스 개시

⑦ 데이터센터는 교통유발계수 대상 시설물 분류시 별도항목으로 신설('22.7)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완화·적용('22.10)

* (現) 방송통신시설·업무시설 → (改) 데이터센터 항목 신설 및 적정 계수 적용

② Network : 5G 확산 및 융합서비스 가속화

① 5G 전국망 구축 확대 및 공공와이파이(WiFi) 고도화

- (5G 커버리지) '22년까지 전국 85개市 지역으로 확대*

* ('21년) 85개시 주요 행정동 → ('22년) 85개시 행정동 및 주요 읍면

- (농어촌 5G) 농어촌 지역의 5G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년 상반기까지 통신사간 5G망 공동이용*을 단계적으로 상용화 완료

* 통신사간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時 A社 5G 구축지역에 B社가 망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A社 망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 (공공WiFi 고도화) '2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29,100대)를 5G로 전환하고, '22년부터 신규 구축장소에 WiFi 6E 기술을 단계적 도입

* 도서관, 보건지소, 공원 등 전국 공공장소에 공공WiFi 확대 구축('22)

② 5G 융합 新서비스 발굴 및 민간 확산노력 추진

-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융합서비스 조기 확산을 위해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범·실증사업 추진

*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 (5G 특화망) 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통신사 이외 5G 수요기업들이 참여하는 특화망* 서비스 개발·확산

*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 내에서 특정한 서비스에 맞춤형으로 사용가능한 5G망

특화망	구축주체	설치지역 내 서비스 제공대상	도입 방식
유형 1	수요기업	수요기업 한정	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유형 2	수요기업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유형 3	제3자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제3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③ AI : 핵심 원천기술 개발 통한 新시장 개척

① (차세대 AI 선점) 現 AI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개발('22~'26)

- ▶ (학습능력 개선) ①효율적으로 학습하고, ②타 분야 확장이 용이하며, ③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AI 기술개발
- ▶ (활용성 개선) ④신뢰할 수 있고, ⑤인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AI 기술개발

② (대형 언어모델 개발) 대용량 한국어 데이터를 사전 학습하여 응용분야에 활용 가능한 한국어 대형 언어모델 기술 개발('22~'25)

* 산학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학습된 모델, 연구데이터, 소스코드를 전면 공개할 수 있는 한국어 대형 언어모델 구축 및 고도화

(3) Post-新산업 집중 육성

① 메타버스 : 플랫폼 성장기반 조성 및 관련 법제 정비 추진

①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기술개발 로드맵 제시('22)

* ①광역 메타공간 ②디지털 휴먼 ③디지털미디어 ④실시간 UI/UX ⑤개방형 플랫폼

② 장르별¹⁾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아카데미²⁾를 통한 1인 개발·창작자 양성('22~)

1) 전통문화, 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한국관광 등

2) SW관련 전공자, 코딩기술 보유 청년 등 대상으로 9개월(1,200시간) 이상 집중교육(연 180명)

③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의 주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지원('22~)

* (예) 도시(온라인 가상 투어), 교육(가상교실 실감형 교육), 제조(생산공장 가상화) 등

④ 메타버스 부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병행 마련

-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자율성 기반 규제 기본원칙 수립 및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22~)
- 메타버스 등 차세대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법·제도적 쟁점 발굴, 선제적 대응방향 검토('21~)

② 블록체인 : 공공·민간분야 적용 확산기반 구축

① 공공부문 블록체인 서비스 연계·운영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신뢰인프라¹⁾ 구축 추진계획(K-BTISI²⁾ Initiative) 수립

1) 각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도구, 플랫폼, 상호연동성, 지식공유 창구 등 제공

2) K-BTISI : Korea - Blockchain Trust Service Infrastructure

②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블록체인 개발검증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

③ 블록체인 핵심기술 및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AI, IoT 등)과의 융합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술로드맵 수립

④ 「블록체인 진흥법」 제정 추진, 개인·위치정보 파기규정 합리화¹⁾, 스마트계약·분산신원증명 지침 마련²⁾ 등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1) 블록에 기록된 정보는 정정·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위치정보 파기규정 개정 추진(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

2) 기존 계약체결·본인확인 관련 법령과의 조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③ 디지털 헬스케어 : 제도 정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① 연구용역 결과¹⁾를 토대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²⁾ 추진

1)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21.9.6~'21.11.30, 보사연)

2) (예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및 사례의 명확·구체화 등

② 업계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유권해석 사례 공개

* (현행)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비공개
(개선)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유권해석 결과를 원칙적으로 대외공개

③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평가 시범운영 등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활성화

4 클라우드 :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확대

①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2,149개 정보시스템(서버, SW 등)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 지원

* 2,149개 정보시스템 중 90%이상의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예정('22)

②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내부업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선도사례 발굴·추진

* 정부·지자체 내부업무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안정성과 보안 등을 고려하여 이용 확대 검토

③ 사용량만큼 과금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이용료 가변성)을 고려하여 종량제 예산제도 도입 검토

* 예산 편성지침에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항목 신설, 정보화사업 낙찰차액도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에 사용 허용 등

5 지능형 로봇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실증 추진

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력부족, 감염병 확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5G·AI 기반 대규모 로봇·서비스 융합실증 추진('22~)

② 첨단 제조로봇 시장 조기진입을 위한 실증센터* 조성 완료('22)

* 5G 통신망 실증환경 통합관제시스템 및 인증/평가장비 구축 → 기술사업화 지원

6 유망 신산업 분야 약 66조원 정책금융 패키지 집중 투자

① BIG3, D.N.A. 등 신산업·혁신성장 분야에 약 66조원 정책금융 지원

* 한국판 뉴딜 분야 정책금융 「18.4조원+α」 공급목표도 포함

- ▶ (산은)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혁신성장 기업 지원 ('22년 22.0조원)
- ▶ (수은) BIG3 등 혁신성장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22년 14.0조원)
- ▶ (기보) 혁신제품·서비스 생산 또는 기술보유 기업에 보증지원 ('22년 5.5조원)
- ▶ (중진공) 비대면 창업기업 등 신산업·혁신분야 중소기업 대상 지원 ('22년 1.3조원)

② 최신 산업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22년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편하고, 「뉴딜투자 공동기준」과 연계

* 메타버스, 예측분석 디지털프로그램 등 신규품목 14개 발굴 등

③ 주력 제조업·서비스 산업 혁신

(1) 제조업 혁신 고도화

① 조선업 등 주력 산업 혁신 확산

[글로벌 선박시장 친환경·스마트화 선도]

- ① (친환경선박) 대규모 기술개발사업¹⁾ 등을 통해 수소²⁾·암모니아·전기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개발 본격 추진

1) 친환경선박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산업부·해수부, 총 2,540억원, '22~'31 예타)

2) 수소추진선 2척(해양쓰레기수거처리용도 등, '22~'26)

- ②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기술 실증 및 Track Record 확보를 위해 성능실증센터* 구축과 시험선박 실증('21.12~) 실시

* 울산광역시 동구 고늘지구, '21.10월 착공 → '22.6월 준공예정

[수주에 걸맞는 생산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인력 수급 지원]

- ① (재고용 인센티브) 퇴직 후 실업중인 자를 동일 업종에서 재고용하는 경우 채용장려금* 지급

* 퇴직후 실업중인 자가 교육훈련 이수후, 재취업시 월60만원(2개월간) 추가 지원(지자체)

- ② (맞춤인력 양성)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현장맞춤형 특화훈련사업* 신설

* 훈련비 전액 지원, 일정요건(350시간 이상 훈련 등) 충족시 훈련수당 추가지원(월 20만원) 등

[중소조선·기자재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 ① (설계기술 지원) 미래 유망 중소형선박과 공공선박 표준선형을 연구하여 新모델을 개발하고,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지원

* (산업부) 친환경 표준선형 新모델 개발 및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지원('22~'25)

(해수부) 보급형 레저선박 표준선형 연구, 설계·제조표준 지침서 개발 및 기술지원('22~'27)

- ② (친환경 인증연계)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인증등급·기준¹을 마련하고, 우대기준²을 설정하여 국산제품 상용화 및 시장진입 지원(~'23)

1] 내연기관·추진용 전동기 등 각각에 대해 성능, 에너지효율 등을 확인·검증 후 등급 부여
 2] 공공부문 우선구매, 민간 지원대상(이차보전, 보조금) 선정 시 우대 등

[국내 조선사 함정 수주지원]

- 수주시 조선사의 보증서 제출 부담을 완화(年 0.5조원 예상)하는 특례¹를 2년 연장('21년말→'23년말), '23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종료²

1] 방사청이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조선사로부터 대금의 90%까지 보증서를 제출 받으나, 조선소가 협력업체(함정 탑재 장비 등)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만큼 조선소 보증 부담에서 제외
 2] ('22) 신규로도 특례 지원 → ('23) 기존 특례 적용분만 지원 → ('24) 특례 종료

② 스마트화 지원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 ① (스마트공장의 질적 고도화)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확산 및 R&D·인력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고도화 기반 마련

- (선도모델 확산) K-스마트등대공장(15개), 동종업종·가치사슬 기업간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3개소) 등 선도모델 확산·보급
- (R&D 지원) 스마트제조분야 주요 기술을 선도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R&D'를 신설('22)

* 선진국대비 기술 수준이 80%이상 : ('20) 6개 기술 → ('26) 18개 기술

- (인력양성) 데이터·AI 등을 활용한 스마트제조환경을 중소기업이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제조데이터 촉진자'(100명)* 양성

* 기업의 의사결정자와 데이터 과학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연계·조정자 역할

- ② (데이터기반 제조혁신 강화) 제조데이터가 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되도록 KAMP* 기능을 고도화하고, 지원체계 강화

*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데이터 거래 촉진) 데이터 생산-수요자간 제조데이터의 공유·활용·거래를 촉진하는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그 이익을 제조데이터를 생산한 중소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체계

- (우수모델 확산) 활용 성과가 우수한 인공지능 표준모델을 조기에 확산하기 위해 '22년 10종 → 20종 이상으로 구축목표 확대

* 현재까지 '20년 12종, '21년 12종 등 총 24종 구축

③ (밸류체인 협업) 밸류체인, 개별기업 등 다양한 수준의 업종별 디지털 전환 100대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민간 확산 지원

- (추진체계)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구성 및 종합 계획 수립

* 위원장(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차관급 정부위원+민간위원)

- (성공사례)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활동과 연계한 업종별 대표사업을 통해 민간 파급효과가 높은 성공사례 24건 발굴

* 미래차, 가전, 조선 등 10대 업종별 구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과제 발굴

- (확산기반) 협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초 공통기술·컨설팅 제공, 표준·인증 마련, 2,000억원 규모 펀드¹⁾ 운용, 기업리더 양성²⁾ 등

1) (디지털혁신펀드) 2,000억원 규모 펀드 1호·2호 운용 및 펀드 3호 추가 조성

2) (변화추진자) 기업별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위한 기업 리더 100명 양성

④ (산단 제조혁신)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을 확대*하고, 제조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등을 지원해 제조업의 고도화 기반 마련

* '21년 신규 지정(7→10개소)된 전북군산, 부산명지녹산, 울산미포 산단에 통합 관제, 스마트제조인력 양성, 에너지플랫폼 등의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

- (산학연 협력강화) 산학연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제조R&D를 지원해 산단 내 산학연 공동 제조혁신 비즈니스 창출

- (농공단지 혁신) 국가·일반산단만 지원하던 4대 핵심사업*을 확대하여 '22년 4개 농공단지를 시그니처 단지로 조성 추진

* ①휴폐업공장 리모델링, ②복합문화센터 건립, ③혁신지원센터 건립, ④아름다운거리 조성

(2) 소부장 공급망 체질 개선

① 소부장 미래기술 조기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

- ① (R&D) 185대 R&D 핵심품목의 기술자립화 지원¹⁾과 함께, 65대 미래선도품목 기술난제 극복지원²⁾을 강화('25년까지 100개씩 구축)

1) 핵심품목 기술자립 핵심소재연구단 ('21년 57개 → '22년 72개)

2) 미래선도품목 기술난제극복 미래기술연구실 ('21년 4개 → '22년 18개)

- 우수과제의 경우 8년이상 장기지원이 가능한 갱신 R&D 도입

- ② (제조장비)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에 맞춰 BIG3+나노 등 4개 분야의 신산업 제조장비 31종 개발 개시 ('22년 200억원 투자)

- ③ (플랫폼) 소재연구 생산성 강화를 위해 AI 기반 설계-합성 지원 스마트 소재연구실, 공정시뮬레이션용 스마트 나노팹 등 구축

- ④ (인프라) 우주, 에너지,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분야 필수 요소인 극한소재 One-Stop실증 기반 및 R&D 지원 위한 프로그램 기획

*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23~'28/예타) : 극한소재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선도기술확보를 위한 One-Stop 실증(시험평가/시범생산/품질인증) 지원

② 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한 소부장 생태계 강건화

- ①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밸류체인 공고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연내 10개이상)하고, R&D·인력·테스트베드 지원

< 5개 소부장 특화단지별 육성방향 >

- ▶ (경기: 반도체) 반도체 요소기술 검증 및 양산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 ▶ (전북: 탄소소재) 신규 수요창출 지원 및 탄소섬유 인큐베이션 허브 설립
- ▶ (충북: 이차전지) 중대형 배터리 중심으로 시험평가 센터 등 구축
- ▶ (충남: 디스플레이) '21년 준공예정인 아산스마트밸리 연계로 투자유치 지원
- ▶ (경남: 정밀기계) 초정밀 장비 개발 및 AI 연계를 통한 산단 디지털화

- ② GVC 재편 동향, 주요국 대응전략, 우리경제 산업·대응방향 심층검토 등 GVC 이슈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가동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 중심

③ 스타트업에서 으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강화

- ① (으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을 연내 60여개로 확대(‘24년까지 100개)하고,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위한 지원을 본격 개시
* 범부처 100여개 지원사업 메뉴판 방식 지원(R&D, 금융, 실증, 규제특례 등)
- ② (강소기업)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소부장 유망 강소기업 20개사를 추가 선정하여 R&D·금융·투자 등 스케일업 집중 지원
- ③ (스타트업) 친환경·스마트·바이오·IoT 등 유망 분야 중심으로 ‘스타트업 100’ 20개 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사업화 등 집중 지원

(3) 서비스산업 재도약 기반 공고화

① 새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서비스산업 육성 체계 구축

- ①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장기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시 위임사항 구체화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준비
- ② 서비스 R&D 확충을 위해 R&D 바우처¹⁾ 공급 및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²⁾ 구축
1) 중소기업의 융합서비스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대학·연구기관 통해 개발 지원
2)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저작권 침해 발생~대응조치까지 단계별 업무과정 통합관리
- ③ 비대면 거래 등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한 통계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¹⁾ 및 서비스업 조사 방식 개선²⁾ 추진
1) 경제총조사 결과⁽²⁰⁾ 감안 대표업종 변경, 현실설명력 제고 위해 연쇄작성방식 도입 등
2) 물리적 장소 없는 사업체 포함 / 디지털플랫폼 거래·무인결제·배달판매 여부 추가
- ④ 본격적인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에 대응, 서비스 활용도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개편 추진(‘22.上)
* 자부담율 상향(10→30%) 및 바우처 활용 필요성이 큰 기업에 우선 지원 등

② 서비스 분야별 新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 가속화

① (의료) 전국 8개 지역 3차 의료기관 등에 AI의료SW(닥터앤서클리닉)을 보급하고,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AI앰블런스 전국 확대

② (바이오) 성장이 유망한 화이트·그린 바이오 분야 지원 강화

- 바이오기반 원·연료 상용화를 위한 R&D·인증제 등 산업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바이오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사전검토제를 통해 위해성 심사 및 수입·생산·이용 승인 면제(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확대(1→3개소)하고, 미생물 제품 생산을 위해 배양·제형화 등을 지원하는 GMP* 시설 구축

* 우수제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설비 및 공정 규격 등)

-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해양바이오 거점 조성으로 산업 활성화

▶ (서해권)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조성, 해양 소재 인증지원 센터 건립 추진

▶ (남해권) 인허가 지원을 위한 전임상 센터 조성, 해조류 기반 소재 생산시설 신설

▶ (동해권)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민간 R&D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중개기술 센터 조성

③ (관광) 비대면·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및 해양레저스포츠·해양치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해양관광 활성을 위해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2.上)하고 크루즈 운항재개 대비¹⁾ 및 홍보강화²⁾

1) 국내입항 및 기항지 관광 대비 방역 매뉴얼 마련, 선사 등 업계 정보 공유

2) 코로나 극복 공로가 큰 의료인력 등 중심으로 크루즈 체험단 구성·비용 보조

④ (금융)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 이용자 편의를 위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신설

▶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직접 고객자금을 보관하지 않고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하는 업종 신설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핀테크, 신용카드사 등이 이용자에게 직접 계좌를 발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원스톱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

▶ (소액후불결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주부·사회초년생도 이용 가능(30만원 한도)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책임 강화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

- ▶ (이용자예탁금(선불충전금) 보호) 이용자 재산보호 제도 도입(외부예치 등)을 통해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이용자피해 가능성 차단
- ▶ (영업행위 규율) 금융상품을 광고·비교추천하는 금융플랫폼에 대하여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사업자 피해를 예방
- ▶ (배상책임 확대) 현재 접근매체 위·변조, 해킹 등 기술적 사고로 한정된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지시하지 않은 비대면거래'(무권한거래) 전반으로 확대

-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확대에 따라 금융 보안을 위해 IT 리스크 (해킹·디도스·전산 장애 등) 관리체계 확립

⑤ (반려동물)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동물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법 개정, 연구개발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22.2) 신설 및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 수의사의 지도 하에 동물 간호 또는 진료를 보조(수의사법 개정('19년)→시행('21.8))

-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사전 게시 및 동물진료 표준분류체계 마련
- 반려동물 분양·판매, 호텔링 등 영업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질병진단·의약품 등) 및 먹거리 기술 개발 지원

⑥ (스마트 물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적 물류 시스템 구축·운영

-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정보화를 위해 물류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기술 및 배송기사 추종형·자율주행형 말단배송 로봇 개발 추진
- 인천·부산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물류 데이터 연계를 위해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 플랫폼 서비스 개시

* 선사-항만간 실시간 운영 최적화 서비스, 위험화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 ▶ (인천항) '22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 후 물류센터 착공 추진
- ▶ (부산항) 既 수행한 타당성 용역('21.8)을 바탕으로 '22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⑦ (수산물 유통) 주요 산지 거점과 전국단위 유통망을 연결하는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2.上)

- 비대면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유통법」 개정 추진

3 문화를 통한 소프트파워 강국 도약 기반 구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

① (금융) 콘텐츠 창·제작 투자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모험콘텐츠) 투자 소외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콘텐츠 모험 투자펀드 확대 조성('21년 1,500억원 → '22년 2,001억원)

* 기획개발 등 제작 초기 단계 콘텐츠, 출판, 창작공연예술, 장편애니메이션 등 소외장르

- (드라마) 국내 드라마 제작사에 투자하는 '드라마펀드'를 조성 ('22년 400억)하고, 제작사가 IP 보유 시 투자 우대 추진

- (콘텐츠 가치평가) 평가모델¹⁾ 추가 개발을 통한 대상분야 확대²⁾ 및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가치평가 연계 펀드 운영

1)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제공

2) (現) 방송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웹툰 → (改) 음악/콘서트('22~), 캐릭터/이러닝('23~)

② (제작지원) OTT, 신기술융합형 등 차세대 콘텐츠 제작 지원

* OTT(Over The Top): 기존 제도권 방송사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가 인터넷 기반으로 드라마 시리즈나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OTT 특화콘텐츠의 편당 제작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제작사-플랫폼사간 IP(지식재산권) 공동 보유조건을 부가하여 동반성장 지원

* (現) 편당 최대 3억 지원 → (改) 편당 최대 14.4억 지원

< 제작사 IP 보유형 제작지원사업 개요 >

중소제작사	제작사 IP 보유형 제작지원사업	OTT 플랫폼사
IP 보유 및 수익창출 다각화 등을 통한 제작사 육성	제작사 - OTT 플랫폼사 동반성장 지원	글로벌 OTT에 대응,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 제작비 확대, 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사업화 - IP 보유, 수익창출 다각화	- 제작사-플랫폼사 IP 공유 - 국내 플랫폼 1차 방영	- 정부지원 연계로 투자액 대비 양질의 콘텐츠 수급 - 국내외 유통 활성화

- 국내 OT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기획안의 발굴 → OTT사 컨소시엄 매칭 지원 → 제작지원을 통한 오리지널 콘텐츠 육성

- 차별화된 방송·미디어 콘텐츠 육성을 위해 ICT신기술 (5G·AI·XR 등)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22 20억원)

* (예) AI기반 피사체 자동촬영, 5G 기반 5개국 원격 실시간 협주공연 등

③ (규제개선) 기존의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¹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²로 일원화('22.1~)

1] 심야시간대(0시~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PC게임 제공 제한

2]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이용 시간제한

④ (인력) 장르별 인력양성 강화 및 첨단 문화기술 활용 인재 양성

- 핵심 장르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정례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인력수급 현황 분석·인재양성 추진

- | | |
|----------------------------|---------------------------|
| ▶(게임) 신기술 게임제작역량 강화(게임인재원) | ▶(웹툰) 웹툰융합센터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운영 |
| ▶(방송) 실감영상 및 방송포맷 전문인재 육성 | ▶(애니)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교육 |
| ▶(영화) 영화아카데미 과정 운영 | ▶(음악) 지역 음악창작소 운영 등 |

- OTT, 융복합 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의 실무·전문인력 양성

- ▶대학원을 중심으로 AI, VR 등 기술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및 교육운영(1,130명)
- ▶OTT 콘텐츠 기획유통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OTT 특성화대학원 신설(1개 대학/50명 내외)
-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실감 콘텐츠 및 인공지능 현장 실무 인재 양성(210명)

[新한류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① 한류 콘텐츠 및 연관산업 제품을 공동으로 홍보하는 범부처 합동 K-브랜드 홍보관 구축(1개소), 박람회 개최('22.下) 등 협업사업 추진

②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관광지를 홍보하는 '코리아 콘텐츠 위크' 확대 개최('21년 7개소→'22년 10개소)

* 각 문화원별 특화주제 선정 및 공연, 교류전, 박람회 등 현지행사 개최

③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전용 케이팝 공연 제작지원(40건), 실감·가상 공연 기술 개발 추진

④ 해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7개국 8개소→9개국 10개소)확대, 콘텐츠 수출 플랫폼 구축('22.1월), 현지화 지원(번역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④ 벤처·창업, 인재양성 등 혁신기반 조성

(1) 벤처·창업 생태계 성숙 촉진

①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개선 등 제도적 기반 확충

① (복수의결권)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으로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해설서 제작 등 절차 준비(’22.1)

*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21.12.8)

② (스톡옵션) 벤처기업 임직원 에 대한 혜택을 차별화¹⁾(’22)하고, 비상장 주식의 시가평가 현실화²⁾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22.上)

1) 임직원-임직원 아닌자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행사요건 등 차등(벤처기업법 계류중)

2) (기존)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만 인정 →

(추가) 최근 6개월 전후 매매기록, 국세청 훈령상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③ (투자형 R&D¹⁾) 기술 집약형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R&D 성과에 따라 콜옵션²⁾을 부여하고, 우선손실충당 허용

1) 민간의 선별역량을 활용한 先 민간투자(벤처캐피탈)-後 정부(모태펀드) 매칭방식

2) 투자기업의 임직원과 민간투자자에게 콜옵션 부여(창출 성과에 따라 최대 60%)

②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촉진

① 국내에서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한 창업기업이 현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기부 프로그램 간 연계 지원체계* 마련 (’22년~)

* (1단계: 해외 진출 가능성 확인) 국내 보육 → (2단계: 현지 진출) 현지 보육 → (3단계: 글로벌 스케일업) 현지실증 지원,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등

② 업계 수요가 높은 지역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해 아세안(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지역 내 프로그램형 K-스타트업 센터* 시범 운영

* 국내 창업기업의 현지 안착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비즈니스 매칭, 창업사업화 자금, 창업 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

(’21) 미국, 인도, 싱가포르 등 7개국 → (’22) 인도네시아, 베트남 추가

③ 국제기구 등 글로벌 협업 강화를 위한 ‘کم업 2022’ 개최(’22.11)

* (’21) 국제기구(ASEIC, 한·아프리카재단), 프랑스, 벤츠(獨) →

(’22) 유럽(스페인, 독일), 남미, 오세아니아 등 글로벌 스타트업 교류 확대

④ 해외 VC의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 2,700억원 조성(’22.下, 200억원 신규 출자)

③ 민간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및 투자방식 다양화

①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벤처투자법령 개정, '22)

- ▶ 현금뿐 아니라 산업재산권 등 현물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 활용가능분야: 대학·공공연 등 산업재산권 관련펀드 등
- ▶ 벤처펀드가 다른 벤처펀드로 출자 시 LP 수를 1인으로 계산하는 특례 신설
- ▶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운용(업무집행전문회사) 및 관리(창업투자회사) 업무 분리

②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형 벤처캐피탈¹⁾ 활성화를 위해 창투자 설립·등록 대상으로 상법상 LLC를 추가²⁾

1) 각각의 펀드매니저가 자본금 일부를 분담하여 운용사를 설립하고, 펀드 결성부터 청산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가진 회사

2) 벤처투자법 개정안('21.3월, 강훈식 의원안) 산중위 계류중

③ 벤처투자 인력 육성을 위해 대학원 등에 '전공+벤처금융 융합 과정'을 개설하고, 수료자에 창투자 전문인력 자격 부여('22.上)

④ 벤처펀드 피투자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회수재원 활용하여 중간회수펀드*를 신규 조성('22.2~)

* 기업에 직접 투자 하는 것이 아닌, 既 결성된 펀드의 보유 지분을 매입

- LP지분 유동화펀드(만기임박 펀드의 LP지분 인수) 및 벤처재도약 세컨더리펀드(만기임박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 인수) 신설

* (우량지분) 민간 세컨더리시장 / (비우량지분)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④ 창업·벤처 개방형 인프라 혁신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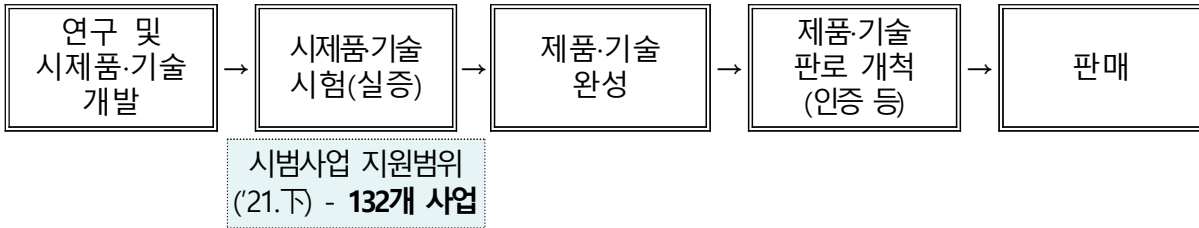
[“K-테스트베드” 공식 출범 및 운영 내실화 지원]

① (출범) K-테스트베드 시범운영('21.8~) 성과를 반영하여 국가 K-테스트베드 플랫폼 공식 출범*('22.上)

* (현재: 알리오플러스 배너 게재 중) www.kwater.or.kr/wis → (공식) www.k-testbed.go.kr

② (기능확대) 시제품·기술 실증지원 및 조달연계, 해외판로개척 등 제품·기술출시 쏠주기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

< 제품·기술 출시 단계별 사업 지원 범위 >



국가 K-테스트베드 사업 지원 범위

- ③ (참여 촉진) 창업·벤처기업 대상 민간기업의 인프라 개방정보를 공유(무역협회 등)하고, 국내-해외간 실증지원 사업 연계 지원
* (예) 해외 우수사례 견학 및 국제 테스트베드 교류사업 추진
- ④ (평가) K-테스트베드 운영기관·참여기관 평가체계를 마련(‘22.上)하고, 경영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외에도 우수기관 대상 포상 등 검토
*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
- ⑤ (교육)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운영, 정책지원 등 사업총괄 운영 기관*이 참여기관 대상 사업 관리·운영 실무 등 정기 교육 추진
* (한국수자원공사) 실증지원 실적 다수, 플랫폼 관리 및 타 참여기관 지원 역량 보장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성과 창출 가속화]

- 대기업이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사업모델 구현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성공사례 창출 확산
- ‘22년에는 최종 선정 스타트업을 60여개로 확대(‘21년 41개)하고, 최종 선정 스타트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우대 상향
* 중진공 융자한도 우대기준에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을 추가하여, 융자한도를 기존 6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

[일반인을 위한 “바이오 스페이스” 시범 조성]

- 일반인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이를 바이오 사업화·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바이오 분야 메이커 스페이스”를 시범조성
* (예) 대학·연구소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이 연구주제를 기획·적용하고 싶은 연구자, 대학 이외의 장소에서 실험을 배우고 싶은 학생 등
- ‘22년 바이오 분야 메이커스페이스를 신규 선정하여 ‘생물학 실험·실습’을 위한 공간(바이োস페이스)을 별도로 설계

[지식·기술창업 확산 유도]

- ① (부담금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22.上)하여 기술기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에 13개 부담금 면제 추진
* 관련 부담금 13개 면제 가능토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 ② (실험실 창업) 대학 내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험실 창업 인프라 구축, 후속 R&D 및 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22. 310억원)
* (교육부) 실험실 창업 교육과정 개설 및 인프라 구축 (과기정통부) 유망실험실 대상 후속 R&D 지원 (중기부) 창업 후 사업화 자금 지원
- ③ (공공기술)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경진대회*' 개최('22.上)
* 미래기술마당(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과기정통부), NTB 기술은행(산업부), 테크브리지(중기부) 등 부처별 기술거래플랫폼 내 공공기술 활용
- ④ (민관소통) 신산업·융복합 분야(청년·플랫폼·푸드테크 등)에서의 규제·갈등 예방을 위한 G-스타 소통 플랫폼* 운영 지속('22.1~)
* 스타트업과 정책담당부처가 만나 규제·갈등 이슈를 공유하고 예방·해소 노력

[유망분야 사업화 지원]

- ① (3대 유망분야) 비대면·BIG3·그린뉴딜 사업화 지원 확대*('22.1)
* ('21) 0.1 → ('22) 0.2조원 / 비대면(300개), BIG3(350개), 그린뉴딜(100개)
- ② (청년) 유망 아이템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대상으로 패키지식 집중 지원 프로그램* 신설 ('22.2)
* (교육·멘토링) 권역별 재창업자 전담 교육기관 지정하여 분야별 교육·멘토링 (사업화) 시제품 제작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최대 6천만원 지원
- ③ (바이오) 초기 우수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바이오 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확대('21. 56 → '22. 82억원)
*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자금 및 인프라(실험실·장비 등) 지원
- ④ (콘텐츠) 차세대 콘텐츠 기업을 중점발굴*하고, 재도전 및 유망 기업 해외진출 지원도 병행('22. 111억원)
* 7년 미만의 콘텐츠기업 대상,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 규제혁신 가속화

①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산 및 후속조치 이행 촉진

- ① ICT·산업·금융분야 등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과제는 '22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 신속 추진

< '22년 분야별 후속 법령개정 추진 과제(예시)>

분야	과제명
ICT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활용 원격전원관리시스템(전기용품 안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원격제어를 통해 복구하는 안전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 감지 서비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GHz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 신설
산업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맞춤형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여 소분·판매할수 있도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C유전자검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개선
금융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면인식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전자금융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거래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를 종합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신용보증기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토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확대
규제 자유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가스기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안전 차단·제어 시 무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형 엑스선 진단기기의 외부 사용 요건(현행 도서벽지 등으로 한정) 확대
스마트 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단거리 합승 택시 기술 서비스 실증사업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리케이션의 제작·수리 검정·사용 검정 기준 마련

② 규제샌드박스 성과¹⁾ 확산을 위해 기존 6개 분야²⁾에서 모빌리티, 바이오헬스를 추가한 8개 분야로 확대

1) 597건 승인('21.11월) → 투자유치 3.8조원, 매출증가 1,145억원, 고용증가 5,084명
2) 산업융합, 혁신금융, ICT융합,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③ 연구개발특구법 개정('22.下)*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 및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보완

* 연구개발특구 샌드박스에 他 5개분야와 같이 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 도입

② **규제혁신 시스템 업그레이드 노력 지속 추진**

① 규제비용관리제 시행('16년~)이후 운영실태·해외사례 분석, 법제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22.上)

* 규제비용관리 재설계, 규제혁신 평가 반영 등을 포함

② 新산업 핵심규제 정비,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부담 완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발굴·개선 지속

* 민관합동추진단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기업·국민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국민 체감도 제고

③ 경제단체장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적극 수렴

* '21년 이후 정례화하여 매 분기 개최 중

④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를 통해 작지만 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결

③ **한걸음 모델 제도화 등을 통한 신산업 진출 활성화**

① '20~'21년 중 합의를 도출한 5개 과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과제선정 과정, 합의도출 절차 제도화 등 개선방안 마련('22.上)

* ('20년 과제) ①농어촌 빈집 숙박, ②도심 공유 숙박, ③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21년 과제) ①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 서비스, ②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② 신·구사업자간 갈등 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22년 신규 과제 선정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 (예) 전문직군과 플랫폼 기업 간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 마련 등

(3) 혁신형 인재양성 체계 고도화

① 新기술 20대 분야 혁신인재 '22년 16만명 양성 추진

- 디지털, 산업기술, 미래원천기술, 환경·바이오 등 20대 신기술 분야에서 '21년보다 4.5만명 늘어난 15.8만명의 혁신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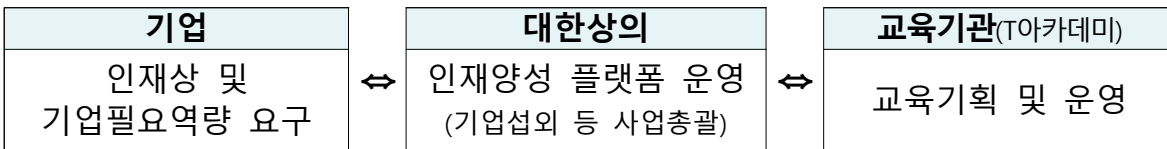
신기술(분야)	주요 분야	'21년	'22년
① 디지털 (8개)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8.1만명	11.5만명
② 산업기술 (6개)	로봇·드론, 시스템반도체	1.4만명	2.3만명
③ 미래원천기술 (3개)	수소, 양자, 우주	0.1만명	0.15만명
④ 환경·바이오 (3개)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1.7만명	1.9만명
계 (20개)		11.3만명	15.8만명

- (디지털) 현장·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K-Digital Training를 확대하고, 대학을 활용한 기업 주도형 캠퍼스 SW아카데미 신설
- (산업기술) 반도체 설계·품질관리 등 전문인력 양성
- (미래원천기술) 양자·우주·로봇 등 미래원천기술을 선도할 양자정보과학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 5개소 개소
- (환경·바이오) 생물소재개발·생태복원 등 녹색융합기술 전문 인재양성을 양성하고, 의사과학자 등 바이오헬스 인재 육성

② 기업 주도의 SW 인재양성 사업 본격 추진

- ① K-Digital Training 차원에서 자체 인재양성기관·프로그램이 없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가칭ASA(Allied Software Academy) 사업 추진(22.上)

< (가칭)ASA(Allied Software Academy) 사업(안) >



- 대한상의가 참여기업의 수요를 받아 공통 필요역량을 도출하여 SW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정부는 사업비용 등 지원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기반 기술 및 핀테크, 클라우드, 스마트제조 등 응용기술을 학습·활용토록 다양한 훈련과정 제공

- ② SW협·단체, 기업群的 컨소시엄 중심으로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기업멤버십 SW캠프 신설(22.上)

③ 산업현장과 연계한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① (대학 유연화) 신기술 분야 대학(원) 신·증설 및 정원 확대를 지원하고, 인재 조기양성을 위해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운영

* 대학간 또는 대학내 학과간 협업을 통하여 학부(3.5년)+SW·AI석사과정(1.5년)을 운영하는「(가칭)JUMP프로그램」 신설 추진

▪ 기업 연계 프로젝트 교육을 확산¹⁾하여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미래융복합 혁신인재양성대학²⁾ 선정·지원

1) 대학생연구팀 주도 기업실전문제해결(과기부), 산학 공동 프로젝트 기반 AI융합 혁신인재양성(과기부) 및 기업 제시 프로젝트 과제 공유플랫폼 구축(교육부) 등

2) 전공 선택의 자유 확대, 학사제도 유연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인센티브와 연계 검토

②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인적·물적자원 공유¹⁾를 통해 신기술분야²⁾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 신기술 분야별 수도권-지방, 일반대-전문대 간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

2) ('21) 8대분야 : AI,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 ('22) 지원규모 단계적 확대 추진

③ (신산업 선도전문대학) 산업변화에 따른 전문대학의 교육혁신*을 지원하여 신산업분야 특화 전문기술인재 양성('22. 12개교)

* 산업현장과 연계한 신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기존 과정 재구조화 및 교수 학습법 개선, 신산업 관련 실험장비 구비 등 기반환경 구축

④ 범부처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 인프라 구축

① 범부처 「인재양성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이 시급한 바이오·반도체·배터리 등의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계획* 마련('22.上)

* 산업계 인재수요의 정도·수준 및 정규교육으로 공급되는 인재의 규모현황을 양적·질적으로 파악하고, 공급여건을 검토하여 마련

② 인력수요 전망 고도화를 위해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22년~)

* 과기·산업부 등 분야별 심층 인력수급 전망은 별도 시행하되, 범부처 차원 수급전망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협의 진행

(4) 기술개발 · R&D 역량 강화

①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정 · 육성체계 구축

- ① 기술패권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에서 경제, 안보, 미래혁신을 아우르는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 보호전략」 마련·추진('22.上)
 - 양자, AI, 우주 등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 * 국가·경제안보와 미래 경쟁력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와 파급효과가 큰 기술
 - 추후 글로벌 기술·산업 성숙도와 우리 기술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기술을 유형화하여 맞춤형 중점 지원·조치수단 마련
- ② 국가 필수전략기술체계를 제도화하고, 연구개발·성과확산을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22.上)

<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

- ▶ (국가필수전략기술 체계) 필수전략기술 선정, 기본전략(목표지표, 육성방안 등) 수립 등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마련
→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체계 활용
- ▶ (국가 연구개발 혁신) 민군협력 연구개발, 도전적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 과감한 투자 지원 등
- ▶ (연구 인프라 강화) 인력양성, 지역발전,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 표준화 등 필수전략기술 전주기 지원 역량 강화

- 공급망 안정화, 전략산업 육성(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함께, 양자, 우주 등 필수전략기술 자립을 위한 Two-Track 전략으로 입법 추진
 - * '22년 상임위 상정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內 법안 통과 목표

< 국가필수전략기술특별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비교 >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안)
범위	전략기술 전 분야 (양자, AI, 우주 등)	공급망 산업 (반도체, 배터리 등)
수단	R&D · 인력양성 · 국제협력 · 표준화 등	특화단지(생산시설), 규제특례, 기술보호 등
해외사례	美 기술개발촉진법(Endless Frontier Act)	美 반도체생산촉진법(CHIPS Act)

[우주 : New Space 시대 민간주도 우주시장 확산 지원]

① (우주기업 육성)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우주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목적의 우주개발 확대*('22~)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22~'35, 총 사업비 3.7조원) : '22년 845억원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22~'27, 총 사업비 6,874억원) : '22년 1,728억원

②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R&D 방식 외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지체상금을 완화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22~)

▪ 자생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발사체·위성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협력 밸류체인인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22~)

③ (기술 자립) 누리호 2차 발사('22.5), 달궤도선('22.8 예정), 다목적 실용위성('22.10), 차세대중형위성('22.12) 등 주요 개발사업 완수

④ (추진체계 정비) 우주개발 분야의 민간-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 우주개발 컨트롤 타워를 강화*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장관→국무총리) 및 위원(차관급→장관급) 격상('21.11)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민간-안보 연계 체계 구축

[양자 :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

* 양자 기술: 양자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속연산(양자컴퓨팅), 초신뢰 보안(양자통신), 초정밀 계측(양자센서) 등을 가능케 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① (R&D)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추격을 위해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구축 및 양자기기간 연결을 위한 양자 인터넷 개발 추진

*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100억원), 양자인터넷 핵심기술개발(72억원)

▪ 양자센서 핵심기술 R&D를 지속 추진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적용 가능한 양자센서를 기업과 연계하여 개발

*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연계 양자센서 개발(85억원)

▪ 한-미 양자기술 협력 MoU 체결(22.上) 등 국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확대(양자기술협력, '22년 60억원)

- ② (산업생태계)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자 기업 육성 및 기술사업화·국제표준화 지원 확대 추진

* 양자정보과학 생태계 조성(283억원), 산학연 연계 양자 산업생태계 조성(30억원)

[6G : 핵심원천기술 및 글로벌 리더십 확대 추진]

- ① (핵심기술 확보) 6대 중점분야* 10대 전략과제에 1,917억원 투입(~'25년, '22년 323억), 6G 연구센터(RC) 확대('21 3개→'22 7개)

* 6대 중점분야(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별 10대 전략과제 추진

- ② (글로벌 협력) 한-미 정상회담('21.5)의 후속조치로 한·미간 약 100억원('21~'25, '22년 14억) 규모의 공동연구 추진

- ITU·3GPP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의 국내 전문가 리더십 강화를 지원(표준전문연구실(~'28년, 46.5억), '22년 6억)

③ 민간의 R&D ·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 도모

[중소기업의 R&D 연구 비용부담 완화]

- ①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률 하향조정을 '22년까지 연장

* 민간부담률 : 중소기업 25% → 20%

- ② 중소·중견기업 또는 기존·신규채용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을 적극 허용하여 민간R&D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

[민간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IP 활용펀드 조성]

- 국가 R&D·콘텐츠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태 펀드 관련부처들이 공동 출자하는 IP활용펀드 조성 추진

* 대학·공공연 특허는 연간 3만건 규모가 생산되나, 활용률은 22%에 불과('20년, 특허청)

- '22년 관계부처간 투자협의체 구성 및 출자규모 협의 등을 통해 '23년 IP활용펀드 조성

*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IP투자에 차별화된 제도개선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

2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① 탄소중립 후속조치 본격 이행

(1) 친환경·저탄소 경제 지원

①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 을 맞아 ‘5대 후속조치’ 본격 시행]

▶ (2050 탄소중립)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시나리오

* (A안) 화력발전 전면 중단 / 전기·수소차 전면 전환 → 배출 자체를 최대한 감축
(B안) 화력 中 LNG 일부 잔존 / 내연차 대체연료 사용 → CCUS 등 제거기술 적극 활용

▶ (2030 NDC) '18년(배출 정점)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기준) → 40%(상향) 감축

① (법·제도) 「탄소중립기본법」(‘22.3월 법 시행) 시행령 제정

- 시범사업 등을 거쳐 주요 계획·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22.9월~)

② (재정지원) 탄소중립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4대 중점분야에 ‘22년 약 11.4조원 재정투자 실시

< 탄소중립 재정투자 분야별 규모 >

4대 중점분야	규모	주요 내용
① 경제구조 저탄소화	7.9조원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대전환
② 저탄소 생태계	0.8조원	신유망산업·기업 지원, 인력양성, 순환경제
③ 공정한 전환	0.5조원	취약산업·계층 지원, 기후변화 적응지원
④ 제도적 기반	2.2조원	녹색금융, R&D, 제도기반, 국제협력
합계	11.4조원	

- 기후 위기에 중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2년 「기후대응기금」(2.4조원)을 신설하고, 탄소감축 사업에 집중 투자

* 기후대응기금 구조는 “탄소배출 감축 유인”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탄소 배출권 매각수입 등(수입) + 탄소 감축 목적 사업(지출)으로 구성

③ (감축경로)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경로)* 수준을 포함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2년 중 확정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 설정의 기준으로 작용

④ (법정계획)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수송 등 각 분야의 법정계획을 변경·수립 실시('22~)

- (에너지 부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발전믹스 변화*에 따른 발전설비·계통망 보완 등을 차기 계획에 반영

* '30년 전원믹스: (기준) 원자력 25.0%, 신재생 20.9%, 석탄 29.9%, LNG 23.3%
→ (변경) 원자력 23.9%, 신재생 30.2%, 석탄 21.8%, LNG 19.5%

- (수송 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 대폭 상향*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차기 계획에 반영

* '30년 전기·수소차 보급목표: (기준) 385만대 → (변경) 450만대(사업용 50만대 포함)

<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변경 및 차기계획에 반영 필요한 주요 법정계획 >

구분	법정계획	주요 내용	법적 근거	現 계획기간 (최근계획일 / 수립주기)	주관 부처
로드맵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small>*(구)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small>	국가비전중장기 감축목표 달성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수준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	(2차) '20~'40년 (19.10월 / 5년)	환경부
수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 대상, 연도별 허용총량 등 설정	배출권거래법 제5조	(3차) '21~'25년 (20.9월 / 5년)	환경부
에너지	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성장·삶의질 제고	에너지기본법(안)	(3차) '19~'40년 (19.6월, 5년)	산업부
	전력수급 기본계획	장기 수급전망, 수요관리 목표, 송·변전 설비계획 등	전기사업법 제25조	(9차) '20~'34년 (20.12월 / 2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관련 사항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5차) '20~'34년 (20.12월 / 5년)	산업부
수송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기본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보급 관련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기반조성 등	친환경자동차법 제3조제1항	(4차) '21~'25년 (21.2월 / 5년)	산업부

⑤ (국제협력) 글로벌 기후리더십 발휘를 위해 기후 관련 국제기구 신규공여¹⁾, GCF 4기('22~'24) 이사진 활동 및 다자논의 참여²⁾ 추진

1)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신탁기금 출연(60억원), P4G 공여(400만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력사업 출연(10억원) 등

2) COP27('22.11월), G20 등

[기업·민간의 탄소감축 실적에 기반한 인센티브 강화]

① (배출권거래제 개선) 상향된 NDC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감축기제로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추진

- (할당계획 재검토)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수정시 배출허용총량 등 '제3차('21~'25) 할당계획' 변경 검토
- (시장기능 강화) 가격급등락 완화, 수급불균형 해소 등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참여를 확대*하고 장내 파생상품 도입 추진
 - * 시장조성자 추가 및 증권사 자기매매 허용('21년 既시행) →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위탁매매 허용 추진 및 장내 파생상품 도입(~'25년)
- (감축 인센티브 강화)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시 배출권 할당 기업의 감축노력을 반영하는 등 감축 유인체계 강화

▶ 배출권 할당업체 내부감축 실적 인정범위 확대

* (기존) 조직경계 내부에 발생한 실적만 인정

→ (개선) 원료 변경 등에 따른 외부감축과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등도 내부감축 실적으로 인정

▶ 감축활동에 따른 실질적인 감축실적은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물량 산정시 배출권 할당업체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개선

* (현행) 감축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배출량이 감소시 신·증설에 따른 추가할당을 미지급

→ (개선) 감축활동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하더라도 신·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분만큼 추가할당

▶ 폐열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간접배출량(전력)에서 제외

* (현행) 열사용 업체가 외부시설에서 폐열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

→ (개선) 폐열 활용 생산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도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

② (기업 인센티브 강화)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축실적을 재정·금융지원 등과 연계

- (재정) 수혜기업의 감축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성과연동 재정사업 시범 추진
 -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54.5억원, 신규)
- (보증)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여 탄소중립 기여업체를 선별·우대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 신설(신·기보, '22년 1조원)
 - * 탄소가치평가모델을 활용하여 기술(사업)의 경제적·수익적 가치에 환경적·사회적 가치인 탄소가치를 가산하여 우대 지원 → 기후대응기금 예산(900억원) 활용
- (R&D) 혁신기술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난이도가 높으나 감축효과도 큰 기술에 대한 예타는 신속완료 추진

- (용자) 감축설비·공정개선 자금 대출시 탄소저감 효과를 근거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되, 감축실적 미흡시 페널티 부과하는 금융상품 확대

- ▶ 산은 탄소스프레드(5조원): 탄소저감시설 투자기업에 우대금리(최대 △1.3%p) 대출, 목표 미달 시 우대금리 환수
- ▶ 녹색금융 이차보전(22예산 143억원): 탄소중립 위한 민간 대출상품의 이자 이차보전

③ (국민참여 확대) 국민의 저탄소 소비·생활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대상 및 보상수준을 확대

- (탄소포인트제) 저탄소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여 국민 참여 제고

* 에너지 사용량 저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외에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 상품 구매 등도 보상 지급 검토

- (아이디어 활성화)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¹⁾을 추진하고, 아이디어 등록·거래 플랫폼과 연계하여 인센티브 제공²⁾을 검토

1) 초·중·고등학생 대상 탄소중립 스쿨챌린지(환경부)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아이디어 공모
2) (예) 현재 운영중인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확대개편하여 민간이 탄소중립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필요 기업 등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받는 구조로 추진

④ (정부사업 개선) 감축실적에 근거한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운영(22년 예산) 및 정식 도입(23년 예산~)

*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프로그램 신설]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재편, ESG 경영 등을 추진하는 中企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투·융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산은)

[녹색국채 도입 검토]

- 탄소중립 정책의지 표명, 지출사업 재원확보, 녹색채권시장 육성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 가능성 검토
- '22년 상반기 중 국채시장 영향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 실시

[ESG 투자 활성화 유도]

- ① (ESG 평가)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관이 준수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마련
- ② (금융상품 발행)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 촉진 등을 위해 발행절차, 대상사업, 사회적 효과 산정방안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예시 등 구체화('22.上) → 의견수렴 및 시범적용('22.下)
- ③ (비용부담 완화)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녹색채권 발행시 외부검토 비용 지원('22년 15억원, 30건 지원)
- ④ (ESG 펀드) 벤처 내 ESG 도입 촉진을 위해 'ESG 전용펀드'¹를 신설하고, 모태펀드에 ESG 관점의 심사체계 시범 도입('22.上)²
1) (예) 국내외 단체로부터 ESG평가 받은 기업, ESG 전담부서 설치기업 등에 투자
2)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 및 모태펀드의 ESG 도입방안" 연구용역 추진

[민간의 자발적인 ESG 경영 유인 제공]

- ① (가이드라인) K-ESG 가이드라인('21.12월)를 업종·규모별로 구체화*
* (기존) 공통항목 중심 → (개선) 업종별·규모별 가이드라인 제시('22~'23)
 - 중소기업의 ESG 경영 자가진단 툴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과 연계
* '21년 개발한 자가진단 툴을 시범적용('22년 5만개사 목표)
- ② (ESG공시) 환경, 고용 등 정보공개 제도¹와 ESG 공시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ESG 공시의 국제 표준화 논의²에 대응
1) 환경정보 공개, 고용형태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2)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 국제표준인 지속가능성공시기준 마련 예정
- ③ (인센티브) ESG 경영 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우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교육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22.3월)
- ④ (플랫폼) 시장참여자들이 ESG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K-ESG 플랫폼(가칭) 기능 강화*
* ESG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플랫폼 간 연계('22.下) 등 추진

③ 수소경제 활성화 노력 강화

① (전문기업) 수소 분야 매출, R&D 투자비중 등을 평가하여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R&D·인력·구매 등 집중 지원

* 수소전문기업 육성 목표 : ('25) 100개 → ('30) 500개 → ('40) 1,000개

▪ 수소 전문기업 대상 R&D¹⁾, 해외인증 및 사업화 컨설팅²⁾, 수요처 연계³⁾ 등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1) 수소전문기업 전용 R&D 트랙을 마련하여 기술개발 지원

2) 현장애로 해소, 기술 신뢰성 향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소혁신데스크' 운영

3)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전문기업 생산품을 혁신제품 지정·조달로 연계 되도록 지원하고, 수요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로 의무구매 추진

② (수소인프라) 수소 버스·화물차 중심 교통물류 체계 지원을 위한 수소교통복합기지¹⁾,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확충사업²⁾ 확대

1) 환승센터 등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부대시설 복합설치('21년 1곳→'22년 3곳 추가)

2) 화물차휴게소 등 물류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21년 2곳 → '22년 2곳 추가)

▪ 운전자 편의 및 충전소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규제샌드 박스를 통한 실증을 거쳐 수소 셀프충전 도입 추진

* (현행)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의 충전원만 수소 충전 가능
(개선) 충전교육 실시 및 CCTV 등 안전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셀프충전 허용

▪ 규제완화*, 설치비용 지원 등으로 기존 주유소·LPG 충전소 내 수소충전소를 함께 설치하여 융복합 충전소 구축 추진

* 주유기-수소충전기간 이격거리 제한 완화, 주유소·LPG 충전소 내 연료전지 설치를 위한 안전성 검증 등

③ (수소발전) 연료전지, 암모니아·LNG 혼소 등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수소발전 본격 확대

▪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수소발전구매공급(CHPS) 제도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 추진

* (현행)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발전용 연료전지 지원
(개선) 재생에너지와 특성이 상이한 연료전지 등 수소발전에 대해서는 CHPS(청정수소발전 구매공급제도) 별도 신설하여 지원

④ 신재생에너지 확산 노력 지속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 ① 정부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발전 지구에 인허가 소과정을 지원하는 **풍력 원스톱샵*** 도입 추진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원스톱샵법, '21.5.18. 발의)

- ② 마을주민 주도의 '**마을태양광 시범사업¹⁾**'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시 투자금²⁾ 지원 확대**

1) 마을 주민 주도로 건물·주택 지붕, 공용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 ('22년 10개 사업 총 150억원 지원)

2) 녹색혁신금융(주민참여자금): 주민들이 태양광, 풍력사업에 직접 투자(지분, 채권 등)시 장기저리 용자 지원 ('21년 370억원 → '22년 418억원)

- 주민 수용성, 환경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 참여형 댐수면 수상태양광**'을 확대하여 '**'23년까지 232MW 개발**

- ③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태양광·풍력 실증 인프라 구축, 친환경 수용성 증진 R&D 등에 중점 투자**

*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풍력 핵심소재 부품엔지니어링 센터 등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충북 진천) **상업 운영 실시('22.上)**

* 태양광 폐모듈 장비구축, 폐모듈 신고·수거·운반체계 구축 등(3,600ton/년 처리)

[한국형 RE100 활성화 도모]

- ①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차기 할당배출권 축소문제 방지를 위해 RE100으로 줄어든 배출량을 내부 감축실적으로 인정**

* RE100: 기업이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 캠페인

- ② **녹색 프리미엄 재원***을 RE100 참여기업의 **중소협력사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고,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 RE100 이행수단 중 하나로 전기소비자가 기존의 전기요금과 별도로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 ③ **산단 단위의 K-RE100 이행모델 개발** 등으로 개별기업 외에도 **다양한 단위로 K-RE100 참여를 유도**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노력 강화]

- ① (예방) 친환경 부표를 1,100만개 이상 신규 보급¹⁾하고, 어구 실명제, 어구일제 회수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법제화²⁾

1) 보급 목표(누적) : ('21) 2,130만개(39%) → ('22) 3,272만개(59%) → ('24) 5,500만개(100%)

2) 「수산업법」 개정('21.12)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22)

- ②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One-stop 해상처리(분류, 오염물질 제거) 친환경선박 개발 착수('22~'26),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6척) 투입

- ③ (거버넌스 및 국제협력) 민간 주도형 반려해변 확대(4→7개 지자체) 및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회의 개최('22.9, 부산)로 국제협약 이니셔티브 확보

-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에 따른 해양폐기물 탄소중립 실적 계량화 및 국가통계 반영 방안 마련('22, 연구용역 실시)

[해양 온실가스 저감노력 강화]

- ① 해양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및 갯벌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 갯벌 복원 사업 및 갯벌 식생복원 사업 추진

- 갯벌 복원 신규 2개소, 갯벌 식생복원* 시범사업 4개소 추진

*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 식생 복원

- ② 블루카본* 분포 현황 및 탄소흡수량을 계량화·DB로 구축하는 블루카본 통계기반 구축

* 블루카본(Blue Carbon) : 갯벌, 잘피, 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

- ③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통합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반 구축방안 마련

- 「갯벌법」 개정('22.上) 및 통합관리 기본계획('22.下) 수립

(2) 기업의 사업재편·노동전환 지원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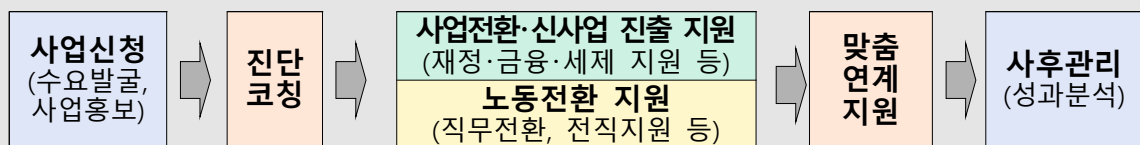
①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본격 이행

- ① (수요발굴·관리체계) 지원전담기관으로 「사업구조개편 지원센터」를 대한상의 내 설치(‘22.1/4)하고, 사업구조개편 파트너십 본격화
*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통해 추진과제 점검, 사업재편-노동전환간 연계 도모
- ② (법 개정) 사업재편·전환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법 개정(‘22~)
 -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범위에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규제특례* 대상 일부 확대
* 계열사 주식소유금지 3년간 적용유예,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 (사업전환법) 지원범위를 탄소중립 등 신사업 분야 유망품목 전환, 사업모델 혁신 등으로 확대하고, 공동사업전환 제도* 신설
* 대·중소협력사간 또는 이종업종 기업간 공동 사업전환시 일괄 승인후 자금 지원
- ③ (인센티브 강화)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R&D 지원, 펀드조성 및 융자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의 효율적 활용 추진
 - (사업재편 R&D) 사업재편 기업들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지원 확대(‘21년 100억원 → ‘22년 180억원)
* ‘21년 기 승인 연속과제 20개사(90억원) + ‘22년 신규과제 20개사 선정(90억원) 예정
 - (사업재편 펀드) 5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 조성(‘22.1/4)
* 주목적 투자의 50%(전체의 30%)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투자 필요
 - (사업전환 융자지원) 중진공 융자자금 확대(‘21년 1,000억원 → ‘22년 2,500억원)를 통해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센터」 설립(‘22년 10개)하여 컨설팅·사업전환자금 지원
- ④ (보완대책) NDC 상향 조정 등을 감안, 수요발굴·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시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
 - 사업구조개편 전용펀드 보장, 캠코 기업구조혁신센터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의 구조개편 활성화 추진

② 취약산업에 대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 ①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역량강화·직무전환·재취업지원 강화
 - (직무전환)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2.5만명)」을 신설하고, 소요 훈련비 전액 지원(1회 한도)
 - (전직지원) 장기유급휴가훈련을 통한 위기지역 종사자의 고용 유지 및 이·전직 지원 강화(경남도, 부산, 인천 중구 시범추진 중)
 - * 위기산업 종사자 대상 유급휴가 훈련시 훈련비·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 (기업지원) 노동전환지원금(최대 300만원)을 신설(‘22.1~, 2,300명)하고, 기업에 노동·사업전환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 실시
- ② 사업재편·전환 지원기관(대한상의, 중진공) 내 「노동전환 지원 센터」를 개소(‘22.3월內)하고, 사업재편·전환 지원과 연계 강화

< 노동전환 컨설팅과 사업전환·재편 컨설팅간 연계 >



< 노동전환 컨설팅 주요 내용 >

- ▶ (진단컨설팅)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컨설팅 필요성 및 컨설팅 유형 확인
- ▶ (전문컨설팅) 기업상황에 따라 노사관계지원형(노사협력), 고용서비스지원형으로 유형화하여 컨설팅

- 한국고용정보원 내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신설(‘22.1월)하여 구조 전환 직무분석 및 인력수급 전망, 지역·산업 모니터링 수행
 - * (산업·직종 전망반) 산업전환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군) 선제 파악 (노동전환 지원반) 구조전환에 영향 받는 취약업종內 직종별 직무분석·성공사례 발굴
- ③ 사업구조 개편 단계에서부터 노동전환이 고려되도록 연계 추진
 - (사업재편) 사업재편 심사시 기업 노동전환 계획*이 고려되도록 기업활력법 실시지침 개정(기업활력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추진)
 - *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실업예방 및 재직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계획
 - (사업전환) 사업전환 추진 및 승인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시 재직자 직무전환 프로그램 등 노동전환 지원사업 적극 연계

② 인구·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1)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강화

① 「인구정책 TF」 통한 이행점검 강화 및 인구대응 인프라 확충

- ① 1~3기 인구정책 TF 발표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분기 1회)으로 점검하고, 3기 과제들은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본격 추진

* 1~2기 TF 과제(총 326개: 1기 101개, 2기 225개) 전체에 대해 실적을 점검

< 추진(검토) 예정인 「3기 인구TF」 핵심과제 >

리스크	4대 전략	분야	핵심 추진과제	
인구 감소	① 인구절벽 충격 완화	여성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 마련 ▶ 성평등 현황 공시제 개선, STEM분야 여성진입강화	
		고령자	▶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제도 안착 지원 ▶ 중장년 전문인력 창업지원 강화	
		외국인	▶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허용 ▶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② 축소사회 대응	교육	▶ 대학 정원 유연화 등 규제 완화 ▶ 한계대학에 대한 체계적 폐교·청산 지원	
		가구	▶ 건강가정기본법 상 가족 개념 확대 및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방향 중장기 검토 ▶ 1인 가구 분야별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요인 해소	
		산업	▶ 뿌리산업 석·박사 인력양성 등 청년 숙련기술인 양성	
지역 소멸	③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역	▶ 도심융합특구 등 지역거점 육성, 초광역권 계획, 행정통합 등 ▶ 지역주도형 지역특화 패키지 대책 지원 ▶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단위 협력 활성화 ▶ 일자리+생활 SOC사업 등 연계한 주거플랫폼 사업 ▶ 농촌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획정비하는 등 농촌재생뉴딜 추진	
초고령 사회		④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돌봄	▶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노인돌봄 강화 ▶ 재택의료 활성화, ICT 활용, 지역중증거점병원 지정
			재정	▶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 특히,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중심의 구조적 과제(3기)*에 대해 간담회, 연구포럼 등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며 합의기반 조성

* (예시) 외국인력 활용체계 구축,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포괄적 보호체계, 평생교육·직업훈련 통합 플랫폼 연계 등

- ② 효과적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인구통계 추계기간 확대, 추계주기 단축, 포괄적 연금통계(퇴직연금→모든연금) 개발 등 통계 인프라 개선

* ①내외국인 인구전망(22.4) 2년주기 작성, ②지역 인구추계(22.5) 추계기간 확대(30→100년), 국내이동 시나리오 확대(1→3개), ③1인가구 등 장래 가구추계(22.6) 추계기간 확대(30→100년)

- ③ 인구정책 관련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경인사연·KDI 등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연구단」 운영
- ④ '22년에도 4기 TF를 출범시키고, 체계적인 인구이슈 대응을 위한 인구 관련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협업 강화, 인구정책연구단(국책연구기관 합동)과의 전략분석회의 정례화 등

②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본격 이행

- 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마련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22년부터 본격 시행('22년 4.1조원 투자)

구분	과제 내용
①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도입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후 1년 내 자녀 있는 부모 모두 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 80%, 상한 150만원 ▶ 육아휴직 부여 중소기업에 최대 월 200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생후 1년 내 자녀 있는 근로자에 육아휴직 부여시 3개월간 지급
② 영아수당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아이돌봄지원금 금액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③ 첫 만남 꾸러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신규지급('22.1월 출생아부터 지급)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60 → 100만원으로 확대
④ 공보육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50개 확충)
⑤ 다자녀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째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부터 전액지원) ▶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

- ②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범위를 추가 확대(만7세 미만 → 만8세 미만, 월10만원)

* 현행 7세 미만 아동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 추진

- ③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 인프라 확충
 - 초등 돌봄교실 확충(연 700실) 및 운영시간 연장(17→19시, '22~)을 추진하고, 교육청 주도 거점 돌봄기관 시범운영('22~)
 - 마을 내 공동 돌봄기관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22년 450개소 추가 확충하고,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30개소) 실시

④ 부처별 전문분야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력단절여성 대상 새일 센터의 직업상담,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다부처 협업사업 확대

* (21년 신규) 8개 사업(8개 부처) 16백명 → (22년) 11개 사업(8개 부처) 25백명 규모

⑤ 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

-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¹⁾(30인 사업장 → 전사업장), 유연근무 확산²⁾ 등을 지속 지원

1)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사업장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1→1.3만명)

2) 유연근무 도입 사업장 간접노무비(1.1만명) 및 재택근무 인프라 등 지원

- 워킹맘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인원을 확대(+약1천명)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수('22 83개소) 지원

⑥ 중소기업 등 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고용허가제(E-9) 관련 외국인력 도입국가를 확대*하고, 도입인원 상한을 폐지

*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16개 쏘 송출국에서 입국을 허용

- 방역상황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대상자 확대 검토

③ 고령자 의료·돌봄 체계 개선 및 노동시장 참여지원 확대

① 급격한 고령화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령자 의료·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확대

*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대상 ICT를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확대, 국공립 요양시설 지속 확충 등

②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22년부터 신규 추진('22.下)

③ 지속가능한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시범 도입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욕구·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간 합리적 이용 유도

④ 고령자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54억)·노동전환지원금(51억) 신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정착 지원

(2)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① 지역소멸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22.上)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도의 「종합적인 인구활력계획」 수립을 지원
 - * 기본계획·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특례 등 규정
 - 각 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22~'31년, 매년 1조원)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생활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국고보조 사업시 우대*
 - * 국고보조사업('22년 2.6조원)시에 인구감소지역 가점부여, 공모기준 완화, 사업지원 할당
- ② 중소·소상공인 밀집지역 중심 선제적·집중적 위기대응 체계¹⁾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²⁾ 지정으로 신속 지원('22년 33억원)

 - 1) (정부) 위기경보 단계, 모니터링 지표 등 공통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지역) 지역특성 반영한 고유특화지표 구성 및 단계별 상시모니터링 추진
 - 2) 국세·지방세 50% 감면, 계약 우대, 전용 R&D, 중기부 44개 시책 등 특례지원

- ③ '22년까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¹⁾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²⁾
 - 1) (지원후보) 지역스타기업(~'21, 800개), 규제특구 사업자(~'21, 464개) 등 지역유망기업
 - 2) (정부) 협업과제기획, R&D(최대 6년간 20억원), 정책자금 우대 및 보증료 감면 등 (지자체) 산단·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역투자보조금 우대, 시험장비 지원 등 예정
- ④ “농촌재생뉴딜”을 통해 공간정비, 일자리·경제활성화, 주거·경관 개선,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연계·패키지 지원
 - 농촌살아보기 대상 지역 확대(88→95개 시군), 테마별 특화마을 도입, 귀농귀촌 정보 플랫폼 구축 등 농촌 체험·정보제공 추진
- ⑤ 어촌소멸 방지 및 활력 증진을 위해 신규인력 유입, 일자리 창출, 주거여건 개선 등을 반영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본격 시행
 -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 확대('21 250개 → '22 300개) 추진
 - 귀어귀촌 지원을 위해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 확대(200→220명), 귀어인의 집(6개소), 귀어학교(4→7개소) 및 교육비 전액 지원(8.4억원)
 - 노령어업인의 연안어선과 어업 희망 청년의 어선임대를 매칭하고, 임대비를 지원하는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추진
 - * 어선임대사업(신안군 추진중)을 임대비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전국 확대 시행

② 각종 특구 중심의 지역 혁신성과 창출

- ① (규제자유특구)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부합한 특구를 중점 육성하고, 핵심사업 위주의 가시적 성과 창출 추진
- '22년 실증종료 예정인 3·4차 특구 25개 사업의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임시허가 전환·특례 연장 등 안착화 추진(∼'22.下)
 - * (3차 : 7개특구) 21개 사업, '22.11월 종료, (4차: 3개 특구) 4개 사업, '22.12월 종료
 - 기존 1·2차 특구 사업 중 '22년까지 정비 예정인 법령¹⁾을 조속히 정비하고, 사업 상용화를 위해 자금·판로·R&D 연계 지원²⁾
 - 1) (부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충북) 가스기술기준, (경북)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2) 정책자금(중진공),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우대, 수출바우처 등
- ② (도심융합특구) 문화·산업·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 검토 및 순차적 기본계획 마련('22.下)
- * 기본계획 수립('22.8~) 4곳 : 대구광주('20.12 선정), 대전('21.3 선정), 부산('21.11 선정)
 - 기업유치 및 성장 지원, 규제특례, 청년인재 정착 지원 등 범부처 지원 패키지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추진('22.下)
 -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강준현 의원안, '21.5.31 발의, 국토위 계류중)
- ③ (연구개발특구) 지역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가속화 및 K-선도연구소기업** 본격 추진
- 1) 지정·처리 건수(누적) : ('21) 5개 → ('22) 15개
 - 2)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년 이상의 유망 연구소기업을 'K-선도 연구소기업'으로 선정('25년까지 100개) → 자금, 투자유치, 시장전략 컨설팅 등 집중 지원
 - 지역 주도의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제 발굴·기획에서 사업화까지 쏠주기에 걸친 R&D 지원 확대
 -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 ('21) 52.5억원 → ('22) 82.5억원
- ④ (경제자유구역) 지역간 차별화, 기존 산업과 연계성 등을 반영한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22~)
- * 경자구역별 특성·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 경자구역별 3~4개 既 선정
 -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성과가 우수한 경자구역 선별 및 집중 지원 추진

③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초광역협력 추진 본격화

① 광역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관리하고, 단기성과 창출을 위해 「초광역 시범협력 사업」 추진

* 범정부 차원에서 전북, 강원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초광역협력 추진이 어려운 강소권역의 경우, 별도 지원방안 검토

< '22년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정부 예산안 총 223억원) >

초광역권	분야	초광역권	분야
부산·울산·경남	해양쓰레기처리 수소선박개발·실증	전북·전남·광주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
	친환경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	경북·강원	환동해 해양헬스케어벨트조성
	동남권 그린수소항만 빅데이터플랫폼	전북·대구·경북	전기차·자율차 부품·제조
대전·세종·충남	BRT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 전력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제조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충북·강원·제주	바이오 진단 치료 의료기기	기반구축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전략수립

▪ 특별지자체 설치 소요재원 및 시범사업 비용 등을 특교세로 지원하고, 초광역특별협약¹⁾·분권협약²⁾을 도입하여 지역사업 추진

1) 지역이 필요로 하는 범부처사업을 패키지 지원하고 인센티브(국고보조율 인상 등) 부여
2) 국가 사무를 특별지자체에 위임하는 협약

② 초광역협력을 위해 지역이 '교통망-거점' 전략을 수립하도록 "초광역권계획"을 도입('22.下, 국토기본법(계류중) 개정)

▪ (교통망) 동일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해,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5개)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절차 추진('22.下)

* 부산~경남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나주, 대전~세종~충북, 경기용문~강원홍천

▪ (거점) 광역교통망과 연계하여 인재·일자리가 모이는 혁신거점(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및 주거플랫폼(주거·생활SOC) 조성('22.下)

③ 지역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활용한 범부처 공동 지원체계 마련 및 선도사업 선정('22.上)·지원

▪ 초광역권 산업협력 촉진 핵심인프라를 확충하고, 산학융합지구 지정 확대,* 초광역권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22.6) 등 인재양성

*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를 이전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총 17개 지정)

- ④ 공동 교육과정 등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운영('22~)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초광역권 대학 학사제도 개편 등 지원

* 초광역 지역혁신체계 구축지역에 최대 6년(4+2년) 맞춤형 규제유예 도입

- 지역 혁신기관(지자체·대학·기업·공공기관)간 협업 체계인 지역 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교육-취·창업-정주의 선순환 체계 구축

* ('20) 3개 플랫폼 → ('21) 4개 플랫폼 → ('22.) 6개 플랫폼

4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경제 거점 조성 확충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2년 23개 사업(1.2조원) 본격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2년 예산(조원) >

구분		프로젝트	'21년	'22년
계			0.7	1.2
SOC	단계별 설계 마무리	▪ 세종~청주 고속도로, 남부 내륙철도 등 10건	0.1	0.2
	착공·공사	▪ 동해선 단선 전철화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8건	0.3	0.7
R&D		▪ 지역특화산업 R&D 등 5건	0.3	0.3

- ① 울산 외곽순환도로, 평택~오송 2복선화 등 '22년 4개 공정을 신규로 착공하는 등 총 8개 공정 공사 추진*

* ('20~'21) 동해선 단선 전철화, 국도 위험구간, 영종~신도 평화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22) 울산 외곽순환도로, 평택~오송 2복선화, 산재전문공공병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 ②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2 경춘국도, 남부 내륙철도 등 10개 공정은 단계별 설계 마무리 등 사전절차 조속 추진*

* (기본설계) 석문산단인입철도, 대구산업선, 새만금국제공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기본-실시설계)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

- ③ 기본·실시설계를 함께 발주하는 등 사업기간을 단축(28개월 → 20개월 등)하고,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

[도시재생사업 성과 점검 및 확산]

- ① (성과 확산) “도시재생 뉴딜” 성과 본격화를 위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거점 재생 및 지역여건에 맞춘 주거지 재생 도모
- ② (민간투자 활성화) 기금 출·용자 및 공간지원리츠를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민·관협력형리츠를 활용해 민간참여 확대
 -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방식의 일종
- ③ (주거재생) 도시규모, 사업여건에 따라 개발·정비 가능한 대도시는 적극적 정비*, 중소도시는 보존·개량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
 - * 주거정비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 확대 추진

[혁신도시 2.0(10대 브랜드사업, 771억원) 통한 정주여건 개선]

- ① (생태계 구축) 교통*, 주거 등 혁신도시권(혁신도시+구도심)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기반 마련
 - * 수요자 호출시 AI가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노선을 구성하고 차량을 배치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수요응답형 셔틀” 제공('22년 11억원)
 -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보완사항을 '22년중 점검 추진
- ② (기업 지원) 혁신도시 내 기업에 대한 쏠주기 지원(창업 및 이전 → 기술 개발 → 시장 개척)으로 지역기업의 성장 촉진
 - 창업 기업에 필요한 사무공간을 제공하면서도 협업이 용이한 혁신기업 공유형 오피스를 구축하여 창업 활성화('22년 19억원)
- ③ (인재 양성) 자체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현장형 인재 양성
 -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융합캠퍼스를 구축하고, 계약학과 등을 운영하여 지역인재 양성('22년 25억원)

③ 공정 · 상생 · 사회적 자본 확산

① 공정하고 혁신적인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① (추진체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정책추진 기본방향¹⁾ 및 기능·업종별 핵심 이슈²⁾ 등 논의

1) 예) 플랫폼 시장 성장단계별 정책대응 차별화, MOU 등 多부처 협업체계 구축

2) (기능) 산업활성화·공정경쟁·노동정책 등, (업종) 금융·운송·콘텐츠 등

→ 민·관 협의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슈 발굴

② (공정성 강화) 플랫폼 시장 공정성 확보,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 및 입점업체·이용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개정* 추진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계약서 작성교부, 주요 노출기준 공개,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행위 금지 등

- **공정한 앱마켓 시장 구축을 위해 실태점검¹⁾, 금지행위 규제,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 마련²⁾ 등 본격 추진**

1) 앱 마켓 이용자보호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1.9.14)

2)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환불에 관한 사항을 앱 마켓 이용약관에 명시 등

-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도록 공정한 망이용환경 구축 방안***을 마련

* 예)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에 망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트래픽 현황 및 통신망 이용요금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③ (혁신성 강화) 플랫폼 기업의 혁신적 서비스*를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시장출시·사업화 지원

* 예) 신선식품 배송, 패션 커뮤니티 겸 이커머스 등

- **소규모 플랫폼 기업의 혁신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IT 분야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집중 점검**

* 자사와 독점 거래 유도,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에 기반한 자사우대 등

④ (피해구제) 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피해유형에 대해 원스톱 상담 창구*를 마련

*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운영('22~) → 종합적인 피해구제 절차 안내

-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 O2O* 등 신유형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 강화

* 온라인에서 광고·결제가 이루어지고 오프라인에서 상품·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모델

② 하도급 분야 등 공정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① (대기업 규율) 금융상품을 활용한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규율 개선방안 검토
- 주택, 난방기기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 ② (불공정거래 방지) 코로나19 이후 성장 중인 온라인 유통분야¹, 숙박·여행 등 일상 회복 분야²에 대해 거래환경 개선 집중 추진

1) 온라인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공정거래협약 활용 확산 등
2) 예)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의 최저가 보장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 (하도급)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제정, 피해 구제를 위한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
- (대리점) 바람직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대리점 동행기업* 확산 등 공급업자-대리점간 상생 발전 도모

* 공정위가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확인서를 수여하고, 해당 기업은 이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③ (피해구제) 시장 내 불공정행위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각종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하도급·가맹 분야 등 상임조정위원 신설로 분쟁조정위원 전문성 강화, 하도급 분쟁시 감정평가 절차 도입 등 추진

* 조정 이용률이 높은 공정거래, 하도급 및 가맹 분야에 상임조정위원 신설

- 방송법상 방송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사용료 및 계약조정 관련 분쟁의 경우 처리기한 단축 검토

- ④ (소비자 보호) 개별 생애주기에 맞추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성과 이용 역량을 제고

* (예) (청소년) 체험형 피해예방 (성인) 피해다발유형 (노인) 디지털격차해소

- 대규모 소비자피해 예방수단으로서의 단체소송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 예방적 금지청구 도입, 원고단체 확대(예: 소비자단체협의체), 소송허가절차 폐지 등

③ 자발적인 상생협력 확산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① (상생결제) 이용편의성 제고 및 인센티브 강화, 지자체의 상생결제 도입* 등을 통해 하위 협력사·지역기업으로 상생결제 확산

* 중기부-기초지자체 시범도입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자체에서 예산집행시 상생결제 활용 추진 → 상생결제 시스템과 디브레인, e호조시스템 연동 필요

② (자상한기업) ESG 경영 등 핵심 정책분야의 자상한기업¹을 '22년 10개社 추가 발굴,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성과 적극 홍보²

1] 전통적인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을 포함하여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2] 기사, 지상좌담회, 백서 발간, SNS 홍보, 성과공유회 개최 등

③ (성과공유)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범위를 확대¹하고, 인증마크 제작 등 브랜드화 지원²

1] 성과공유 유형 중 기타 항목에 '여가친화인증기업'을 추가하여 저금리 혜택 및 가점 인센티브 부여 <중기-근로자간 성과공유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개정>

2] 성과공유기업 인증마크 개발 및 보급, 성과공유기업 우수사례 홍보

④ (상생협의회) 플랫폼 기업-소상공인간 갈등이 심화되는 분야는 플랫폼 상생 협의회(동반위)를 운영하여 상생방안 협의 도모

* (예) 기업이 이용사업자의 유통 경로를 장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용사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

⑤ (납품대금 조정)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 등 활성화

▪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수탁·위탁기업 간 부당특약 등 불공정행위 조사, 개선 권고

▪ 공공기관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대금 반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확산*

*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협조공문 발송, 납품대금 조정 실적 동반성장평가 반영 등

⑥ (기술보호)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시 법률소송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 국내외 보안표준 및 인증제를 토대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술보호 인증 모델¹개발, 인증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²

1] 현행 보안인증 평가 : ISO27001 133개(11개 분야), ISMS-P 102개(3개 분야)
→ 평가항목이 과다하고 취득비용이 높아 중소기업은 도입이 어려운 실정

2] 예) 중기부 R&D 가점 부여, 정책보험 가입시 우대 등

[사회적 경제 인프라 개선]

①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기업 DB, 평가모형 등 사회적금융 인프라를 개선하고, 비수도권 금융공급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대상품 안내, 여신심사 등에 활용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DB*에 소셜벤처를 추가

* 신용정보원에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DB구축('21.6월 현재, 26천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모형(신보)의 활용을 지속 확대*하면서, 창업초기·소규모 기업에 특화된 간이평가모형 추가 개발

* 시스템 활용기관 수: ('20년) 14개 → ('21년) 50개 목표→ ('22년) 80개 목표

- 사회투자펀드 운용사의 비수도권 기업 투자시 인센티브 제공*, 지역 중개기관 발굴 등을 통해 비수도권 금융 지원 확대

* 예) 비수도권 기업에 30%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추가 성과보수 지급

② (판로 확대)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온라인·비대면 유통채널 확대 추진

- 공공구매 품목위주로 입점되어 있는 e-store 36.5의 민간 이용 확대를 위해 패션, 잡화 등 민간 구매품목의 발굴·입점* 확대

* ('22) 300개 기업, 3,000개 상품 입점 추진

- 신규 온라인 시장(라이브커머스 등) 진출, 오픈마켓 등 채널 입점 지원 등 온라인·비대면 유통채널 확대 지원

* TV 홈쇼핑: ('21) 250회→ ('22) 275회, 상품기획전: ('21) 12회→ ('22) 15회

③ (지역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성장지원 센터(고용부)-혁신타운(산업부)¹⁾간 구체적인 연계방안²⁾ 마련('22.上)

1) 창업지원, 최대 2년까지 입주(15개소) / R&D 등 전방위 지원(6개소 건설중)

2) 소셜캠퍼스온 우수 입주기업 대상 혁신타운 입주연계,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④ (협동조합 활성화)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 마련

- '22년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팀빌딩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50팀)하고, 디지털·탄소중립 분야의 창업도 활성화(20팀)
- ⑤ (연합회 기능 확대) 업종별·지역별 연합회 설립 유도, 지자체 협업모델 발굴 등 공동사업 활성화, 교육·컨설팅 실시 강화

[사회적 경제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

- ① (인식 제고) 대국민 '사회적경제 체험과 가치 확산', 민관간·기업간 '상생·성장의 장' 마련을 위한 통합박람회 개최('22.7)
- *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다양한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정보교류, 판로 확대 등 지원
-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분야별 대표 사회적경제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책자, 카드뉴스, SNS 등)('22.2/4)
- ② (성과 공유) 공공·민간 우수사례 발표, 사회적가치법 제정 필요성 논의를 위한 사회적 가치 관련 컨퍼런스 개최('22.1)
- ③ (성과 측정) 사회적가치 10개 분야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소셜벤처의 자가측정 매뉴얼 개발을 통해 사회적가치 측정 확산
- * ('20년) 2개분야 → ('21년 누적) 7개분야(완료) → ('22년 누적) 10개분야
- 임팩트 펀드·보증, R&D 등의 지원을 받은 소셜벤처기업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창출효과 측정 확대
 - * ('20년) 5개사 → ('21년) 30개사 → ('22년안) 50개사

⑤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원

- ① 사회 이슈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경사노위 참여 구성원 다양화, 구체적 의제 발굴 등 추진
-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청년, 플랫폼 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계층을 논의 주체로 포함하여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 제고
 - * '21.11월 청년·비정규직 위원회 2기 위원 구성 및 출범
- ② 다양한 형태의 갈등 관리를 위해 한걸음 모델 등 경사노위외 대화 채널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모델 구축 노력 지속

④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

① 근로시간·임금 등 노동혁신 관련 기업 지원 강화

- ① (주52시간제) 전면 시행('21.7~)에 따른 현장안착 적극 지원
 - '22년은 주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업종(뿌리, IT, 연구개발) 등을 대상으로 한 세부 분야별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
 - * (주요내용) 공인노무사 등이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상황 진단 + 교대제 개편·유연근로제 도입 등 해법제시 + 인력알선·각종 정부지원 연계 등 (추진일정) '22년 업무지침 마련(1월) → 위탁 컨설팅 전문기관 선정(2월) →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2월) → 1:1 전문가 컨설팅 등 집중 지원(3월~)
 - 한편, 필요한 경우 선택·탄력근로제 등 보완제도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5~29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② (공정 임금체계) 직무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확산을 위해 업종별 직무평가 및 임금정보 제공 관련 인프라 확충
 - * (직무평가) 업종 지속 추가(現 12개), 업종별 매뉴얼(現 10개) 및 활용사례 지속 발굴 (임금정보) 임금분포현황조사(표본 확대, 항목 세분화 등), 임금공시방안 검토 추진
 - 임금체계¹⁾ 개편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컨설팅 확대('22년, 700여개소)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 뒷받침²⁾
 - 1) 연공급 개선방안, 성과연봉제 설계, 임금구성 간소화, 직무급 도입방안 등
 - 2) 민간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 임금통계 등 정기 제공(임금정보브리프, 매월 대국민 공개)
- ③ (공무직 임금체계 마련) 업무 분류기준,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기초로 공무직족 논의를 통해 '합리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 ④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대재해 예방 등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련한 구체적 개선방안 발굴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 추진
 - * '21.12월 경사노위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출범
 -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시행('22.1.27)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홍보 등 사업주 대상 규정 준수 이행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진행 경과 등을 모니터링하며,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선방안 발굴·검토

②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재정분권 추진

[“3대 재정혁신” 을 통한 재정의 효과성·민주성 제고]

- ① (재정지출 재구조화) 총량관리 강화 및 선제적 위험대응을 위해 단계적 지출정상화,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 위험요인 관리 추진
 - *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한시 증액사업 전면 재검토 → 미래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
 - 인구·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감안한 전략적 자원배분 및 재정사업 심층·핵심·보조금 평가 등을 통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실시
- ② (협업예산 고도화) 다부처 협업 수요를 반영하여 '22년 17개 과제로 확대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조정
 - * '22년 예산안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노동·자영업 구조전환 지원, 혁신 인재 양성 등 핵심과제 중심으로 40% 증액('21년 9.9조원→ '22년 13.9조원)
- ③ (국민참여예산) 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국민참여 예산 인지도 제고 및 의견 수렴방식 다양화 추진
 - * 예산편성 전과정에서 청년 등 계층별, 권역별 찾아가는 국민제안 운영 등

[2단계 재정분권(21.7) 후속조치 실시]

- ① 부문별 칸막이 완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제도 개편 지속 추진
 - 교육청-일반지자체가 연계·협력하여 교육서비스 사각지대 및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을 중점 지원하는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
 -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증가추세 및 적정 교부금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한 교부금 제도 개선 검토
- ② '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원)
 - 지자체 투자계획 수립, 사업추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지방간 원활한 투자협약 체결*을 지원
 - * 정부·전문가 참여 자문단 구성 → 지자체 투자계획 수립 및 투자협약 체결 지원
 - 인구감소지역 위주로 재원을 집중 배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거점지역의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에 중점투자*
 - *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자체 인건비·경상비 등에 사용은 제한

③ 혁신조달 확산 및 전략적 공공조달 체계 운용

① 혁신적 제품의 공공구매(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해 '22년 혁신 구매 규모 및 혁신제품 수* 확대

* 범부처·전문가 협의 통해 '22년초 설정 → 분기별 공공조달수요발굴위 등에서 점검

② 「공공조달 혁신방안」 실행계획을 마련('22.下)하여 공공 구매력의 전략적 활용* 및 주요 국가과제 성과 창출 활성화 추진

* ①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체계 마련, ②혁신조달 정책 확산·고도화, ③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 본격 추진, ④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조달인프라 구축 등

④ 국유재산 개발 확대 및 국가채권 관리제도 개선

①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부지 일부를 「국유지 장기대부 민간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22.下)하여 민간참여 국유재산 개발 추진

* 민간이 국유지 일부를 최대 50년 간 대부받아 상업·업무시설 등을 설치·운영

②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모바일을 활용한 사용료·대부료 비대면 고지·납부 서비스 도입('22.下)

* (현행) 우편고지, 지로 납부 → (개선) 카카오·네이버페이 등 전자고지 및 사용료 납부

③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개발사업 발굴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교정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국유지 위탁개발과 지자체 주도의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지역개발 촉진
-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신축시 지자체의 생활SOC(주민체육 시설 등)를 함께 건립하는 복합사업 시범 추진

* (예시) 도봉세무서(국가) + 수영장(서울 강북구) 복합사업 시범추진 ('22.上)

④ 국유재산 특례 관리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특례 존치평가 모형 개발 등 「일몰제」 시행 준비

* 특례 일몰제·존치평가 등을 도입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예정('22.下)

⑤ 채무자 재산·소득자료 요청근거 상향(시행령→법률), 회수위탁 실효성 제고 등 「국가채권 관리제도」 개선 추진('22.12)

⑥ 관리운영권 만료('22~'30) 민자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주무관청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재부 제출 의무화

* '22~'30 운영만료 민자시설 287개, 총투자비 14.7조원 규모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 ① (시스템) 평가정보시스템 구축(22.9)을 통해 평가과정 전산화, 평가정보 DB화 및 경영실적 분석 등 상시 평가관리 강화
- ② (조직) 조세연(공공기관연구센터)을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
- ③ (컨설팅) 기관의 생애주기·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도입하고, 결과를 경영개선 계획에 반영 의무화

* 신설기관 컨설팅, 실적부진기관 컨설팅, 구조적 문제기관 컨설팅 등

[공공기관 경영혁신 노력 지속]

- ① (윤리경영) '윤리경영 표준모델'¹⁾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경영평가지 윤리경영 배점 확대(3→5) 등 평가 강화²⁾

1)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자체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필요
 2) 중대한 위반·위법행위 및 중대사고 발생시 윤리경영·안전지표 0점 처리

- ② (방만경영 개선) 주요 복리후생제도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및 경영평가 반영을 통해 방만경영 개선 유도

- 학자금 등 지침 현행화*를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고, 공시 등을 활용하여 사내대출 등 복리후생의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점검

* (예) 초중고 무상교육 및 공무원 학자금 지원 규정과 맞지 않는 '혁신 지침' 개정
 →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제한, 해외파견자의 유초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규정 신설

- ③ (재무관리 강화) 장단기 재무상황 변동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¹⁾를 마련하고, 재무상황 개선 필요기관²⁾에 대한 맞춤형 재무관리 강화

1) 공기업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자산 2조원 이상) 준정부기관 등 40여개
 2) ①재무지표 분석(안정성·수익성), ②재무운용 성과 평가에 기반한 재무건전성 평가

- 우선순위별 사업계획 조정, 출자협의 강화 등을 통해 재무지표를 적극 관리하고, 조직전반에 대한 효율화* 병행

* 인력조정, 경비절감, 경영평가 강화 등

- ④ (안전강화)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등급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부처합동 후속조치 이행점검 및 경영진 안전교육 확대 실시

*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역량 강화 노력도 등 평가강화

IV. 2022년 경제전망

	2021년	2022년
■ 경제성장률(%)	4.0	3.1
■ 취업자증감(만명)	35	28
- 고용률(%, 15~64세)	66.5	66.9
■ 소비자물가(%)	2.4*	2.2
■ 경상수지(억불)	910	800
- 통관수출(억불)	6,430	6,560
- 통관수입(억불)	6,125	6,280

* 현행 소비자물가(2015=100) 기준 전망치로 올해 12월 및 연간 실적(12.31일)은 기준년 개편 후 신계열(2020=100) 기준으로 공표될 예정

- ① **(성장) 정상 경로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며 3.1% 성장** 전망
- (내수) 대면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금년 보다 빠른 회복이 예상되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이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수출/투자) 금년 가파른 증가의 기저 영향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글로벌 경기·교역 및 반도체 업황 등으로 증가세 유지
- * '21→'22년 세계경제 전망(% , IMF<'21.10월>) : (성장) 5.9 → 4.9 (교역) 9.7 → 6.7
* 반도체 매출 증가율 전망(% , WSTS<'21.11월>) : ('21^e) 25.6 → ('22^e) 8.8
- ② **(고용)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취업자수 +28만명 증가** 전망
- 기저 영향,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수 개선·일자리 지원 정책 등이 고용 회복을 뒷받침
- * 생산가능인구 증감(만명) : ('20)△24.9 → ('21^e)△34.9 → ('22^e)△35.5
- ③ **(물가) 농축수산물·석유류 오름세 둔화 등으로 올해(2.4%) 보다 안정된 2.2% 상승** 전망
- 다만, 내수 회복 등에 따른 수요측 상방압력 확대 예상
- ④ **(경상수지) 수출 증가세(+2.0%)가 유지되겠으나, 내수와 함께 수입이 증가(+2.5%)하면서 올해보다 축소된 800억불 흑자** 전망
- 수출·무역규모는 올해 가파른 증가에 이어 '22년에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2년 연속 역대 최대치 기록 전망
<수출액:('21)6,430 → ('22)6,560억불 / 무역규모:('21)12,555 → ('22)12,840억불>

1. '21.12월 주요 추진과제 - 27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매입종료 및 비상기구화	한국은행·금융위
■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 및 캠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 6개월 추가 연장	금융위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 '22년 상반기까지 연장	기재부
■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기재부
■ 철골 및 관련구조물 공사업,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등 6개 업종 대상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연장	중기부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 연장	산업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세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조치 연장	고용부
■ 호텔업 등급평가 6개월 추가유예 및 카지노사업자 관광기금 납부기한 연장	문체부
■ 공항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국토부
■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기재부 등
■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 설치·운영	행안부·지자체
■ 계란 공판장 2개소 운영 개시	농식품부
■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기준 강화	기재부
■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기재부
■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이 잔여 월세금만큼 무이자월세대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	국토부
■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대출까지 포함	금융위·교육부
■ 서민재산 보호를 위한 3대 패키지 마련·시행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불법다단계]	과기정통부·금융위·공정위·방통위·경찰청
■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 및 주요품목 대상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기재부
■ 경제영향, 대외의존도 등 감안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	기재부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기한 6개월 연장 및 디딤돌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	금융위·국토부
■ 캠프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연장	금융위
■ 전세반환보증보험 지원 6개월 연장	국토부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배포	국토부·법무부
■ 뉴딜 2.0 신규과제 '22년 시행계획 마련	기재부
■ 수소 셀프충전 도입(안전성 실증)	산업부
■ 외국인력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대상자 확대 검토	고용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기재부

2. '22.1/4분기 주요 추진과제 - 109개

(1) 1월 - 48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 유예기간 확대(6개월→1년) 및 지원범위 확대(코로나 외 여타 재난까지 포괄)	금융위
■ '21년 소비쿠폰 중 잔여 가용부분 이월·지속 활용	문체부
■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 6개월 추가 연장	국토부
■ 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 및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 운영개시	금융위
■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잠정)	기재부
■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및 전기·가스요금 1~3월분 납부유예 지원	고용부·산업부
■ 폐업 소상공인도 3회 연체 전까지는 대출금 회수 유보	중기부
■ 소상공인 업종전환·재창업지원금 자부담 중 현물인정비율 상향(60→70%)	중기부
■ 국내선 항공유 품질검사수수료 징수 유예	산업부
■ 코로나 학번 졸업생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한시 인하	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업별 인턴형 일경험 채용한도 상향	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고용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재가입요건 완화	고용부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 인상	기재부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발요건 강화 및 재학생이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등록금 지원우대 등	중기부
■ 주요 직접일자리사업 1월 중 50만명 이상 채용 추진	고용부·복지부 등
■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고용부
■ 영세사업장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	고용부
■ 저소득 가구 고교생 EBS교재 무상제공 범위 확대	교육부
■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개시	여가부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개시	복지부
■ 청년전세임대 계약 시 임대인 제출서류 간소화	국토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의 가입 유지 지원을 위해 부당대우 예방·대응 강화	고용부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20대 중증장애 청년을 개별 가구로 분리하여 생계급여 수급가능하도록 개선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돌봄 지원대상을 코로나 돌봄공백 외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까지 확대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 대상]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 포함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구매 목표제 '22년 기관평가(정부혁신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기재부·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마이데이터 '내 손안의 금융비서' 전면 시행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업 현장맞춤형 특화훈련사업 신설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사 함정 수주 지원을 위한 보증서 제출 부담완화 특례 2년 연장('21년말→'23년말 종료) 	방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제조혁신 R&D 신설 	중기부·과기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폐지 	여가부·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수출 플랫폼 구축 	산업부·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 주식의 시가평가 현실화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위한 시행령 개정 착수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정부 R&D 연구비 민간부담률 하향 조정 	과기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대응기금 신설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대응보증 신설(신·기보 각 5천억원)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전환 분석센터 한국고용정보원 내 신설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지급연령 범위 추가 확대(만7→8세)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통합판정체계 시범 도입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상생협의회 운영 및 상생방안 협의 추진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52시간제 애로 업종 집중 컨설팅 지원을 위한 '22년 업무지침 마련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홍보 및 컨설팅 	고용부·환경부·국토부·소방청

(2) 2월 - 23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검토 (소금융권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 등과 연계)	금융위
■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본격 추진	문체부
■ 외국인관광객 물품 구매시 부가세 등 즉시환급한도 상향 (200→250만원)	기재부
■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특례 적용요건 한시 완화	기재부
■ 국가전략기술 지정 [3대 분야 65개 기술]	기재부
■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 투자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허용	기재부
■ 탄소중립을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	기재부
■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재부
■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	산업부
■ 유턴기업 세액감면 국내사업장 이전요건 완화	기재부
■ 부산항 신항에 수출화물 임시보관장소 확충	해수부
■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제도 법적근거 상향 및 서류제출 간소화	기재부·관세청
■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개시	중기부
■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일부 도심부에 대해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 완화	산업부
■ 산재보험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	고용부
■ 디지털포용법 제정 추진	과기정통부
■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한시 상향	금융위
■ '22년 사전청약 상세계획 발표	국토부
■ 1세대 1주택 상생임대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요건 완화	기재부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실시	농식품부
■ 마을주민 주도의 마을태양광 시범사업 시행	산업부
■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센터 설립	중기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기부

(3) 3월 - 38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전용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등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의 가격동향 분석·공개주기 단축(반기별→분기별)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진공 정책자금 연체이자율 인하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몰 내 유희공간을 공유주방으로 개조·임대하는 'Kitchen Share' 시범사업 추진 검토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여부 검토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기간 중 실험·실습 비대면 이수 대학생이 각 대학의 대면 실험·실습과정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Meet 프로그램 신설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 신설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발표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 추진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임대 입주자가 전세임대뱅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계약가능 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장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비율 상향 및 지원인원 확대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신용위험평가 정상화방안 검토 및 평가대상·기준 조정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비·도심공공복합·소규모주택정비 추가후보지 발굴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저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연소자 등 편법증여 조사, 부정청약 조사결과 등 발표 	국토부·국세청·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 추진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판 뉴딜 범부처 성과보고대회 개최 	기재부

정책 과제	부처·기관
■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 수립	산업부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유권해석 사례 공개	복지부
■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 플랫폼 서비스 개시	해수부
■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개최	국조실·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특허청
■ 한걸음모델 합의도출 절차 제도화 등 개선방안 마련	기재부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	환경부
■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환경부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재부
■ 사업구조개편 지원센터 대한상의 내 설치	산업부
■ 사업재편 혁신펀드 조성 및 운용	산업부·금융위
■ 노동전환 지원센터 대한상의, 중진공 내 개소	고용부·중기부·산업부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규 지정	중기부
■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추진	해수부
■ 초광역협력 특별협약 도입	국토부·균형위
■ 온라인 플랫폼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기재부·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 안정적 콘텐츠 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정한 망이용환경 구축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 직무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고용부
■ 공무원 관련 합리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고용부
■ 혁신조달 확산을 위한 '22년 혁신구매 규모 및 혁신제품 수 확정	기재부

3. '22.2/4분기 주요 추진과제 - 48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 지방교부세(금) 정산분 지자체에 신속 지급	행안부·교육부
■ K-글로벌 백신펀드 신규 조성	복지부
■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 1년 추가시행 및 전통시장 추가소비 별도 소득공제 신설	기재부
■ 상생소비 더하기 ⁺ 시행	중기부
■ '22.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연계 지원	행안부·중기부
■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기부
■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 ^(가칭) ' 운영	문체부
■ 부산항 신항 신규터미널 개장	해수부
■ 해외 공동물류센터(3개소) 구축	해수부·산업부
■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대상 지자체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 근거 명확화 등 규정 정비	국토부
■ 6대 비철고속 비축물자 할인방출 운영지침 등 개선 추진	조달청
■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을 균특회계 평가요소에 반영 등	기재부
■ 미래 유망분야로 학과를 개편한 특성화고 대상 직업훈련 지원 확대	고용부
■ 대학별 군 복무 원격강좌 운영현황 공개	교육부
■ 복지멤버십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 본격 시행	복지부
■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임대차정보 조회 편의성 제고	법무부·국토부·행안부
■ 월세세액공제 한시 확대	기재부
■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 마련	기재부
■ 데이터기본법 시행(4월) 및 주요 신규제도 설계·준비	과기정통부
■ '22년 국민참여 뉴딜펀드 신규 조성	금융위
■ 중장기 메타버스 기술개발 로드맵 제시	과기정통부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복지부
■ 클라우드 종량제 예산제도 도입	기재부·과기정통부

정책 과제	부처·기관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6월)	산업부
■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문체부
■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 개편	중기부
■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해수부
■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금융위
■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해수부
■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추가 개발	문체부
■ K-테스트베드 국가 플랫폼 공식 출범	기재부
■ 일반인을 위한 바이오 분야 메이커스페이스 시범 조성	중기부
■ 규제비용관리제 개선방안 마련	국조실
■ 한걸음모델 '22년 신규과제 선정	기재부
■ K-Digital Training 차원에서 가칭 ASA(Allied Software Academy) 사업 추진	고용부
■ 범부처 인재양성 기본전략 마련 및 BIG3 등 중요 분야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계획 수립	교육부
■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전략 마련 및 특별법 제정 추진	과기정통부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
■ 녹색국채 도입여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기재부
■ 해양폐기물 탄소중립 실적 계량화 및 국가통계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해수부
■ 4기 인구TF 출범 및 인구관련 대응체계 개선방안 검토	기재부 등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행안부
■ 초광역협력 범부처 공동지원 선도사업 선정	산업부
■ 산학융합지구 내 초광역권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6월)	산업부
■ 분권협약 추진	행안부
■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성장지원센터-혁신타운 연계방안 마련	고용부·산업부
■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신축 및 지자체 생활 SOC 건립을 위한 복합사업 시범 추진	기재부·국토부
■ 지방교육재정 관련 공동사업비 등 교부금제도 개선방안 검토(4월)	기재부·교육부· 행안부

4. '22.3/4분기 주요 추진과제 - 25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 등) 관련 평가체계 개선 등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백신개발 바이오펀드 신규 조성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ulture Festival을 예년보다 앞당겨 개최하고 개최기간도 10일 내외로 확대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중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한시 상향('22~'23년)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X석유시장 구매물량 세액공제율 확대(0.2→0.3%)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늘·양파 파종·정식기계 지원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직공무원 75% 이상 채용 확정 	인사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특고·플랫폼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대상]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신속 대응 R&D 지원체계 확충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유발계수 대상 시설물 데이터센터 항목 신설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의결권 하위법령 개정 및 해설서 제작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권 거래제 제3차 할당계획 변경 검토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공시 관련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논의 대응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SG 플랫폼 정보·통계자료 제공 기능 강화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착수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법 개정 및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5개 사전타당성 조사 마무리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통합박람회 개최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달 혁신방안 실행계획 마련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지 장기대부 민간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기재부

5. '22.4/4분기 주요 추진과제 - 28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 코리아세일페스타 및 크리스마스마켓 개최	산업부·중기부
■ 「야간관광 발전전략 ^(가칭) 」 수립	문체부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지자체 확대	문체부
■ 한국형 해운운임지수 개발·공표	해수부·관세청
■ 스마트팜 수출 관련 베트남 시범온실 완공 및 1개국 확대 추진	농식품부
■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한 원유가격 결정구조 개선안 적용	농식품부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체납 시 연체금 한도 및 가산금 요율 하향조정	교육부
■ 2·4대책 '21년 및 '22년 상반기 본지구 지정지역 대상 사업계획 수립 순차 시행	국토부
■ 정부·지자체 내부업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선도사례 발굴·추진	과기정통부
■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 확대('22년 60개)	산업부
■ 범부처 합동 K-브랜드 홍보관 구축 및 박람회 개최	문체부·산업부
■ 재외한국문화원 코리아 콘텐츠 워크 개최('22년 10개소)	문체부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2 개최	중기부
■ 해외 VC 지원 위한 글로벌 투자펀드 조성	중기부
■ LP지분유동화펀드 및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조성	중기부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신규 과제 선정	중기부
■ 규제자유특구 3·4차 특구 법령 정비 및 안착화 추진	중기부
■ 규제 샌드박스 분야 확대(모빌리티 등)	국조실
■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및 금융상품 발행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
■ ESG 전용펀드 신규 조성 및 ESG 관점 심사체계 도입	중기부
■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 및 육성	중기부
■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 검토 및 기본계획 마련	국토부
■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범위 확대 및 인증마크 제작 시행	중기부
■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마련	기재부
■ 자상한기업 '22년 10개사 추가 발굴	중기부
■ 국유재산 사용료 비대면 고지·납부 서비스 도입	기재부
■ 국유재산 특례 존치평가 모형 개발 등 일몰제 시행	기재부
■ 국가채권 관리제도 개선	기재부

※ 일반국민 1,000명, 경제 전문가 309명을 대상으로 조사(KDI)

- ◇ 국민들은 '경제 정상궤도 도약' 및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와 함께, 미래를 대비한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응답
- ☞ '22년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에도 정책 역량 집중

1. 경제상황 평가 및 '22년 경제정책방향

① (경제상황 인식) 전문가들은 올해 및 내년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들은 올해 상황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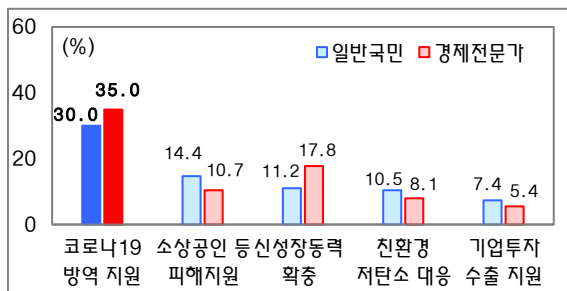
* 전년도 대비 '비슷하다' 또는 '좋아졌다(좋아질 것)' 답변 비율
 : [21년 경제상황] (국민) 33.9 (전문가) 73.1 [22년 경제전망] (국민) 68.9 (전문가) 82.5

○ 한편 대외리스크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대내리스크로는 자산시장 불안정 및 新양극화를 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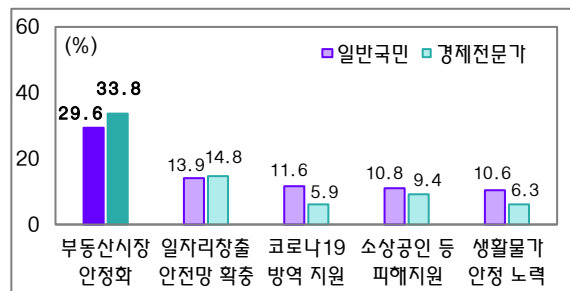
* 대외리스크(% , 1위 답변) : [국민] 코로나19 재확산(26.8) [전문가] 인플레이션 장기화(24.3)
 대내리스크(% , 1위 답변) : [국민] 자산시장 불안정(23.9) [전문가] 新양극화(35.9)

② ('21년 경제정책 평가) '코로나19 방역 지원'이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선정되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2021년 잘한 정책(상위 5개)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정책(상위 5개)



③ ('22년 경제정책방향) 경제 정상궤도 도약,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순위로 제기하면서, 성장동력 보강도 주요 과제로 응답

(%)	완전한 경제 정상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경제 정상궤도 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일반국민	24.8	36.1	13.4	12.7	10.8
전문가	40.1	18.1	29.1	10.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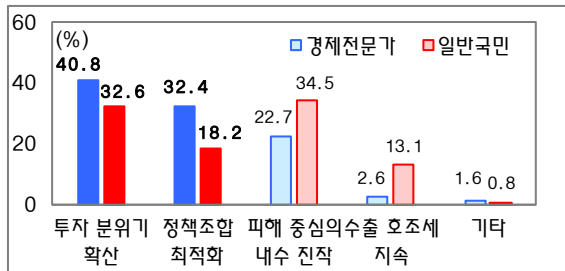
2. 세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 완전한 경제 정상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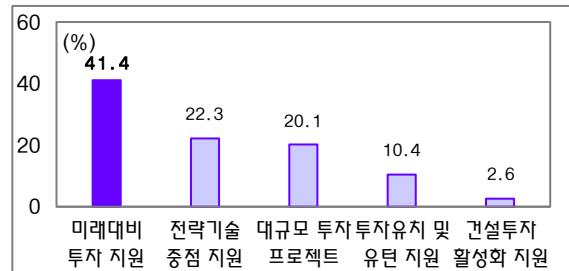
①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을 위한 중점정책으로 ‘투자 분위기 확산’, ‘정책조합(Policy mix) 최적화’ 등이 우선순위로 지목

- 전문가들은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략산업 등 미래대비 신성장 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중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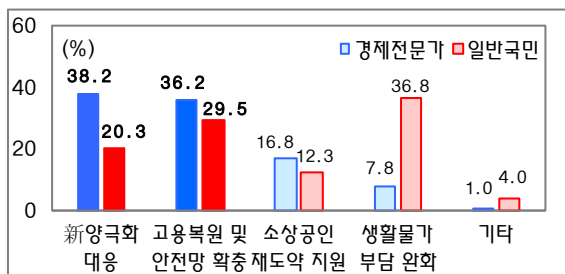
투자 분위기 확산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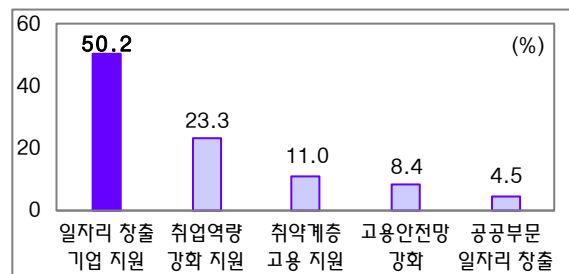
②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에 대해서는 ‘新양극화 대응’, ‘고용 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을 중점 정책으로 응답

-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의 핵심과제로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확대,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등을 제시

민생경제 회복 중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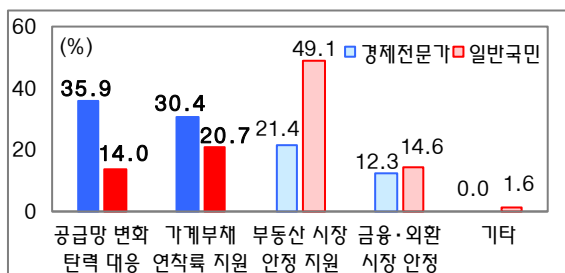
고용복원 및 안전망 확충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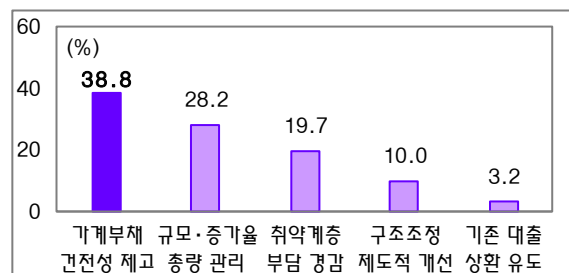
③ “대내외 리스크 관리”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 ‘가계부채·한계기업 연착륙 지원’ 등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

- 전문가들은 ‘가계부채·한계기업 연착륙 지원’을 위해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 제고와 함께 부채 총량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중점정책



가계부채·한계기업 연착륙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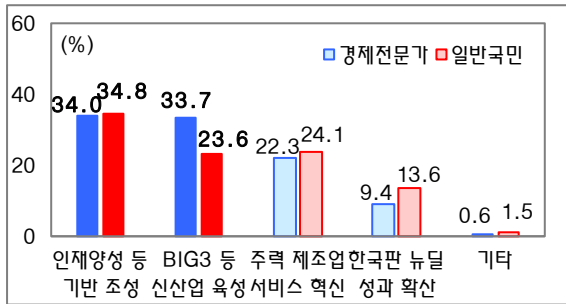


【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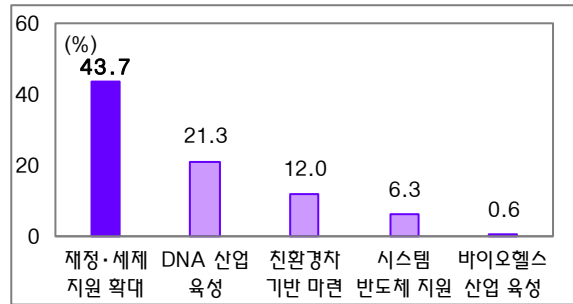
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점 분야로는 ‘인재양성 등 혁신기반 조성’, ‘BIG3 등 유망 신산업 육성’ 등이 제기

- 전문가들은 ‘BIG3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민간기업 투자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를 지목하였으며, DNA산업 육성 및 친환경차 기반 마련 등도 핵심과제로 언급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중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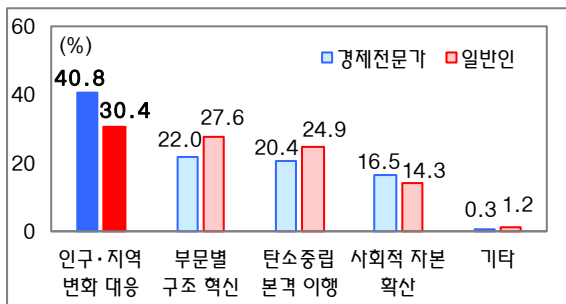
BIG3 등 신산업 육성 핵심과제



②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에 대해서는 ‘인구·지역경제 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부문별 구조혁신’을 중점 정책으로 지목

- 특히, ‘인구·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부모 양육·돌봄 부담 경감 등이 강조되었으며, 지역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중점정책



인구·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핵심과제

